

월간
재정포럼 8
월호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 2013년 8월호 제206호

현안분석 • • 소득계층 이동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방안/ 원종학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현황 및 향후과제/ 윤성주

특집 • • 2013 세법개정안

정책토론포트 • •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CONTENTS

권두칼럼

민간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세 정비 · 이창무 02

현안분석

소득계층 이동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방안 · 원종학 0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현황 및 향후과제 · 윤성주 22

특집 · 2013 세법개정안

2013 세법개정(안) 추진배경 및 주요 내용 · 황정훈 39

201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평가 · 김학수 44

정책토론포트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61

주요국의 조세 · 재정동향

네덜란드의 신규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도입 외 75

정책흐름

2013년 세법개정안 105

최근 경제상황과 증점 추진 · 점검과제 120

'13년 7월 전월세 거래량, 전년 동월 대비 5.3% 증가 12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어디서든 즉시 발급 126

이슈&포커스

[이슈토론] 복지 위해 증세해야 하나 외 128

민간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세 정비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최근 주택시장, 특히 수도권 주택시장은 하우스푸어 및 전세푸어라는 신조어가 대변하듯 지속적인 매매가격 하락과 전세가 상승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과거와 달리 매매시장과 임대시장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임대주택시장의 활성화라는 목표에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듯하다. 그런 와중에 주택공급 과잉이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주택가격의 하락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주택공급 축소에 대한 국토부의 의지가 표명되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주택시장이고 그에 대한 처방도 쉽지 않다. 정말 공급 과잉이라서 가격이 내리는 것일까? 그런데 전세는 왜 지속적으로 오를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매매시장과 임대시장에 큰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 그 괴리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 깊게 들여다보면 국내의 특이한 임대계약제도인 전세의 특성과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조세제도에서 그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우선 공급과잉의 증거로 인식하고 있는 수도권 아파트 미분양물량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자. 수도권 아파트 미분양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의 2012년 미분양물량은 2만 3천채 정도로, 전국 시도지사체 중 가장 많은 물량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에는 아파트가 약 230채 재고가 존재하고 있어 미분양물량을 아파트 재고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면 1.0%에 불과하다. 이는 2001년 이후 전국의 장기 평균 수준에 불과하며, 현재 대구, 울산, 강원, 충남, 경남보다 낮은 수준이다. 심각한 미분양상태가 발생했던 2008년 대구, 경북, 울산의 5.0% 이상의 재고 대비 미분양률과 비교하면 언론이나 건설업체의 호들갑처럼 정말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미분양률을 재고주택의 공실률의 일부로 판단하면 수도권의 미분양률은 그리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오히려 과거 고성장기 정부의 제도적 지원으로 유지되어 온 선분양구조하에서 지어지지 않은, 3~4년 뒤에나 입주하게 될 아파트를 분양하자마자 100% 팔거나 사버리는 데 우리가

너무 익숙해진 것은 아닌지 되물어볼 필요가 있다. 어찌 되었든 지금 수도권
의 미분양 상황을 심각한 공급과잉의 증거로 오해하고 대응하는 것은 민간임
대주택시장의 어려움을 가속화하는 오판일 수도 있다.

전세의 특성과 민간임대주택시장 활성화의 한계

어쨌든 전세가는 오르는데 미분양주택 적체물량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 상
황은 특이한 국내 전세제도의 수익구조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일반
적으로 투자용도로 주택을 구입할 때 전세나 보증부월세가 들어 있는 주택을
구입하게 된다. 따라서 전세는 월세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재매각을 통
한 자본차익을 증폭시키는 레버리지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역으로 가격이 오
른다는 기대가 없으면 전세가 오르더라도 굳이 신규주택을 임대사업용으로
구입해 보았자 만족스러운 투자수익률을 달성할 수 없다. 결국 지금의 수도권
아파트시장은 자가를 원하는 사람도 전세임대사업을 고민하는 사람도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요인이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전세임대의
경우 불확실한 자본차익을 추구하는 투자선택으로 월세를 기준으로 한 수익
률에 비해 높은 기대가 있어야 투자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국내의 현실에서 민간임대사업자로 기능하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부동산투기자로서의 사회적 반감이 여전히 크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고
성장을 기대하기가 힘든 사회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투기 억제장
치로서 역할 하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증과는 득보다는 결국 임차가
구의 주거비용을 높이는 독이 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종합부동산세는 투자
여력이 있는 자산계층의 민간임대사업에 대한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다. 결국 다른 나라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증가와 종합부동산세는 폐지가 당연하다.

그렇다고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매입임대사업자로 등록
하는 경우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증과를 적용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
도 감면해준다. 정부에서는 그 정도면 많이 봐주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수는 그리 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왜 그럴까?

앞에서 논의하였듯 전세 임대를 통한 투자수익의 실현은 매각을 통해 이루
어진다. 간단한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서울시의 평균적인 아파트 가격인 4억
원을 기준으로 2억원의 전세가 들어있는 아파트에 투자한 경우를 살펴보자.

.....
**투기 억제장치로서
 역할 하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증과는
 득(得)보다는
 결국 임차가구의
 주거비용을 높이는
 독(毒)이 되고 있다.**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증가 폐지는
필수적이며,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와의 통합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

안정적인 연간 가격상승률 5%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자기 투자금액 2억원에 대한 전세 임대아파트의 세전 수익률은 10% 정도로 발생하게 된다. 양도세 증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년간 가격상승이 누적되면 누진세율로 30% 전후의 일반세율로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매입 및 매각가격에 기초하여 부과되므로 자기자본수익률을 산정하면 7%로 감소한다.

여기에 등록임대사업자가 되는 경우 전세에 대한 임대소득세가 징수된다. 임대소득세의 산정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으나 단순화하면 전세금에 대한 1%의 임대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수익률은 6%로 감소한다. 여기에 재산세, 구입 시 지불했던 취득세 및 관리비용 등을 고려하면 투자수익률은 5% 이하로 감소하게 된다. 여기에 가격변동성에 따른 리스크를 고려하면 전세 임대는 결코 매력적인 선택이 되지 못한다.

또한 보유기간 중 임대소득세 및 재산세는 보유기간 운영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전세임대에 지속적인 운영비용을 지불하게 만든다. 무엇보다도 임대사업자 등록의 약점은 자본차익 실현 시점이 제약된다는 점이다. 자유롭게 매각시기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수익실현에 대한 리스크가 증가된다. 이 모든 요소가 유동성 제약에 따른 리스크를 확대시킨다. 따라서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증가 및 종합부동산세 감면 이상의 좀 더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임대주택시장은 전세와 같이 보증금 비중이 높은 임대계약으로 인해 주택 매매시장의 활성화 없이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 확대는 어려운 실정이다. 향후 주택시장이 침체를 벗어나 정상화된다고 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높은 기대가격상승률을 기대하기란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이다. 따라서 현 조세제도에서 임대사업자의 자본차익을 억제하는 조세장치는 국내 민간임대주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증가 폐지는 필수적이며,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와의 통합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좀 더 적극적인 대안으로 성공적으로 민간임대주택시장을 육성한 독일처럼 등록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그리고 전세임대에 대한 현실적인 임대소득세 징수방안에 대한 고민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더 이상 다주택자를 주택시장의 불안을 조장하는 주범으로 간주해서는 임차가구의 주거비용을 상승시키는 부작용만 발생할 뿐이다. 전향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현안분석 |

- 소득계층 이동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방안
원종학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현황 및 향후과제
윤성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소득계층 이동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방안

I. 서론



원종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jweon@kipf.re.kr)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로 인해 우리 사회의 안전판이라고 할 수 있는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경기 침체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실업률은 아직까지 고공행진 중이고 물가마저 치솟아 실질 가계소득이 줄고 있는 데다 가계부채는 이미 한계상황에 직면해 중산층이 저소득층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한층 더 커진 때문이다.

중산층은 한 사회를 이끌어 가는 중추세력으로서 사회안정과 균형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소득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중산층 비중이 계속 낮아질 경우 사회통합이 저해되고 경제발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상층부와 기저부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산층이 상대적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기존 중산층의 복원 및 신규 중산층 양성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중산층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84년 미국에서부터 비롯되었다.¹⁾ 이후 세계 각국에서 중산층 감소세가 나타나면서 그 수준 및 원인에 관한 논의가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득양극화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서 경제위기 이후의 중산층 약화 현상을 분석한 논문들이 꾸준히 발표되어 왔다.

본고는 중산층의 소득계층 간의 이동을 한국노동패널(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자료를 통해 추적하고, 중산층에서 빈곤층 또는 상류층으로의 이탈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중산층의 비중이 어떻게 변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중산층에 속해 있던 개인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어느 정도나 계층의 하강 또는 상승을 경

1) 중산층 비중에 대한 연구는 Thurow(1984)와 Lawrence(1984)가 미국의 중산층 추이를 분석한 것에서 시작되었으며, Bradbury(1986) 및 Duncan et al.(1991), Horrigan and Haugen(1988) 등도 미국에서 중산층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강성진 외(2013)에서 재인용)

험하게 되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별로 많지 않다.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일천한 것은 장기간 축적된 시계열 자료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것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중산층의 이탈 규모와 그 원인이 분명히 규명되어야만 그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총량적인 중산층의 규모를 측정할 기존 연구의 틀에서 벗어나 보고는 소득계층 간의 이동 실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중산층에서 이탈한 개인의 특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중산층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 맞춤형 처방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중산층 현황

가. 중산층에 대한 정의

사전적으로 중산층은 '경제적 수준 또는 사회·문화적 수준이 중간 정도 되면서 스스로 중산층 의식이 있는 사회집단'을 가리킨다. 중산층이란 소득, 학력, 주택, 직업, 계층의식 등 복수의 지표에 의해 구분되는 다면적 개념인 것이다. 사회학적 접근의 경우 일정한 교육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와 결부되는 직종을 중시하며 해당 직종을 갖기 위한 덕성(인내, 근면 등)을 강조하지만 경제학적 접근의 경우 경제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소득이나 자산 등 경제적 변수를 중

“
가장 널리 활용되는 OECD 기준에 따르면 중산층은 중위소득의 50~150% 구간에 속하는 가구로 정의된다.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50%를 대칭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우리나라 통계청도 이 기준을 따르고 있다.
 ”

심으로 하는 객관적 분류와 귀속의식이나 상대적 박탈감 등 정치·사회적 변수를 포함한 주관적 분류에 의해 중산층이 구분되기도 한다.²⁾ 이처럼 중산층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질적인 기준들로부터 비롯된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해진 중산층에 대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들을 둘러싼 정치·경제·사회구조가 변함에 따라 중산층의 개념도 계속해서 진화 중이다.³⁾

각 나라별로 발전 단계에 따라서 소득 수준의 편차가 큰 편이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잣대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절대소득 기준을 사용하는 반면 경제개발이 진행된 국가의 경우에는 중간소득의 일정 범위로 한정되는 상대소득 기준을 사용한다.⁴⁾ 가장 널리 활용되는 OECD 기준에 따르면 중산층은 중위소득(median income)의 50~150% 구간에 속하는 가구로 정의된다.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50%를 대칭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우리나라 통계청도 이 기준을 따르고 있다. 본고에서도 이 정의에 따라 중산층을 정의한다.⁵⁾ 이때 중위소득이라 함은 전체 가구를

2) 최효미(2008)

3) 영국의 'Great British Class Survey'는 기존의 상중하 3계층 분류에서 탈피해 엘리트, 전통적 중산층, 기술직 중산층, 근로자 상층, 전통적 근로자층, 서비스업 근로자층, 소외계층으로 구성된 7개 사회계층을 제안하면서 명확히 정의되기 어려운 중산층의 복합적 성격을 강조함("Great British Class Survey finds seven social classes in UK," *The Guardian*, 2013.4.3, 윤희숙(2013)에서 재인용)

4) 윤희숙(2013)

5)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위 정의는 재산에 대한 고려가 없어, 재산에 대한 개념을 포괄하는 '중산층'이라기보다는 엄밀하게는 '중위소득계층'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소득과 재산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찾기가 어려웠다는 점과, 소득분배를 다른 기존의 연구들이 유사한 방법으로 중산층을 정의하고 있어 비교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중위소득으로 중산층을 정의하였다.

“
**전체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2006년 64.6%에 달했던
 중산층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63.1%까지 줄어들었다가
 2010년 증가세로 반전되어
 2011년 현재 64.0%를 기록하고 있다.**
 ”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따라서 중위소득이 월 300만원이면 중산층은 월 150만~450만원을 버는 사람이며,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매년 중산층을 판단하는 기준도 조금씩 바뀌게 된다.

울프슨(Wolfson) 지수도 중산층을 나누는 기준으로 중위소득을 사용한다. 소득양극화를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인 울프슨 지수는 중위소득과 다른 계층 소득 간 차이의 절댓값을 이용해 산출되며 중산층의 소멸 정도를 나타낸다. 그 밖에도 소득 10분위에서 4~7분위, 소득 5분위에서 2~4분위에 속하는 계층을 중산층으로 간주하고 있다.

나. 중산층의 역할

우리 사회 내에서 중산층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⁶⁾ 첫째, 경제기반 유지에 필수적인 내구재 소비의 주축을 이루며, 양질의 노동력 공급을 통해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기능한다. 둘째, 경제적 의미의 중간계층이자 정치·문화 측면에서 사회를 주도하는 중추계층으로 견실한 중산층의 존재 및 적정 비중의 유지는 전반적인 사회 안정에 핵심적 요소이다. 셋째, 소비·여가생활 행태, 교육태도, 정치

의식, 사회여론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산층은 국민 생활의식을 선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다. 중산층의 규모

통계청의 가계조사 자료를 토대로 중산층 규모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전체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2006년 64.6%에 달했던 중산층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63.1%까지 줄어들었다가 2010년 증가세로 반전되어 2011년 현재 64.0%를 기록하고 있으나 아직도 5년 전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한 상태이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2인 이상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1990년대 초중반 74~76%의 비중을 유지하던 중산층은 1998년에 외환위기를 맞아 68~69%로 큰 폭의 감소를 경험한 후 등락을 거듭하며 2011년 지금까지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채 67.7%에 머물러 있다.

<표 1> 중산층 비중(가처분소득 기준)

(단위: %)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가구	-	-	-	-	64.6	63.9	63.1	63.1	64.2	64.0
2인 이상 비농가	-	-	-	68.0	67.4	66.7	66.3	66.8	67.5	67.7
도시 2인 이상	75.4	75.3	71.7	69.2	68.3	67.0	66.3	66.9	67.5	67.7

주: 중산층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150% 사이에 있는 가구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각 연도

한편, 중산층에 대한 주관적인 귀속감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일례로 중앙일보가 2005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

6) 홍성민·민주홍(1999)

〈표 2〉 소득계층 변화

(단위: %)

	전체가구			2인 이상 비농가 ¹⁾			도시 2인 이상		
	중위소득 50% 미만	중위소득 50~150%	중위소득 150% 이상	중위소득 50% 미만	중위소득 50~150%	중위소득 150% 이상	중위소득 50% 미만	중위소득 50~150%	중위소득 150% 이상
	균등화 시장소득								
1990	-	-	-	-	-	-	7.8	73.7	18.5
1991	-	-	-	-	-	-	7.2	75.2	17.6
1992	-	-	-	-	-	-	7.4	75.4	17.2
1993	-	-	-	-	-	-	8.2	74.6	17.2
1994	-	-	-	-	-	-	7.9	74.7	17.4
1995	-	-	-	-	-	-	8.3	73.5	18.1
1996	-	-	-	-	-	-	9.1	72.6	18.3
1997	-	-	-	-	-	-	8.7	72.7	18.5
1998	-	-	-	-	-	-	11.4	67.7	20.9
1999	-	-	-	-	-	-	12.2	67.0	20.8
2000	-	-	-	-	-	-	10.4	69.7	19.9
2001	-	-	-	-	-	-	11.3	68.2	20.5
2002	-	-	-	-	-	-	11.1	67.9	21.0
2003	-	-	-	13.1	67.6	19.4	12.1	69.4	18.5
2004	-	-	-	13.8	65.5	20.6	12.8	67.1	20.1
2005	-	-	-	14.7	65.1	20.2	13.6	66.6	19.8
2006	16.6	60.7	22.7	14.8	63.5	21.7	13.8	65.0	21.3
2007	17.3	59.6	23.1	15.5	62.7	21.8	14.9	63.5	21.7
2008	17.5	58.8	23.7	15.0	62.1	22.8	14.7	62.7	22.6
2009	18.1	58.7	23.2	15.4	62.5	22.1	15.4	62.6	22.0
2010	18.0	59.7	22.3	14.9	63.6	21.5	14.9	63.7	21.5
2011	18.3	60.0	21.7	14.9	64.1	21.1	15.0	63.8	21.2
	균등화 가처분소득								
1990	-	-	-	-	-	-	7.1	75.4	17.5
1991	-	-	-	-	-	-	6.8	76.2	16.9
1992	-	-	-	-	-	-	6.5	76.3	17.1
1993	-	-	-	-	-	-	7.5	75.7	16.8
1994	-	-	-	-	-	-	7.3	75.8	16.9
1995	-	-	-	-	-	-	7.7	75.3	16.9
1996	-	-	-	-	-	-	8.2	74.5	17.2
1997	-	-	-	-	-	-	8.2	74.1	17.8
1998	-	-	-	-	-	-	10.9	69.6	19.5
1999	-	-	-	-	-	-	11.4	68.9	19.6
2000	-	-	-	-	-	-	9.2	71.7	19.0
2001	-	-	-	-	-	-	10.1	70.4	19.5
2002	-	-	-	-	-	-	10.0	70.3	19.8
2003	-	-	-	11.4	70.4	18.2	10.6	71.8	17.6
2004	-	-	-	12.1	68.7	19.2	11.4	70.0	18.6
2005	-	-	-	12.9	68.0	19.2	11.9	69.2	18.9
2006	14.3	64.6	21.0	12.6	67.4	19.9	11.9	68.3	19.8
2007	14.8	63.9	21.3	12.9	66.7	20.4	12.6	67.0	20.4
2008	15.2	63.1	21.7	12.9	66.3	20.9	12.5	66.3	21.2
2009	15.3	63.1	21.6	13.0	66.8	20.1	13.1	66.9	20.0
2010	14.9	64.2	20.9	12.5	67.5	20.1	12.5	67.5	20.0
2011	15.2	64.0	20.8	12.3	67.7	20.1	12.4	67.7	19.9

주: 1) 2인 이상 비농가는 1인 및 농가 자료가 포함되지 않음

“
**2006년도 처분가능소득 기준
 중위소득인 약 2,570만원의 75~125%에
 해당하는 중산층 비중은 우리나라가 31.3%로
 OECD 21개국 가운데 16번째에 자리하며
 OECD 전체평균 34.7%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

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56.0%로 1994년의 70.7%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⁷⁾

중산층을 전체 가구 중 중위소득의 75~125%에 속하는 가구로 규정할 경우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의 중산층 비중은 국제적으로 상당히 낮은 편이다.⁸⁾ 2006년도 처분가능소득 기준 중위소득인 약 2,570만원의 75~125%에 해당하는 중산층 비중은 우리나라가 31.3%로 OECD 21개국 가운데 16번째에 자리하며 OECD 전체평균 34.7%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중산층의 범위를 좀 더 넓혀 중위소득의 50~150%에 포함되는 가구로 정의하더라도 한국은 58.9%에 불과해 여전히 OECD 국가 중 하위권(17위)에 머물러 있다.

기준 연도가 각 나라마다 달라서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덴마크,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 4개국은 중산층이 가장 두터운 국가임이 입증되었다. 반면에 미국은 멕시코 다음으로 중산층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각국의 중산층 비중

(단위: %)

국 가	처분가능중위가구소득의 75~125% 기준	처분가능중위가구소득의 50~150% 기준	해당연도
멕시코	22.7	45.4	2004
미국	28.5	55.0	2004
아일랜드	29.2	56.0	2000
그리스	30.4	59.6	2000
호주	30.6	61.3	2003
한국	31.3	58.9	2006
스위스	32.1	63.6	2002
벨기에	32.3	56.5	2000
이탈리아	32.5	60.9	2000
영국	33.3	62.1	2004
네덜란드	33.4	59.9	1999
스페인	34.5	61.2	2000
룩셈부르크	34.5	62.7	2004
캐나다	35.7	64.0	2004
오스트리아	35.8	64.9	2000
독일	36.3	66.4	2000
프랑스	37.3	67.7	2000
핀란드	40.7	71.2	2004
노르웨이	44.9	75.9	2004
스웨덴	46.5	76.9	2005
덴마크	46.7	77.5	2004
평균	34.7	63.2	

자료: 강성원 외(2010) 재인용

라. 선행연구

최근까지 중산층 관련 연구는 중산층의 규모 측정, 경제위기 전후의 중산층 약화 등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만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한국의 중산층 연구의 흐름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

7) 조용수 · 윤상해(2006)
 8) 강성원 외(2010)

어볼 수 있다.⁹⁾ 이론적·학문적 차원에서 '중산층을 하나의 계급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추상적인 논쟁의 시기를 거쳐, 중산층의 경제적·정치적 실체와 의미, 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논의들이 발전하였고,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는 중산층의 위기와 복원이라는 주제를 화두로 관련 연구와 담론들이 축적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이어진 초기 연구에서는 각기 계급론적 입장과 계층론적 입장에서 중산층, 중간층 혹은 중간계급에 대한 개념적 정의 및 계급구분의 기준에 대한 이론적 논의나 계급 규모에 대한 경험적 조사 등이 주를 이루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민주화를 향한 열망 하에 중산층의 이데올로기적 성격과 정치의식, 사회 변화에 대한 중산층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여기에 중산층의 생활방식에 대한 관심 또한 함께 높아져 갔다. 중산층에 대해 보다 실용적인 관심이 증대된 것은 IMF 이후 중산층의 몰락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정책적 차원에서 '중산층 살리기'가 본격화되면서부터였다.

외환위기 이후의 중산층에 대한 선행연구를 간략히 정리하면,¹⁰⁾ 중산층에 대한 정의는 중위소득의 일정 범위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1998년 이후 중산층 비율이 줄어들다가 2000년대 중·후반 이후 약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주의 소득은 소득계층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며(강성진 외(2010)), 가구주의 생애주기에 따라 소득계층의 이동에 따른 위기의 체감도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함인희(2012)).

“
**중산층에 대해 보다
 실용적인 관심이 증대된 것은
 IMF 이후 중산층의 몰락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정책적 차원에서 '중산층 살리기'가
 본격화되면서부터였다.**
 ”

중산층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는 물가안정 및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이러한 우선순위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동열(2012)).

III. 소득계층 간 이동: 노동패널을 이용한 분석

가. 중산층 규모 추이

제3절에서는 1999~2008년까지의 노동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소득계층 간 이동의 형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중산층은 가구소득이 전체 가구소득의 중위소득 50~150%에 속하는 가구로 정의하며, 가구소득은 가구원 전체의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것이다.¹¹⁾ 중산층의 비중을 계산할 때는 가구 규모를 고려하기 위해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전체소득을 나눈 값을 사용하였다.¹²⁾ 먼저, 1999년부터

9) 함인희 외(2009)

10) 외환위기 이후의 중산층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 결과는 <부록>을 참조하기 바람.

11) 각종 소득에 관한 자세한 정의는 노동패널 1~11차년도 통합설명지를 참조하기 바람. 아울러, 본고에서는 중산층을 소득만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득층' 혹은 '중간소득층'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엄밀한 용어라고 할 수 있으나 이하에서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중산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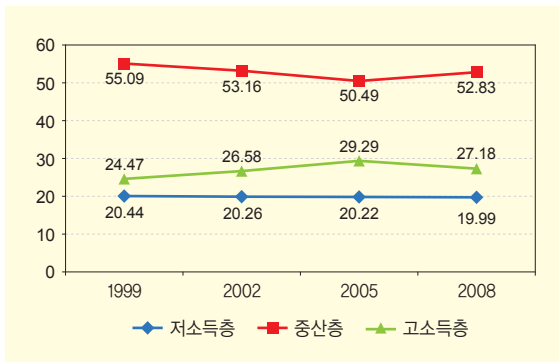
12) 가구의 소득과 소비와 관련하여서는 가구 규모(가구 구성원 수)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서로 다른 가구 규모를 반영하여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가구 규모에 따른 효과를 동등하게 하기 위한 조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조정을 동등화라고 한다. 동등화를 위해 사용하는 지수는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동등화 지수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김우철·민희철·박상원(2006)을 참조하기 바람.

“
**중산층은 1999년의 55.09%에서
 2005년 50.49%까지 하락하다가
 2008년에는 다시 52.83%로 상승하고
 있으며, 고소득층은 상승하다 하락,
 저소득층은 같은 기간 동안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8년까지의 소득계층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소득계층의 변화

(단위: %)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중산층은 1999년의 55.09%에서 2005년 50.49%까지 하락하다가 2008년에는 다시 52.83%로 상승하고 있으며, 고소득층은 상승하다 하락, 저소득층은 같은 기간 동안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¹³⁾ [그림 1]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소득계층의 변화가 주로 중산층과 고소득층에서 일

어나고 있으며, 저소득계층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거의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이 반드시 저소득계층을 포함한 계층 간의 변화가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하에서는 소득계층 간의 변화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소득계층의 이동에 관해서는 <표 4>와 같은 방법으로 파악하기로 한다.

<표 4> 소득계층 간 이동 파악

n년 \ n+3년	n+3년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저소득층	11	12	13
중산층	21	22	23
고소득층	31	32	33

소득계층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연도를 n년이라 할 때, 기준연도인 n년과 3년 후인 (n+3)년도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 소득계층을 비교하여 기준연도도 저소득층이었으며 비교연도도 저소득층이었던 경우는 11, 기준연도가 중산층이었으며 비교연도도 중산층인 경우는 22, 기준연도에는 중산층이었으나 비교연도에 저소득층인 경우는 21, 기준연도에는 저소득층이었으나 비교연도에 고소득층인 경우는 13과 같이 매트릭스 형태로 분류하면 기준연도와 비교연도 사이의 소득계층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하여 구한 것이 <표 5>이다.

13) 이상의 결과는 1990년대 이후 2010년까지 중위소득 50~150% 소득계층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청 가계조사 결과와는 다소 상이한 결과이다. 가계조사 결과와 노동패널 사이의 이와 같은 결과는 일찍부터 지적되어 온 것으로(예컨대, 강성진·이우진(2009), 강성진 외(2010))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표 5〉 연도별 소득계층 이행확률

1999~2002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저소득층	0.54	0.40	0.06
중산층	0.16	0.66	0.19
고소득층	0.07	0.36	0.57
2002~2005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저소득층	0.60	0.36	0.04
중산층	0.13	0.67	0.20
고소득층	0.04	0.35	0.61
2005~2008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저소득층	0.61	0.34	0.06
중산층	0.15	0.70	0.15
고소득층	0.05	0.37	0.59

〈표 5〉로부터, 저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머물 확률은 1999년에서 2002년 사이에는 54%였으나, 2002~2005년은 60%, 2005~2008년은 61%로 약간 상승하고 있으며, 중산층이 중산층을 유지할 확률은 66→67→70%로 약간 상승하고 있으며, 고소득층이 고소득층을 유지할 확률은 57→61→59%로 약간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책적 측면에서 중산층과 관련하여 보다 의미 있는 소득계층 간 이동은 중산층과 저소득층 사이이므로 양자의 이행 확률을 살펴보면, 중산층이 저소득층으로 이행할 확률은 1999년에서 2002년 사이에는 16%였다가 2002~2005년은 13%로 3%p 정도 하락하였으나 2005~2008년은 15%로 2%p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이행할 확률은 각각 40→36→34%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이 결과는 2000년 이후 중산층이 저소득층으로 이행할 확률은 상승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이행할 확률은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고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유입되는 비중

“
2005년 이후의 중산층 비중 증가는
고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아님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

의 변화를 보면 1999년에서 2002년 사이에는 36%, 2002~2005년은 35%, 2005~2008년은 37%로 2000년대 중반 이후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은 2005년 이후의 중산층 비중 증가는 고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아님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를 보다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표 6〉이다.

〈표 6〉 소득계층 간 이동(각 연도 전체 표본 기준)

(단위: %, 가구)

	1999~2002	2002~2005	2005~2008
11	11.28	12.2	12.17
12	8.18	7.41	6.95
13	1.25	0.8	1.11
21	8.31	6.72	7.46
22	36.55	35.43	35.63
23	10.43	10.87	7.79
31	1.48	1.09	1.44
32	8.72	8.99	10.01
33	13.8	16.49	17.44
전체 가구 수	3,612	3,711	4,218

〈표 6〉의 이행확률을 1열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11의 11.28%는 1999년 전체 3,612가구 가운데 11.28%인 417가구가 2002년에도 저소득층에 해당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모를 전체 가구 수로 하였

“
**중산층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는
 중산층으로 유입되는 가구를 증가시키는 방법과
 중산층으로부터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

기 때문에 규모에 따른 계층 간 이동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표 6>으로부터 전체표본을 분모로 하였을 경우의,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이동할 확률(12)은, 1999~2002년 8.18%에서 2002~2005년에는 7.41%, 2005~2008년에는 6.95%로 매년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이동할 확률은 각각 8.31→6.72→7.46%로 2000년대 초반에 감소하였으나 중반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2002~2005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유입될 확률보다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유입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고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유입될 확률은 8.72→8.99→10.01%로 2000년대 들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저소득층으로 중산층이 유출되고 있으나, 중산층 비중을 유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득계층 간 이동을 연령별로 살펴볼 때 우선, ¹⁴⁾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저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상태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비중이 모든 연도에서 대단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은 60세 이상의 고연령층에서는 한번 저소득층으로 이행하면 계속하여 저소득층에 머무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한편 고연령층은 중산층에서 중산층, 고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 계속하여 동일한 소득계층을 유지하는 비중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지

않으며, 저소득층에서 중소득층, 고소득층으로 이동할 확률보다는 반대로 중소득층,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이행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소득계층 이동의 특징

중산층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는 중산층으로 유입되는 가구를 증가시키는 방법과 중산층으로부터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중산층으로의 유입은 저소득층, 고소득층에서 모두 가능하나 바람직한 현상으로서 저소득층으로부터의 유입이 될 것이며, 유출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중산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유출이 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양자의 경우를 1999~2002년, 2002~2005년, 2005~2008년의 3기간에 걸쳐 가구주의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표 7>은 소득계층의 변화가 있었던 가구를 가구주 특성별로 분류한 것이다. 1999년에서 2002년 사이에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이동한 가구를 중심으로 가구주 특징과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이동한 가구의 가구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이동한 가구의 경우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이동한 가구에 비해 가구주의 학력에서 고학력자의 비중이 높다. 이러한 경향은 2002~2005년, 2005~2008년의 경우에도 발견되는 현상으로, 가구주의 학력이 높을수록 중산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가구주의 성별과 소득계층과의 연관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1999~2002년의 경우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이동한 경우가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이동한 가구에 비해 남성이 가구주의 비

14) 20대부터 40대까지의 연령층별 이행확률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20대에서 40대의 구성비는 값 자체는 다르나 크거나 변화의 경향은 50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중이 높았으나 2002년 이후에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셋째, 가구주의 연령과 관련하여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1999년에 비해 2008년의 경우가 모든 경우에서 60대 이상 가구주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이동한 가구의 경우 50세 이상 가구주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가구주의 연령과 소득계층 간 이동의 관련성은 뒤에 설명할 일자리-취업상태 및 경제활동 상태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취업상태의 경우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이동한 가구와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이동한 가구 사이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는 항목이다.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1999~2002년의 경우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이동한 가구의 경우 1999년에는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전체의 24.5%에 지나지 않았으나, 2002년에는 그 비율이 33.9%로 증가하고 있으며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자영업자의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시기에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이동한 가구의 경우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28%에서 21.6%로 대폭 감소한 반면, 일용직이나 고용주/자영업자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어 관측은 일자리 여부와 소득계층 간 이동 사이에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¹⁵⁾ 이러한 연관성은 2002~2005년, 2005~2008년 모든 경우에서 동일하게 뚜렷이 관찰되는 현상으로 소득계층 이동에 일자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
**경제활동상태와 소득계층 간 이동은
 가구주 가운데 취업자의 비중이 증가하면
 소득계층이 상향으로 이동하고,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증가할 경우
 하향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다섯째, 경제활동상태와 소득계층 간 이동은 위의 취업상태의 결과를 다시 확인시켜주는 결과로 가구주 가운데 취업자의 비중이 증가하면 소득계층이 상향으로 이동하고,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증가할 경우 하향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제활동상태와 취업상태가 소득계층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이와 같은 영향력이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50세 이상의 연령층에 한정하여 살펴본 것이 <표 8>이다.

<표 8>의 첫 번째 패널인 1999~2002년 50~59세 연령층의 취업자 및 상용근로자 비중은 1999년 당시 저소득층이었던 가구 가운데 2002년 중산층으로 이행한 가구의 1999년 당시의 가구주 취업상태 비중 및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63.49%, 11.68%였으며, 2002년에는 각각 82.14%, 30.6%임을 나타낸 것이다.¹⁶⁾ 60세 이상의 연령층의 경우 1999년에는 취업자 비중이 41.88%, 상용근로자 비중이 10.78%였으며, 2002년에는 각각 46.08%, 14.21%이다. 1999~2002년 사이에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이동한 가구의 가구주는

15) 표본 수가 충분할 경우 가구주의 취업상태 변화에 따라 소득계층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보다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작연도의 취업 상태와 3년 후의 취업 상태를 (상용, 상용), (상용, 임시)...(무급, 무급)과 같이 각각의 패턴별로 구분한 다음 패턴별로 소득계층의 변화를 구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로는 각각의 패턴에 대응하는 충분한 표본수를 확보할 수 없어, 시작연도와 3년 후의 가구주의 취업상태 비율로 취업상태의 변화와 소득계층 간 이동을 파악하였다.

16) 1999년과 2002년 사이에 3년의 시간이 존재하므로 1999년에 50~59세 연령층에 속하는 사람과 2002년에 동 연령층의 속하는 사람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즉 1999년에는 50대 연령층에 속했으나 2002년에는 60대 이상의 연령층으로 분류되는 표본이 있을 수 있다.

〈표 7〉 소득계층 간 이동과 기구주의 특성

(단위: %)

	1999~2002		1999~2002		2002~2005		2002~2005		2005~2008		2005~2008	
	저소득층-중산층	중산층-저소득층	중산층-저소득층	저소득층-중산층	2002	2005	중산층-저소득층	저소득층-중산층	2005	2008	중산층-저소득층	저소득층-중산층
학력	고졸 이하	52.46	64.84	55.28	60.68	50.17	56.71					
	고졸	35.08	25.81	33.10	28.68	30.64	32.62					
	대졸	12.13	8.39	10.21	10.47	16.50	9.76					
	대졸 이상	0.33	0.97	1.41	0.78	2.69	0.91					
성	남성	86.23	73.55	76.41	75.58	73.74	73.17					
	여성	13.77	26.45	23.59	24.42	26.26	26.83					
	20대	6.89	1.29	2.82	3.49	8.08	2.13					
	30대	21.97	10.97	12.32	14.73	16.50	12.20					
연령	40대	25.25	23.55	23.24	21.71	24.92	16.16					
	50대	19.67	21.94	21.83	19.38	17.17	19.21					
	60대 이상	26.23	42.26	39.79	40.70	33.33	55.30					
	상용	24.49	33.90	28.00	21.57	22.01	30.49	27.27	33.16	39.11	34.05	26.75
취업 상태	임시	9.18	8.47	9.71	5.88	8.18	6.71	5.08	9.79	10.16	8.42	7.57
	일용	22.45	16.95	13.14	18.95	18.87	17.68	13.56	18.18	16.58	18.81	11.89
	고용주/자영업	41.84	40.68	47.43	52.94	49.06	44.51	39.55	44.76	38.50	33.17	44.86
	무급	2.04	-	0.57	0.65	1.89	0.61	2.26	-	1.60	0.50	1.62
경활	취업	64.92	77.38	57.10	49.35	55.99	57.75	68.60	55.43	62.96	68.01	56.40
	실업	7.54	1.31	6.45	3.23	3.52	3.52	0.39	3.88	4.04	1.68	2.13
	비경활	27.54	21.31	36.45	47.42	40.40	38.73	31.01	40.70	33.00	30.30	41.46

연령에 관계없이 취업을 하고 있는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상용근로자의 비중도 증가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소득계층의 상향 이동에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 및 취업상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계층이 하향 이동한 가구의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를 보면 50대가 65.85%에서 59.21%, 60세 이상이 37.91%에서 30.8%로 낮아졌으며,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50대가 13.18%에서 23.07%로 증가하였으나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19.33%에서 9.35%로 낮아졌다. 50대 가구주의 상용근로자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히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경제활동상태 및 취업상태의 악화가 소득계층의 하향 이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모든 결과가 시사하고 있다.

경제활동상태 및 취업상태가 소득 결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일관적이며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이상의 결과는 2002~2005년, 2005~2008년에서도 발견되는 현상이다. 이는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가 소득계층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가구주가 60세 이상이 되더라도 계속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가능하다면 임시직이나 일용직보다는 상용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두터운 중산층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⁷⁾

“
경제활동상태 및 취업상태가 소득 결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일관적이며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

〈표 8〉 연도별·연령별 취업상태의 변화

(단위: %)

〈1999~2002〉		50~59세		60세 이상	
		1999	2002	1999	2002
저소득층	취업자비중	63.49	82.14	41.88	46.08
중산층	상용근로자비중	11.68	30.6	10.78	14.21
중산층	취업자비중	65.85	59.21	37.91	30.8
저소득층	상용근로자비중	13.18	23.07	19.33	9.35
〈2002~2005〉		50~59세		60세 이상	
		2002	2005	2002	2005
저소득층	취업자비중	62.55	64.04	30.57	25.33
중산층	상용근로자비중	7.8	18.36	9.22	33.76
중산층	취업자비중	78.31	61.14	48.9	37.36
저소득층	상용근로자비중	29.8	32.53	22.18	14.41
〈2005~2008〉		50~59세		60세 이상	
		2005	2008	2005	2008
저소득층	취업자비중	65.9	66.34	32.25	49.72
중산층	상용근로자비중	30.67	28.59	15.37	32.49
중산층	취업자비중	54.97	58.67	35.14	28.17
저소득층	상용근로자비중	36.4	30.01	28.97	23.2


IV. 결론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의하면 한 가구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근로소득의 비중은 평균 90% 이상으로 절대

17)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가구주의 연령이 30대, 40대인 경우도 가구주의 취업 여부 및 상용근로자 여부가 소득계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거의 모든 연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지출의 경우 식비, 주거비, 교육비(공공, 사교육) 등도 속한 소득계층에 따라 그 수준에 차이는 있으나 소득계층 이동에 따른 큰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중산층에 속해 있던 어떤 가구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도 중산층을 유지할 것인지 혹은 다른 소득계층으로 이동을 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은 근로소득이며, 이는 다시 일자리로 귀결된다. 즉, 소위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를 발견하거나 유지할 경우 중산층 유지는 물론이거니와 고소득층으로의 이동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임시직·일용직과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 일자리를 잃는 경우 혹은 비경제활동인구화한 경우는 소득계층이 하향 이동할 수밖에 없다.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소득계층 간 이동이 주로 일자리의 여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는 이상의 사실은 일자리의 창출이 두터운 중산층 확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무작정 일자리를 증가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중산층의 증대와는 연결되지 않을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즉, 상용직의 증가는 중산층으로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나, 임시직·일용직의 경우 오히려 중산층의 하향 이탈을 촉진하고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 하여 질을 고려하지 않은 일자리의 양적인 팽창은 오히려 역효과를 야기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성진 외, 『중산층의 추이, 이탈원인과 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 강성진·이우진, 『성장, 빈곤, 불평등과 사회지출의 상호관계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 김동열, 「중산층의 자신감이 무너지고 있다-‘중산층 의식’의 약화와 내핍생활 확산」, 『경제주평』 12-30(통권 제501호), 현대경제연구원, 2012
- 김용기 외, 「한국 중산층의 변화와 경제사회적 결과」, 삼경경제연구원 Issue Paper, 2010
- 김우철·민희철·박상원, 『소득재분배정책을 위한 동등화 지수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6
- 남준우,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의 규모 및 소득 변화의 추이」, 『노동정책연구』 제7권 제4호, 한국노동연구원, 2007, pp. 1~24.
- 박영근 외, 「공교육 강화를 통한 중산층 안정기반 구축과 확대: 지방중산층과 교육현황을 중심으로」, 『마케팅논집』 제19권 2호, 한국전략마케팅학회, 2011, pp. 97~120.
- 유경준·최바울, 「중산층의 정의와 추정」, 『KDI 재정·사회정책동향』 제2권 제1호, 한국개발연구원, 2008, pp. 84~96.
- 윤희숙, 「중산층 현황에 대한 다면적 분석과 중산층 확대전략에의 시사점」, 『KDI 경제전망』 제30권 제1호, 한국개발연구원, 2013
- 조용수·윤상하, 「양극화시대, 중산층은 안전한가」, 『LG 주간경제』, LG 경제연구원, 2006
- 최경수, 「사회통합의 과제와 저소득층 소득향상」, 『KDI 정책포럼』 제191호, 한국개발연구원, 2008, pp. 1~25.
- 최효미, 「중산층의 사회계층 소속감에 대한 분석-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 사례」, 『노동리뷰』 제46

호, 한국노동연구원, 2008, pp. 73~84.

함인희, 「사회경제적 위기와 중산층 가족의 “품위 하락”(Falling from Grace): 가장의 실직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제43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2, pp. 531~569.

함인희 · 최유정 · 나영선, 『중산층 복원을 위한 일자리 정책과제—중산층 전변 확대 및 일자리 정책 발굴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

홍성민 · 민주홍, 「IMF 시대의 중산층 약화 실태 및 재구축 방안」, VIP report, 현대경제연구원, 1999

Wonsik Choi et al., *Beyond Korean style: Shaping a new growth formula*, McKinsey Global Institute, 2013

〈부표 1〉 선행연구에 나타난 중산층 정의 및 주요 연구결과

연구자	중산층 정의	주요 연구결과
홍성민 · 민주홍 (1999)	- 근로자가구의 소득 10분위 자료를 이용하여 4~7분위 (월 175만~395만원)를 중산층으로 구분	- 중산층 약화의 원인: ① 노동수요 급감에 따른 대량실업 사태, 고용불안감 심화, 임금하락 ② 경쟁력이 취약하여 고용조정의 주 대상 ③ 자산디플레이, 고금리로 인한 이자비용 증대 등에 따른 富의 감소 - 중산층 약화의 파급효과: 사회통합력 저해, 내수침체 지속, 사회구조 양극화 등의 부작용 초래 - 정부대책: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경기반 확대, 중간관리자층 대상 직업훈련프로그램 마련 및 직업안정망 확충, 기존 사회안전망의 효율성 제고 및 향상적 사회안전망 구축, 조세 및 생활비용 부담의 완화를 통한 가처분소득 보전
남준우(2007)	- 중위소득 75~150%	- 중산층 비중은 지속 감소(1998년 42.3% → 2004년 40.7%), 소득양극화 현상 심화, 중산층에서 이탈한 계층은 하위층으로 더 많은 비중이 이동 - 소득이동에 대해 분석한 결과 남성가구주, 고학력가구, 타인에 고용되었거나 서울 및 광역시 거주자가 이득을 본 승자로 구분되었으며 여성가구주, 저학력가구, 자가 고용자 및 기타 시·군에 거주하는 가구가 손해를 본 패자로 구분됨
유경준 · 최바울 (2008)	- 중위소득 50~150% - 소득점유율 기준 중위 60%에 속한 가구	- 중산층 관련 지표는 외환위기 이후 최근까지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소득불평등도 확대에 따라 중산층의 가구 비중은 점차 축소 • 중산층의 소득점유율은 외환위기 직후 크게 하락했다가 회복된 후 재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중산층의 몰락을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울프슨(Wolfson) 지수 역시 다소 확대 추이 - 중산층 관련 지표의 약화는 경기적인 영향 외에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에 따른 자영업 종사자들의 추락과 가족제도의 해체에 따른 빈곤한 1인가구의 증가가 주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
최경수(2008)	-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의 중위 60%	- 외환위기 시 급감한 중위 60%의 소득점유율이 2001년 저점을 지난 후 2003년경 1997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관찰됨
최효미(2008)	- 객관적 중산층: 중위소득 50~150% - 주관적 중산층: 사회계층 소속감	-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객관적 지위와 주관적 판단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위 간에는 약간의 괴리가 존재함을 발견 - 가구소득뿐 아니라 인적 특성(학력/연령/직종 등), 주택소유 여부,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산층을 정의하는 것이 사회정서를 더 잘 반영
강성진 외(2010)	- 중위소득 50~150%	- 외환위기 이후 개별 가구의 소득이동 추이를 이행행렬을 통해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에서 소득계층의 이동은 상대적으로 동학적인 경향을 보임 • 1997~2007년 소득계층이 변동하지 않았던 가구의 비중은 전체 표본가구의 53.4%에 해당(22.2%는 계층 하락, 24.4%는 계층 상승) - 중산층의 이탈을 결정짓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이항선택모형을 이용하여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실시 • 가구주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 중 가구주의 연령, 기혼자, 남성 등은 소득이동 단계에서 대체로 소득상승에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 중에서는 자가주택 보유자, 도시 거주자 등이 소득상승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음 - 중산층의 복지의식에 대한 분석 결과는 특정계층에 집중한 정책보다 전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더 적절함을 시사
박영근 외(2011)		- 지방중산층 육성 단기정책: 중·저소득층 소득보전과 소득감소를 막는 정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 주거비·교육비·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한 중·저소득가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 정책,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고소득층에 대한 세원 발굴 및 세금부담 형평성 강화 정책 등 - 지방중산층 육성 장기정책: 국가의 미래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대 정책, 사회 간접자본시설 확대 정책, 근로자 및 경영자의 수준 제고 정책,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정책, 연관서비스산업 지원을 통한 핵심산업 지원 정책 등 - 지방중산층 활성화 핵심 교육 정책으로 자녀에 대한 영어공교육의 강화 정책 및 소요비용의 대부분을 국가가 각급 학교별로 재정지원

<부표 1>의 계속

연구자	중산층 정의	주요 연구결과
김동열(2012)	- 중산층 귀속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국민들의 중산층 귀속의식은 크게 약화되었으며, 알뜰소비를 늘리고 외식을 줄이는 등 생활도 어려워지고 있음 • 2011년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본 중산층 비중은 64.0%이나 주관적으로 중산층이라고 느끼는 응답자는 46.4%에 불과 • 저소득층으로 하락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19.1%에 달하며 계층하락의 원인으로는 소득감소(32.7%)와 부채증가(17.6%)를 가장 많이 지적 - 중산층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물가안정(23.2%), 일자리 창출(19.7%)에 우선순위가 매겨졌으나 세대별 요구가 다른 것으로 나타남
함인희(2012)	- 중위소득 50~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2008년 기간 중 중산층으로부터 탈락한 집단을 규명한 후 외환위기 당시 가장의 실직으로 인해 계층하강이동을 경험했던 중산층 가족의 사례를 토대로 가족구성원이 겪게 되는 심리적·정서적 품위 하락(Falling from Grace) 및 가족 차원의 위기 극복과정을 분석 - 중산층 자체가 이질적 요소를 내포한 집단으로서 위기에 보다 쉽게 노출되는 층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특히 가장의 생애주기에 따라 위기의식의 체감도가 달리 나타나고 있음을 포착 • 가장으로서 책임의식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한 죄책감, 좌절, 자신감 상실에서부터 국가와 조직을 향한 분노, 피해의식, 절망감에 이르기까지 가장들이 겪은 심리적·정서적 품위 하락의 실례 제시
매킨지(2013)	- 가구당 소득 37,000달러의 50~150%를 벌어들이는 중간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 한국경제는 뜨거워지는 물속에 개구리 같다”며 “신성장 동력을 찾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는 추락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 - 한국의 중산층 가구 비중은 1990년 75.4%에서 2010년 67.5%로 감소되었고, 중산층 가운데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가구도 54.8%나 됨 • 안정된 일자리 감소로 소득은 제자리이거나 줄고 있는데 자녀 사교육비와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가계빚이 늘면서 적자가구로 전락했고 빈곤층으로 추락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지적 - 대기업과 제조업 중심의 성장 방식에서 탈피해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중산층의 빈곤화를 막아야 한다고 제안 • 단기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저금리 모기지대출로 전환하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커버드본드를 발행 • 한국의 지나친 학벌우선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마이스터 고교를 확대 •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
윤희숙(2013)	- 중위 60% - 중위소득 50~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는 현재 중위 60% 인구의 소득점유율이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국가 간 비교에서도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남 - 중위소득 50~150% 내 인구비중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중산층 비율(2인 이상 도시가구)은 1992년 76.3%에 도달한 후 2008년 66.3%까지 내려갔다가 소폭 상승하여 2011년 67.7%를 기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현황 및 향후과제¹⁾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sjyoon@kipf.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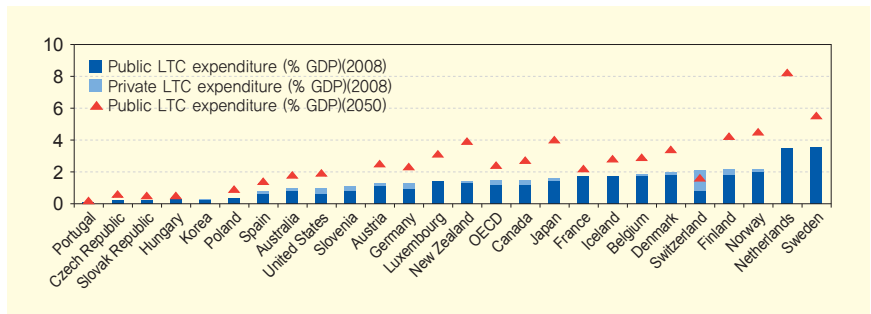
I. 서론

장기요양이란 신체적·정신적 문제로 인하여 오랜 기간 동안 목욕, 옷입기 등 일상적인 행동(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을 스스로 할 수 없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장기요양의 대상은 고령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장기간 겪고 있는 노인층 및 사고 등으로 인한 장애인으로, 이 중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이다.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의 책임이 가족·개인 또는 사회에 있는지 여부는 각 국가·사회의 문화, 철학, 인구구조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현상, 가족구조의 변화 및 여성경제 참가율 증가와 같은 사회구조 변화는 향후 공식적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공식적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수요 증가와 더불어,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양질의 급여에 대한 수요 증가는 각국의 노인 장기요양 지출을 급속히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림 1] OECD 국가별 GDP 대비 장기요양 지출

(단위: %)



자료: OECD(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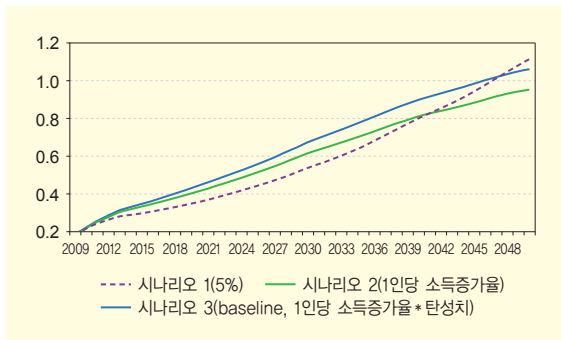
1) 본 원고는 현재 저자가 진행중인 윤성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중·장기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지출효율화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진행 중의 일부를 발췌·정리한 것임.

2008년 기준 OECD 국가의 GDP 대비 장기요양 지출 비중은 OECD 평균 1.5% 수준이나,²⁾ 2050년에는 많은 국가에서 GDP 대비 장기요양 지출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장기요양 지출이 2050년에 GDP의 약 8%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국가들과 비교 시 상대적으로 고령화율이 낮은 시기인 2008년에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현재 제도 도입 6년 차를 맞이하고 있다. 2010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16.5% 수준이나 2050년에는 38.2%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장기요양 수요가 높은 80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0년 2% 수준에서 2050년에는 약 15%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형수·전병목(2009)에 의하면, 2009년 GDP 대비 0.19% 수준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규모가 2050년에는 GDP 대비 1.06%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³⁾

[그림 2]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추계 결과

(단위: GDP 대비, %)



자료: 박형수·전병목(2009), [그림 III-2-2]

“
**장기요양 수요가 높은 80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0년 2% 수준에서
 2050년에는 약 15%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향후 노인장기요양 관련 지출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양육·보육 지원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은 양육·보육과 유사한 측면이 존재한다. 가구 내에 영유아 또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이 존재할 경우, 외부시설에 위탁하거나 가구원 중 누군가는 경제활동 시간을 줄이고 이들을 돌보아야 한다. 즉, 가계의 경제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사회·정부가 개입하여 그 영향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이 요구된다.⁴⁾ 그러나 양육·보육 문제와 비교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장기요양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향후 인구고령화가 가속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의 문제는 양육·보육 문제 못지않게 사회·국가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 도입 후 제도의 고용창출효과·임상효과 조사, 제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 의료·사회서비스와의 연계방안, 부정수급·등급판정 등 제도의 운영·관리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지출 측면 중심의 논의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소개 및 현황 파악, 그리고 제도의 향후과제를 지출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미 스웨덴과 네덜란드의 경우 장기요양 지출 수준이 GDP 대비 각각 3.6%, 3.5%로 OECD 평균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3) 박형수·전병목(2009), 시나리오 3, baseline 기준.

4) 양육·보육 및 노인장기요양과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정서적 측면(mental health)도 하나의 이슈로 나타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사회보험의 형태로 2008년 7월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다.**
 ”

II.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및 현황

1. 개요

가. 제도배경 및 목적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사회 내에서 요양보호가 필요한 고령자의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저출산·핵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율 증가 등의 사회구조적 변화로 인하여 고령자 요양에 대한 책임이 가족에서 사회·국가로 이동하고 있다. 또한 요양비용에 대한 높은 부담⁵⁾ 및 요양목적의 의료기관 장기입원 등은 건강보험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과 같은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사회보험의 형태로 2008년 7월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다. 이는 고령자에게 필요한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해당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⁶⁾

나. 관리·운영 체계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에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한다. 사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작업 등을 담당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로서 보험가입자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및 징수, 신청자 등급판정, 급여 관리·평가 및 급여비용 심사·지급, 제도 조사·연구·홍보, 서비스 전달체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장기요양기관은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제공한 급여에 대한 비용을 공단에 청구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지정 등의 권한을 가지고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다. 급여대상 및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⁷⁾ 등으로 인해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자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조사 후 1~3등급의 장기요양인정을 통보받은 자들이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⁸⁾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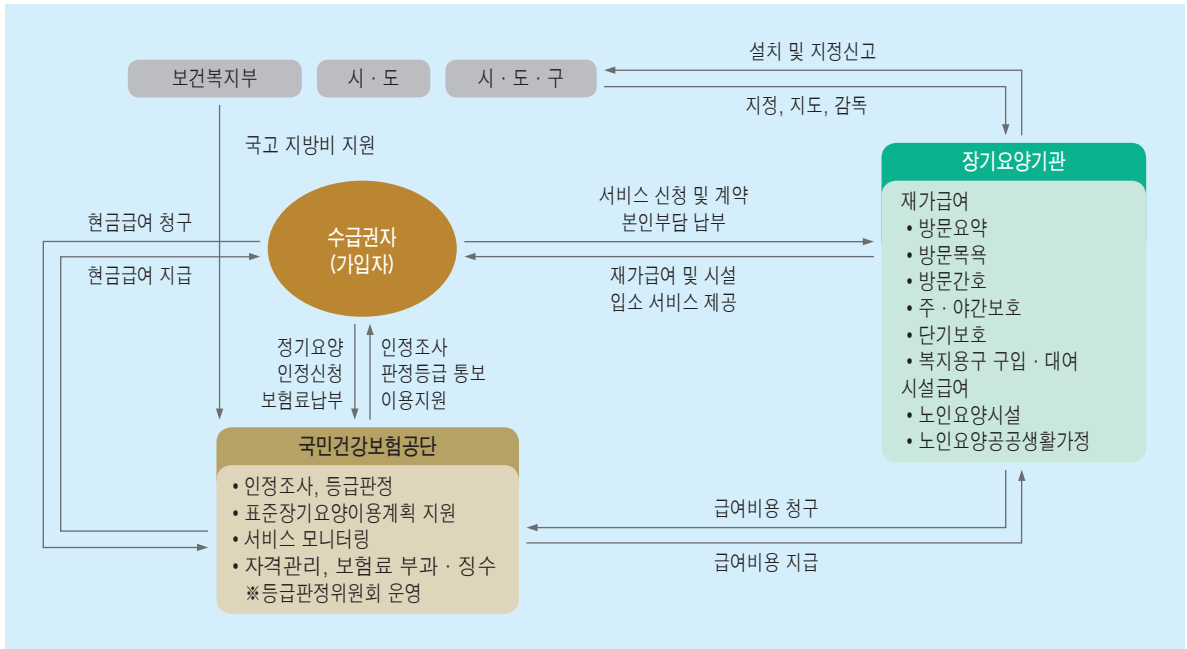
5) 월 100만~250만원 수준.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7)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8) 국가별로 자산조사를 실시하는 사회보장체계, 자산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보편적체계, 급여에 따라 자산조사 여부가 상이한 혼합시스템 제도가 존재하는데, 우리나라는 자산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보편적 시스템에 속한다.

[그림 3]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리·운영 체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각 지사에 위치한 장기요양센터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직원이 신청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등 5개 영역 52개 항목의 기능상태·환경상태 및 서비스 욕구 등을 조사하게 된다.⁹⁾ 시·군·구 단위로 설치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¹⁰⁾는 공단직원의 방문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고려하여 신청자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신상태와 장기요

양 필요 정도 등을 판정기준에 근거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장기요양보험 급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라 3개 등급(1~3등급)¹¹⁾으로 나누어지며,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필요한 도움 수준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경우 1등급으로 판정된다.

9) 이때, 공단 직원은 전문가들에 의하여 작성된 장기요양인정 조사표에 근거하여 신청자의 상태를 조사한다.

10) 보건·복지·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된다.

11)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자의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근거하여 급여대상자를 선정하며,
 대상자는 점수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

〈표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대상자 범위

구분	적용 대상자 범위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자	전국민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건강보험과 동일)+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적용대상이 됨
보험료를 부담하는 자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로 하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한 개별보험료는 건강보험제도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그대로 활용하여 산정
장기요양인정 신청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
장기요양급여 인정자	장기요양인정 신청인 중 6개월 이상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장기요양센터는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1~3등급)자로 판단·인정된 자들에게 장기요양인정서¹²⁾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¹³⁾를 통지하며, 인정자는 이에 근거하여 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인정자는 스스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 장기요양기관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계약내용을 반영하여 세부급

여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급여서비스를 제공한다.

[참고]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3조)

- 해당 급여는 노인 등의 심신상태·생활환경·수급자를 포함한 가족의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요양을 받는 재가급여 제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 장기요양 3등급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시설급여가 제한됨. 그러나 i) 동일세대 가족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ii)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iii) 치매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시설입소 여부 결정
- 수급자의 심신상태·건강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급여에는 재가·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등 6가지 서비스가 있으며, 등급별 서비스급여 한도액¹⁴⁾은 1등급 월 1,140,600원, 2등급 월 1,003,700원, 3등급 월 878,900원으로 1등급의 한도액이 가장 높게 책정되어 있다.

12)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 종류 등이 기재.

13) 이수급자가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급자 개인별 기능상태·욕구를 반영하여 작성한 장기요양 적정급여 이용계획서.

14) 2013년 기준(매년 변경).

〈표 2〉 재가급여 종류

종류	내용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단기보호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기타재가급여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1항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¹⁵⁾ 등이 입소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로,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는 식재료비, 상급침실 이용료, 이·미용비 등의 비급여 항목이 별도로 존재한다. 특별현금급여¹⁶⁾에는 가족요양비,¹⁷⁾ 특례요양비,¹⁸⁾ 요양병원간병비¹⁹⁾ 등이 급여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 중 모든 장기요양등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운영을 위한
재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중앙정부로부터의
국고지원, 중앙·지방정부의 의료급여 부담금,
기타수입으로 구성된다.
”

급에 대하여 월 15만원이 동일하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가족요양비만이 현재 시행되고 있다.

라.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운영을 위한 재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중앙정부로부터의 국고지원, 중앙·지방정부의 의료급여 부담금, 기타수입으로 구성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총수입 = 보험료 + 국고지원 + 의료급여부담금 + 기타수입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의 일정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과·징수되며,²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한다. 이때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며, 또한 두 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15)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시설로 노인전문병원 제외.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에서 전환된 노인요양시설, (구) 전문요양시설 등이 있으며 시설과 등급에 따라 1일당 급여수준이 상이(37,460원~52,640원).

16) 「노인장기요양법」 제23조.

17)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그리고 신체·정신·성격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가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수급자 가족이 방문요양에 상당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급여를 현금의 형태로 지급.

18)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에게 특례요양비로 지급하는 것.

19) 수급자가 요양병원·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한 때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하는 것.

2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 「노인장기요양법」 제8조, 제9조.

“
**「노인장기요양법」 제40조에 의거
 급여서비스 이용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즉, 일반대상자의 경우
 재가·시설급여이용에 대하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와 20%를
 각각 부담하여야 한다.**
 ”

지며,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지역가입자(세대단위)인 경우 본인이 보험료 100%를 부담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를 부담한다. 단, 공무원·교직원인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가입자와 소속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를 부담하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와 국가가 각각 30%, 20%를 부담한다.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사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노인장기요양법」 제40조에 의거 급여서비스 이용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즉, 일반대상자의 경우 재가·시설급여이용에 대하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와 20%를 각각 부담하여야 한다. 단, 의료수급권자,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²¹⁾의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의 50%를 감경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단, 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그리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대해서는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표 3〉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재가급여	시설급여
일반대상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경감자 (기타의료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7.5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면제

주: 급여 중 본인부담금 이외의 부분은 공단·국가(자치체)가 부담. 일반대상자·경감자의 본인부담금 외 급여는 공단이 부담.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급여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8:2(서울은 5:5)로 부담.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급여비는 100% 지방비(분권교부세 포함)로 충당.

2. 현황

가. 신청·인정자 현황

제도가 도입된 2008년 이후 65세 이상 노인인구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1년의 경우 노인인구 5,644,758명 중 10.93% 수준인 617,081명이 노인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하였으며, 이 가운데 77.73%에 해당하는 478,446명이 등급 내(1~3등급) 또는 등급 외(A~C등급)²²⁾로

21) 경감자 및 기타의료수급권자.

22) 등급 외 판정을 받은자는 등급 내 판정자와 같은 급여수급대상이 아니지만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노인장기요양 급여서비스를 전액 본인 부담에 이용할 수 있다.

판정을 받았는데, 그 비중은 각각 67.8%, 32.2%로 나타나고 있다.

즉, 2011년 기준 전체 노인인구 중 8.48%가 등급 내·외 판정을 받았으며, 5.7%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대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8년 대비 1.5%p 증가한 것이다.

〈표 4〉 연도별 인정자(율) 현황

(단위: 명, %)

	2008	2009	2010	2011
노인인구(A)	5,086,195	5,286,383	5,448,984	5,644,758
신청자	355,526	522,293	622,346	617,081
판정자(B)	265,371	390,530	465,777	478,446
인정자(C)	214,480	286,907	315,994	324,412
인정률(C/B)	80.8	73.5	67.8	67.8
비율(C/A)	4.2	5.4	5.8	5.7

- 주: 1. 노인인구는 65세 이상을 의미
- 2. 판정자는 등급 내외 등급 외 모두 포함
- 3. 연도 말 기준(각 연도 사망자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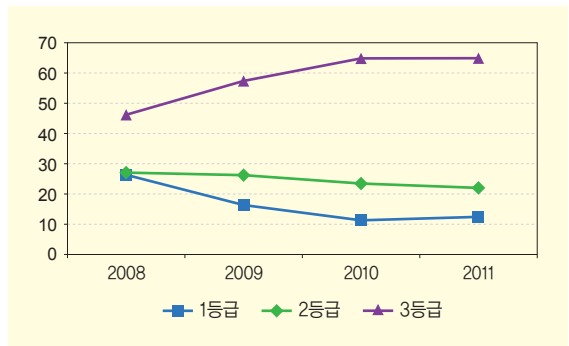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인정자 중 건강상태가 가장 좋지 못한 1등급의 비율은 2008년 26.76%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 현재 12.74%로 14.02%p 감소하였으며, 2등급 역시 2011년 현재 2008년 대비 4.83%p 감소한 22.39% 수준이다. 반면, 3등급의 경우 2008년에는 인정자의 46.02% 수준이었으나 2011년에는 그 비중이 64.87%로 18.85%p 증가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장기요양보험료의 기준액이 건강보험료이므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동결되더라도 건강보험료율이 증가하면 장기요양보험료는 증가하게 된다. ”

[그림 4] 등급별 인정자 현황

(단위: %)



나. 보험료율 현황

장기요양보험료율²³⁾은 2008년 제도 도입 당시 4.05%에서,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4.78%, 6.55%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현재까지 6.55%로 유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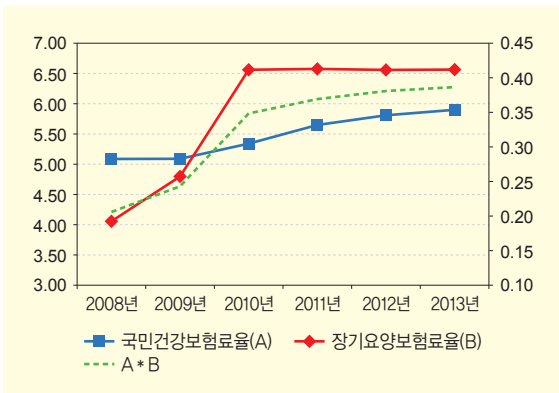
$$\begin{aligned}
 \text{건강보험료} &= \text{보수월액} \times \text{국민건강보험료율} \\
 \text{장기요양보험료} &= \text{건강보험료} \times \text{장기요양보험료율} \\
 &= \text{보수월액} \times \text{국민건강보험료율} \times \text{장기요양보험료율} \\
 &\quad (\text{국민건강보험료율} \times \text{장기요양보험료율} = \text{combined rate})
 \end{aligned}$$

23)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 부담한다.

장기요양보험료의 기준액은 건강보험료이고,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과 국민건강보험료율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동결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료율이 증가하면 장기요양보험료는 증가한다. 즉, 국민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의 곱인 combined rate는 2008년 0.21%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3년 현재 0.39%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5] 장기요양보험료율 현황

(단위: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DB.

다. 재정수지 현황

제도가 도입된 다음연도인 2009년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의 수입과 지출은 각각 2조 849억원과 1조 9,085억원 수준이었으나, 2011년에는 각각 56.51%와 46.07% 증가한 3조 2,631억원과 2조 7,878억원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수지율(=지출/수입)은 2009년 이후 감소추세로 2011년 현재 흑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매년 흑자를 기록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누적준비금적립금 규모는 2011년 현재 6,994억원 수준이다.

보험료 수입과 정부로부터의 국가지원금 및 의료급여 부담금지원에서 보험급여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현재 약 77.6%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지원금은 보험료 예상수입의 20%로 명시되어있으나, 제도 도입연도인 2008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20%에 못 미치는 수준²⁴⁾으로 나타나고 있다.

III.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과제

우리나라는 향후 수십년에 걸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장기요양 수요가 높은 80세 이상의 초고령 노인인구의 비중은 2010년 2% 수준에서 2050년 15%까지 7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감소로 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의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즉, 2009년 GDP 대비 0.19% 수준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규모는 2050년 GDP 대비 1.06% 수준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되나,²⁵⁾ 동 기간 총수입은 GDP 대비 0.19%에서 0.4%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적자 수준은 2020년 GDP 대비 0.19% 수준에서 2050년에는 0.66%까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 조달은 현재의 근로세대가 현재의 고령세대의 부담을 지물하는 부과방식으로, 향후 지출 수준의 증가는 세

24) 2008년에는 실질국고지원이 법정국고지원 수준보다 253억원 더 많았으나, 그 이후인 2009, 2010, 2011년에는 실질국고지원이 법정국고지원 수준에 각각 356억원, 340억원, 402억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25) 박형수 · 전병목(2009), 시나리오 3, baseline 기준.

〈표 5〉 연도별 장기요양 재정현황(계)

(단위: 천원, %)

재정현황별		2008	2009	2010	2011
수입	계(A)	868,974,878	2,084,929,125	2,877,740,484	3,263,144,467
	보험료(A1)	477,011,336	1,199,551,493	1,831,554,777	2,142,331,738
	국고지원금(A2)	120,747,289	204,351,491	332,318,000	388,311,000
	의료급여 부담금(A3)	266,136,914	660,082,482	670,449,396	677,321,582
	- 국가부담금	8,660,977	41,596,688	20,918,791	29,852,191
	- 지방자치단체부담금	257,475,937	618,485,795	649,530,606	647,469,391
	기타	5,079,339	20,943,659	43,418,312	55,180,147
지출	계(B)	554,900,682	1,908,462,509	2,589,135,289	2,787,757,045
	보험급여비(B1)	431,414,460	1,746,732,140	2,415,263,200	2,602,664,029
	- 재가급여비	164,572,216	985,020,419	1,374,034,284	1,374,494,160
	- 시설급여비	262,858,254	754,497,938	1,033,622,638	1,221,074,725
	- 가족요양비	563,575	1,656,125	1,316,395	1,048,855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3,339,244	5,358,103	6,076,020	5,858,483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81,171	199,555	213,863	187,806
	관리운영비	107,897,151	135,720,376	144,136,771	155,570,596
기타	15,589,071	26,009,993	29,735,318	29,522,420	
총수지출(B/A)	63.86	91.54	89.97	81.98	
보험료 대비 급여비율(B1/(A1+A2+A3))	49.94	84.63	85.21	77.6	
당기차액(A-B)	314,074,196	176,466,617	288,605,196	475,387,422	
이월금	291,074,196	385,140,812	470,946,009	555,133,430	
누적준비금적립금(E)	23,000,000	105,400,000	308,200,000	699,400,000	
적립률(E/B1)	5.33	6.03	12.76	26.87	

주: 1. 각 연도 말 결산기준(2008년은 2008.7-12)

2. 보험료에 사용자부담금 포함

3. 기타수입은 사업 외 수입으로 예금이자, 기타징수금 수입 및 가산금 등이 포함됨

자료: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DB

대 간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 등과 더불어 지출을 효율화하여 과도한 지출의 증가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대상자 수,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급급여 차등화, 본인부담금 차등화 등을 통한 지출 효율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대상자

우리나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인정점수 인하를 통하여 수혜대상자를 확대하고 있다. 2012년에는 7월 55~75점이었던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53~75점으로 2점 인하하였고, 1년 후인 2013년 7월에는 치매환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3등급 인정점수를 2점 더 추가 인하할 예정이

〈표 6〉 국고지원금 현황

(단위: 천원)

	2008	2009	2010	2011
보험료(A)	477,011,336	1,199,551,493	1,831,554,777	2,142,331,738
법정 국고지원금 수준(A×20%)	95,402,267	239,910,299	366,310,955	428,466,348
국고지원금	120,747,289	204,351,491	332,318,000	388,311,000
법정국고지원 - 실질국고지원	△25,345,022	35,558,808	33,992,955	40,155,348

다.²⁶⁾ 이로 인하여 24,000여 명의 신규 인정자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2010년 현재 노인인구의 5.8% 수준인 수혜대상자를 2017년에는 노인인구의 9.5%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²⁷⁾ 2010년 기준, 우리와 유사한 사회보험방식으로 장기요양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²⁸⁾과 일본²⁹⁾의 인정자 비율은 각각 13.5%, 16.6%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인정률보다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령화율이 10.9% 수준임을 고려할 때, 현재의 인정자 비율이 작은 규모로 보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표 7〉 장기요양보험 수혜자 비율 추이

(단위: %, 천명)

구 분		1995년	2000년	2008년	2010년
독 일	고령화율	15.5	16.4	20.2	20.4
	인정자수	1,061	1,822	2,113	2,287
	노인 대비 인정자비율	8.4	13.5	12.7	13.5
일 본	고령화율	12.6	17.4	22.0	23.1
	인정자수	-	2,182	4,548	4,870
	노인 대비 인정자비율	-	9.9	16.1	16.6
한 국	고령화율	5.9	7.2	10.3	10.9
	인정자수	-	-	214	316
	노인 대비 인정자비율	-	-	4.2	5.8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 독일 연방보건성; 일본 후생노동성.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 재인용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령이 높을수록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서비스를 더욱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재가·시설 서비스 모두에서 나타나는데, 특히 비용이 높은 시설서비스 이용이 연령이 높을수록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향후 고령화로 인하여 급여지출은 증가할 것이며,

26) 치매환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의 확대를 위하여 장기요양 3등급 최저 인정점수를 53점에서 51점으로 인하하고, 인지기능 비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등급 판정도구를 개편할 예정(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3. 5. 3).

27)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 2012. 07.

28) 독일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6개월 이상 활동지원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 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대상자를 구분하고 있다.

29) 일본의 장기요양 등급은 총 7개로 구분된다. 요지원 1·2등급은 요양등급 전단계로 일상생활지원이 요구되는 자로서 예방적 장기요양서비스(Preventive Long-term Care Services)의 대상자가 되며, 요개호 1~5등급은 병상에 있거나 정신적 이상을 겪는 자로 장기요양서비스(Long-term Care Services)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자이다.

특히 85세 이상 초고령층의 증가는 시설급여 지출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2020년 고령자 비율은 15.7%로 추계되고 있어³⁰⁾ 2017년까지 인정자 비율을 9.5%로 증가시키는 것은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향후 추가적 인정점수
 인하를 통한 대상자 확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

〈표 8〉 연령별 급여이용 현황(2011년)

(단위: 명, %)

	65세 미만	65세~69세	70세~74세	75세~79세	80세~84세	85세 이상
재가급여	33,935	40,447	69,289	93,492	95,444	107,583
(증가율)		(19.19)	(71.31)	(34.93)	(2.09)	(12.72)
시설급여	6,589	8,164	17,343	27,948	34,838	49,816
(증가율)		(23.90)	(112.43)	(61.15)	(24.65)	(42.99)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앞서 살펴보았듯이 2009년 GDP 대비 0.19% 수준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액은 2050년에는 GDP 대비 1.06% 수준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³¹⁾ 이와 같은 결과는 3등급 점수 인하를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타난 추계치로, 두 번에 걸친 대상자 확대를 고려 시 지출액 수준 및 재정적자 규모는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다.

최근의 3등급 점수 인하는 해외 주요국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치매대상자들에 대한 요양을 우리 제도에 반영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험가입자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현재의 수급요건을 만족할 경우 당연히 대상자로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 수준에서의 추가적인 인정점수 인하를 통한 대상자의 급속한 증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부담을 급증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추가적 인정점수 인하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2. 장기요양기관 지급급여 차등화

제도가 도입된 2008년 8,318개소이었던 재가·시설의 기관 수는 2011년 현재 14,918개소로 3년 사이에 재가기관과 시설기관이 각각 1.64배, 2.39배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짧은 기간 내의 급속한 기관의 양적 팽창은 기관의 질적 저하를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 높다. 실제로 2010년과 2012년에 실시된 재가기관 평가결과에 따르면, 2012년 평가점수의 편차가 13.5로 2010년의 편차 12.7보다 크게 나타났다. 즉, 이는 가치 있는 급여지출(value for money)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며, 결과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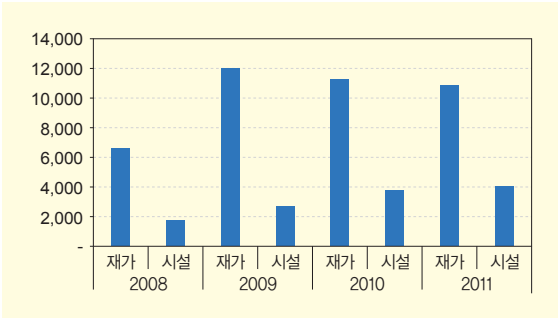
30) 2012 고령자통계.

31) 박형수·전병목(2009).

“
**요양기관 간 급여수준을
 차등화하여 기관들 사이의
 질적 경쟁 및 수준 향상 등을
 유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그림 6] 노인장기요양기관 현황

(단위: 개)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 급여서비스 수준의 향상 유도 및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09년부터 재가·시설기관을 각각 2년마다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즉, 공단은 평가결과 하위 30% 기관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장방문을 실시하며 미흡사항 보완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군구에 통보하는 등 개선을 위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평가결과 상위 10% 범위 내에 속하는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전년도 심사결과 지급이 결정된 공단부담금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시

스템을 갖추고 있다.³²⁾ 그리고 현재 이와 같은 방식의 인센티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³³⁾을 준비중에 있다.

그러나 현행의 가산금 지급형태의 인센티브 제도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장기요양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고 있고, 장기요양보험재정에서 누적준비금의 적립금이 증가하고 있어 가산금 지급에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고령화로 인하여 조만간 재정적자 국면에 접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 가산금 지급제도가 지속가능하지 못할 가능성 높다. 또한 이미 양적으로 증가한 기관의 수를 염두에 둘 때, 가산금 지급의 적정성이 의문시된다. 공급이 부족한 경우 공단 등이 지원을 통하여 공급량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이미 초과공급 상황에서 질적 향상을 위한 가산금 제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즉, 현재의 평가 및 인센티브제도가 기관들의 서비스 제고를 위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기관 간 동일한 현재의 서비스별 급여수준을 차등화하여 요양기관들 사이의 질적 경쟁·수준 향상 등을 유도하는 방안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공단에 의한 평가결과는 A~E 5개 등급으로 판정되며,³⁴⁾ 기관이 받은 등급과 무관하게 기관에 지급되는 서비스별 급여는 동일하다. 즉, A등급 기관에서 재가 서비스 3시간을 제공한 경우와 D등급을 받은 기관에서 동일한 재가서비스 3시간을 제공한 경우, 두 기관은 동일한 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수령하게 된다. 만약 등급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기관에 급여를 지급한다면, 현재의 가산금 제도보다 더 높은 기관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가산금 제도에서는 경

32) 2011년 시설 장기요양시설 3,195개소 가운데 최고등급인 A등급(상위 10% 이내)을 받은 319개소에 대하여 총 76억원의 인센티브 제공, 2012년 재가 장기요양시설 9,186개소 가운데 최고등급인 A등급(상위 10% 이내)을 받은 916개소에 대하여 총 68억원의 인센티브 제공.

33) 개정안은 부록 참고.

34) A등급: 10%, B등급: 20%, C등급: 40%, D등급: 20%, E등급: 10%.

쟁력이 부족한 기관이 가산금을 포기하고 시장에 존재할 수 있으나, 적절히 제도화된 차등적 급여제도에서는 경쟁력이 부족한 기관의 시장탈퇴 가속화 및 진입 방지효과의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같은 성과에 따른 급여지출 차등화는 공단으로 하여금 가치 있는 재정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가산금 제도와 비교 시 재정적 부담의 완화 또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평가결과에 따르면 기관의 규모가 작을수록 저득점 기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지방자치단체·법인에 의해 설립된 기관과 비교 시 개인이 설립한 기관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2년마다 시행되는 평가와 더불어,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소규모·개인 설립기관을 중심으로 비정기적 방문을 통한 수시평가 등도 함께 실행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그 결과를 기관별 차등급여제도에 반영하는 방안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수가·급여가 비현실적이라는 견해가 많다. 따라서 이와 같은 차등화 방안은 향후 급여인상 시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상·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성과에 근거한 급여의 차등지원(pay for performance)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평가대상기관인 요양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 및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실행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3. 본인부담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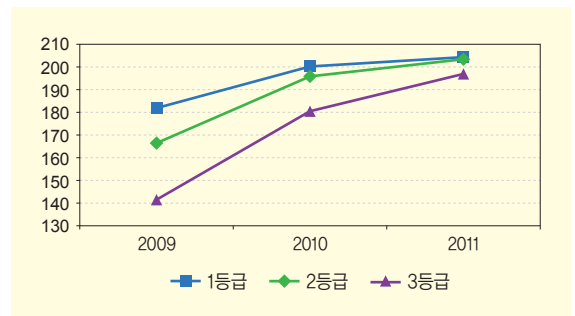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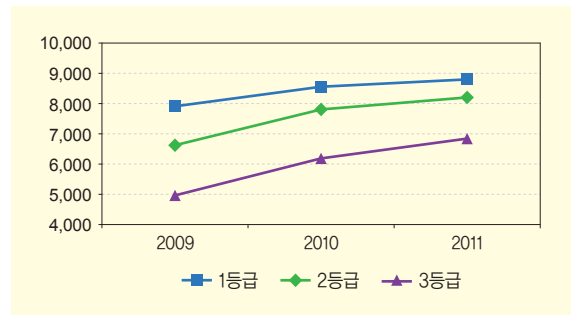
요양 대상자들의 이용량 증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부담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소급여의 성격으로 동일 등급에 대하여 동일 급여액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림 7]에서 보듯이 모든 등급에 있어 1인당 평균 요양일수 및 평균 공단급여비가 증가

“
**성과에 따른 급여지출 차등화는
 공단으로 하여금 가치 있는
 재정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가산금 제도와 비교 시 재정적 부담의 완화
 또한 기대할 수 있다.**
 ”

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3등급의 경우 2009년 대비 2011년의 요양일수 및 공단부담금이 각각 39.47%, 38.05% 증가한 196일과 682만 8천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적절한 제도가 설정될 경우 건강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대상자의 이용량을 감소시킬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7] 등급별 1인당 총급여액(上)·요양일수(下)

(단위: 천원, 일)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
**3등급 일반대상자를
 대상으로 급여 이용량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

현재와 같이 등급별로 이용량에 상관없이 본인부담금 수준이 동일할 경우에는 동일등급 내에서 서비스 이용자가 이용량을 감소시킬 유인이 크지 않다. 따라서 동일등급 내에서 이용량에 따른 본인부담금 수준 차별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미국의 처방약 보험 프로그램인 Medicare Part D 제도에서는 이용량에 따른 피보험자의 본인부담금 차등화를 통하여 이용량 및 재정지출을 감소시키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제도를 응용·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 이와 같은 차등화 방안이 인정자의 건강상태를 악화시킬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수준 및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3등급 일반대상자로 그 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차등화 방안으로 재정지출이 줄어들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더 많은 노인들에게 급여혜택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일부 선진국의 경우 공적부문에서 가족으로 노인장기요양의 부담을 이동시키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구조의 변화 및 여성 경제참가율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향후 일정기간 동안 공적부문에 의존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제도 도입 6년차를 맞이하는 현 시점부터는 서비스의 질적 측면과 함께 재정적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우선적으로 향후 추가적 인건점수 인하를 통한 대상자 확대에 있어서는 재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요양기관에 대한 급여지출은 기관 간 경쟁 및 질적평가를 통하여 가치있는 재정지출(value for money)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이용량과 무관하게 설정되어 있는 등급별 동일급여를 이용량에 따라 차등화 하는 방안도 3등급 일반대상자를 대상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본고에서 다루지는 않았으나, 지역밀착형 재가급여 강화를 통한 시설 급여 이용의 감소, 지방정부 중심의 예방서비스 강화를 통한 요양대상자로의 진입 감소, 부정수급 방지를 통한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 장기요양통계연보』, 2012.
 국민건강보험공단, 『2012년도 장기요양급여 평가결과』, 2013. 4.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 2012. 7.
 박형수·전병목, 『사회복지 재정분석을 위한 중장기 재정추계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9.10.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3. 5. 3)
 보건복지부, 『2013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2013.

IV. 결론

정부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제도 도입 이후 제도의 대상자 확대 및 급여의 질적 제고 측면에 중점을 두어왔다. 제도 도입 초기단계인 현재까지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흑자를 나타내고 있으나, 향후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 및 이에 따른 장기요양에 대한 수요 증가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한 재정수입의 감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윤성주,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2012.7.
_____,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중·장기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지출효율화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진행 중
통계청, 「2012 고령자통계」, 2012.9.27.
OECD, *Help Wanted? Providing and Paying for Long-Term Care*, 2011.
<http://www.longtermcare.or.kr>

[부록]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212호)**

1. 개정 이유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질 향상 유도를 위하여 가산 지급대상을 확대하되, 가산금은 차등 지급하고 평가지표를 신설·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평가결과 우수기관 등에 대한 가산지급 범위 및 지급액을 100분의 10내의 기관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의 3%를, 100분의11~20범위내의 기관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의 2%를, 평가결과가 현저히 향상된 기관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의 1%로 하고, '직전 평가 인센티브 지급일 이후부터 당해 평가 인센티브 지급일 사이에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가산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안 제9조제1항)
- 나. 평가위원회에서 가산금의 상한을 정할 수 있음.(안 제9조제2항)
- 다. 가산금의 일정부분을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제3항)
- 라. 종사자 처우 등의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급여제 공 프로세스를 반영하여 평가지표를 통합, 재배치 함.(안 제3조제2항 별표1)

2013 세법개정안

■ 2013 세법개정(안)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황정훈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 201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평가

김학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를 위한 2013년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재정포럼』에서는 정책담당자의 2013년 세법개정안의 추진배경 및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평가를 전문가로부터 들어보는 특집을 마련하였다. (편집자 주)

2013 세법개정(안) 추진배경 및 주요 내용



황정훈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I. 2013 세법개정(안) 특징 및 기본방향

「2013년 세법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3가지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장기 및 단년도 세법개정을 연계하였다. 금년도 세법개정안은 우선 국민의 입장에서 일관성 있는 조세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원칙에 입각한 세제의 정상화”라는 ‘박근혜 정부 5년간의 조세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러한 중장기 정책방향의 틀에 따라 ① 국정과제의 적극 지원, ② 국민중심의 세제운영, ③ 과세형평 제고 및 세입기반 확충을 3대 기조로 하여 마련되었다. 둘째,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였다. 고소득층에 유리한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동 재원이 근로장려세제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 신설 등 서민층 지원에 전액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 종교인 소득, 공무원 직급보조비, 해외근무수당 및 고소득 부농 등 그동안 과세되지 않던 소득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하였다.

비전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		
기본 방향	국정과제 적극 지원	국민중심 세제 운영	과세형평 제고 · 세입기반 확충
추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동력 확충 · 중소기업 지원 · 창조경제 기반 구축(벤처투자 활성화) · 고용률 70% 달성 지원 · 문화예술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의 사회안정망 강화(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 농어민 · 영세자영업자 지원 · 서민 · 중산층 지원 · 납세편의 제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 비과세 · 감면 정비 · 과세기반 확대 · 지하경제 양성화

II. 2013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1. 국정과제 적극 지원

가. 성장동력 확충

성장동력의 주요 축인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망서비스업과 연구개발업에 대해 R&D 비용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지식재산서비스업과 유망서비스업 · 사회서비스업 중 일부 업종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중소기업지원세제를 적용하였다.

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충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이월 공제기간을 연장(5년 → 7년)하고, 기업의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출연분을 손금으로 인정하였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50% 감면하고 기술혁신형 M&A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 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제고를 유도하였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대주주 지분율이 높고 가족기업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을 완화하고, 기업내부거래를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동 제도를 합리화하였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이월과세제도 도입,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완화 등을 통해 창업 및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개선하고,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등의 투자세액공제율을 대·중견·중소기업별로 차등화(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하는 방식으로 투자지원제도를 재설계하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하였다.

다. 창조경제 기반 구축

지난 5월 발표된 '벤처·창업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에 따라 엔젤투자 활성화, 코넥스 시장 정착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엔젤투자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 기술

혁신형 M&A에 대한 세제지원,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창투조합이 코넥스 상장기업 투자 시 세제지원 등 창조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법률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고용증대인원 계산 시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를 당초 0.5명에서 0.75명으로 계산하도록 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비정규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1인당 100만원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를 신설하는 등 중소기업 고용증가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60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을 청년 수준으로 인상(1,000만원 → 1,500만원)하여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였다.

마. 문화예술 진흥

문화시설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에 대한 투자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한도를 확대하였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내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의 호텔숙박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도입하였다.

2. 국민중심 세제 운영

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CTC) 신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을 자녀기준에서 가구원기

준과 자녀기준으로 이원화하고, 가구가족에 대한 지원수준 확대, 맞벌이 가구에 대한 추가지원, 자녀수에 따른 자녀장려금 차등 지원 등 결혼·양육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근로장려세제를 재설계하였다. 또한 근로장려금 지급 소득기준 확대, 재산·주택가액 요건 상향조정, 중·장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까지 수급대상 확대, 자녀장려세제 도입 등 세제측면에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였다.

(현 행)

(단위: 만원)

구분	구간			최대 지급액
	점증	평탄	점감	
무자녀	~600	~900~1,300	70	
자녀 1인	~800	~1,200~1,700	140	
자녀 2인	~900	~1,200~2,100	170	
자녀 3인 이상	~900	~1,200~2,500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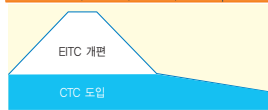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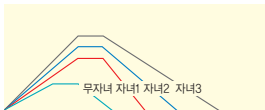
(개 정)

(단위: 만원)

구분	구간			최대 지급액
	점증	평탄	점감	
단독가구	~600	~900~1,300	70	
가족가구	출벌이	~900~1,200~2,100	170	
	맞벌이	~1,000~1,300~2,500	210	

+

구분	점증	평탄	점감	최대 지급액
CTC	없음	~2,100~2,500	~4,000	1인당 50



나. 농어민·자영업자 등 서민·중산층 지원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어촌특별세 적용기한을 2024년 6월 말까지 10년 연장하고, 택시운전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택시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를 지속적용하였다. 아울러 소형주택(85㎡ 이하, 3억원 이하)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항구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의료비 지출목적 연금인출금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3~5%로 저율 분리과세하는 등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다. 납세편의 제고 등

‘소득세법·법인세법 알기 쉽게 새로 쓰기’, ‘FTA관세특례법 전면개정’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세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새로 쓰고 납세 이행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다. 아울러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증여세 공제금액을 인상(10년간 3,000만원 → 10년간 5,000만원)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4대 사회보험 기관 등에 대한 국세청의 정보제공 근거를 마련하였다.

3. 과세형평 제고·세입기반 확충

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되 전환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우선, 기본공제, 공적연금·건강보험료 공제, 근로소득공제는 소득 창출을 위한 필요경비적 성격을 감안하여 현행 소득공제 방식을 유지하되, ‘다자녀 추가공제’ 등 자녀양육관련 공제는 자녀세액공제로 통합하고, 장애인·경로우대자 등 기타 인적공제는 2014년 이후 세액공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별공제제도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중산층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항목은 15%, 보험·연금 등은 12%로 공제율을 이원화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계층 간 세부담 형평 등을 감안하여 근로소득공제율을 일부 조정하고, 중산층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조정하여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중산층은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였다.

나. 비과세·감면 정비

R&D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R&D 준비금 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등과 같이 정책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세출예산과 중복지원되는 제도를 폐지·재설계하였다. 또한 공익사업용 토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토지 등에 대해 시가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토지 수용 등에 대한 과도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0~20%p 인하하였다.

주요 비과세·감면 정비

구분	지원제도	정비 사유
폐지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전자신고제도 정착 (법인세 97.5%, 종소 87.8%)
	■ 지급명세서 전자식 제출 세액공제	• 지급명세서 전자식 제출이 보편화
	■ 현금성 결제 등에 대한 세액공제	• 현금성 결제비용 개선 (11년 92.2%)
	■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 공기업 지원 편중
	■ 해저광물자원개발업 VAT 등 면제	• 공기업 지원 편중
재설계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15 → 10%)	• 직불카드(체크카드) 사용 유도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세액공제 (0.5 → 0.3%)	• 유가가 안정된 점을 감안, 종전수준 환원
	■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 감면 (50%)	•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기한 2년 연장
	■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 감면 (30%)	• 중소기업에 한해 2년 연장

다. 과세기반 확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매출액의 30%) 설정, 재활용폐자원 특례매입세율 공제율 조정, 미용목적 성형수술 과세범위 확대 등 부가가치세 세입기반을 확대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인하 및 비전업농민 8년 자경 양도세감면

배제 등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합리화하였다. 또한 종교인 소득, 공무원 직급보조비, 해외근무수당 및 고소득 부농 등 그동안 과세되지 않던 소득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하여 과세 사각지대가 해소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카지노 등 사행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강화, 인지세 과세 강화 등을 통해 과세기반을 확충하였다.

라. 지하경제 양성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자금출처 소명의무를 부여하는 등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하향조정 (30만원 → 10만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한도 확대(10억원 → 20억원) 등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을 강화하였다.


III. 세법개정 효과 및 향후 추진일정

1. 세법개정 세수효과

금년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순세수효과는 2.05조원 증가로서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율 인하 등 증가요인에 따라 4.04조원 증가하고, 근로장려세제 확대·자녀장려세제 도입, 장애인·노인 고용 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한도 인상 등 감소요인에 따라 1.99조원 감소한다. 이를 세부담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고소득자/대기업'의 세부담은 2.84조원 증가하는 반면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세부담은 0.93조원 감소하는 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되 서민·중산층에 대한 생활지원도 함께 감안하여 금번 세법개

정안을 마련하였다.

2. 향후 추진일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5개 세법개정 법률안에 대해 8~9월 중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 후, 9월 말 금년도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제출된 세법개정안은 국회 법안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1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평가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I. 2013년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

지난 8월 8일 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안을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과 함께 제시했다. 박근혜 정부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은 조세부담의 적정화, 조세구조의 정상화, 조세지원의 효율화를 통한 “원칙에 입각한 세제의 정상화”로 요약될 수 있으며, 2013년 세법개정안은 중장기 조세정책 운영 기조 내에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적극 지원하고, 국민중심의 세제를 운영하며, 과세형평 제고 및 세입기반 확충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바탕을 둔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창조경제 기반 구축, 고용률 70% 달성, 중소기업 육성, 문화예술 진흥 등을 뒷받침하는 조세지원 제도가 마련됐다.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세법의 용어 및 조문체계를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재작성하는 등 관련 제도의 정비가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됐다. 또한 공제체계의 전환,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

충하는 방안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

무엇보다 가장 눈에 띄는 개정내용은 소득세 소득공제체계 중 자녀관련 인적공제,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 일부 소득공제항목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이는 수직적 형평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종교인의 과세를 법제화하고 공무원 직급보조비 및 재외수당의 과세범위 확대 등을 통해 소득세 세입기반을 확충하며 세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들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과 같은 직접적 증세보다는 상기 과세형평성 제고 및 세입기반 확충을 통한 세제 정상화를 도모하면서 증가하는 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경제의 성장둔화를 비롯하여 대외 경제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도 지속적인 경기침체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대내외 경기여건 속에서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의 국정과제 이행 지원, 국민중심의 세제 운영, 과세형평성 제고 및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3대 목표를 위해 세율 인상 또는 세목 신설과 같은 직접적인 세입기반 확충방안은 추진하지 않고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기존 제도의 정비를 중심으로 2013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긍정적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세법개정안이 중산층의 세 부담을 다소 확대한다는 이유로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급기야 수정안이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기본 방향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세부적으로 누가 더 많은 세 부담을 져야 하는가에 대한 수직적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많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직적 형평성에 대한 논란은 누가 어느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데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조세개혁위원회가 수직적 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더라면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지 나흘 만에 수정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한 평가를 크게 네 가지 관점 - i) 가장 논란이 됐던 공제방식 전환에 따른 형평성, ii)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iii)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 iv) 세수확보 - 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II. 세법개정안에 대한 평가

1. 공제방식 전환에 따른 형평성 논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은 일부 소득공제 항목들의 세액공제 전환과 이에 따른 중산층의 세 부담 확대이다. 소득세 부담이 확대되는 소득수준이 3,450만원으로 발표되면서 '중산층 세금폭탄'이라는 정치적 비판에 직면하며 개정안 발표 4일 만에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와 함께 원안 수정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보편적 복지의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에 있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조금씩이라도 세금을 더 부담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세법개정안은 서민과 중산층의 지갑을 더욱 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정치적 판단으로 수정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근로자의 세 부담이 얼마나 과중한지와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형평성 및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형평성에 대해서 이용가능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¹⁾

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먼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간략히 살펴보자.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기에 앞서서 과세표준 산정과정에서 차감된다. 동일한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때,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의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저소득자의 경우보다 실질적인 세 부담 감소규모가 훨씬 크다. 결과적으로 일부 소

1) 종사상 지위별 또는 소득계층별 세 부담 형평성에 대한 논의는 개별 납세자료에 기초하여 납세자의 특성을 통제한 후 평균적 세 부담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별 납세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일반 연구자가 활용할 수 없으며, 현재 가능한 최근의 세 부담 자료는 2011년 귀속분에 대한 총량적 세 부담 분포를 살펴볼 수 있는 2012년 국세통계연보이다.

득공제 항목들은 소득세 과세의 누진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일부 소득공제 항목들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면, 고소득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보다 크게 산정되어 더 큰 규모의 세금 부담을 지게 된다. 다시 말해, 특정 활동에서 발생한 동일한 금액의 비용에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동일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액공제액을 산출세액에서 차감함으로써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감세혜택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38%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의 경우 추가적으로 소득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면, 세 부담 감소규모는 38만원이다. 6%의 최저세율을 적용받는 저소득자의 경우 동일한 100만원의 추가적 소득공제에 의해 발생하는 세 부담 감소규모는 6만원에 불과하게 된다. 그러나 세액공제율을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6%로 설정한 세액공제 방식으로 소득공제방식이 전환되면, 6%의 최저세율을 적용받는 저소득자의 경우 제도 전환 이전과 동일한 규모의 세 부담 감소효과를 갖지만, 38%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의 경우 기존 38만원에서 6만원으로 세 부담 감소규모가 크게 축소된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 개편의 효과를 통해 소득세의 누진성을 강화하여 고소득자에게 보다 많은 세 부담을 지우는 한편, 일정 소득 수준 이상에서는 조금씩이라도 세 부담을 더 하면서 보편적 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국민 모두가 기여하도록 하는 방향의 개편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세액공제율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모든 계층이 과거보다 세 부담이 더 확대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으며 특정 소득계층부터 세 부담이 확대되고 이하의 소득계층에는 세 부담이 축소되도록 설계할 수도 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 연금저축 등에 대한 공제한도 등 기타 사항

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제시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면, 총급여 3,450만원 소득계층부터 세금 부담이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계층의 경우 원안대로 시행하면 연간 세 부담 규모는 평균적으로 1만원 수준 확대되고 4,000만원 초과~7,000만원 초과하는 소득계층의 경우 평균적으로 소득세 부담이 16만원 확대되는 것으로 발표됐다.

이러한 세 부담 확대를 '중산층 세금폭탄'이라 주장하는 정치권의 비난과 임금근로자들의 불만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대되면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세법개정안은 발표된 지 나흘 만에 일부 수정되는 상황을 맞게 됐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총급여 수준이 연봉 7,000만원 수준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거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수정함으로써 1,554만명의 임금근로자들 중에서 세 부담이 늘어나는 계층은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110만명(전체 대비 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안의 경우 세 부담이 조금이라도 증가하는 임금근로자는 전체의 28%인 434만명에 달하며 보편적 복지 확대에 십시일반하자는 기본 취지에 보다 부합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1〉 총급여 수준별 소득세 부담 증가 규모 비교:
원안 vs. 수정안

(단위: 만원, 만명)

총급여액	인원		현행	원안		수정안	
	비중	인원		세액	차액	세액	차액
~1,000	435.8	28.2%	0	0	0	0	0
~2,000	362.5	23.4%	5	0	△5	0	△5
~3,000	231.5	15.0%	17	6	△11	6	△11
~4,000	158.9	10.2%	36	37	1	36	0
~5,000	112.4	7.3%	83	99	16	83	0
~5,500	41.6	2.7%	147	163	16	147	0
~6,000	37.6	2.4%	200	216	16	202	2
~7,000	57.7	3.7%	285	301	16	288	3
~8,000	35.4	2.3%	412	445	33	445	33
~9,000	22.1	1.4%	540	638	98	638	98
~10,000	16.4	1.1%	741	854	113	854	113
~11,000	11.2	0.7%	942	1,065	123	1,065	123
~12,000	7.3	0.5%	1,160	1,294	134	1,294	134
~15,000	9.3	0.6%	1,586	1,842	256	1,842	256
~30,000	6.7	0.4%	3,669	4,011	342	4,011	342
30,000 초과	1.6	0.1%	17,600	18,465	865	18,465	865

자료: 기획재정부, 「2013년 세법개정안 내용 일부 수정·보완」, 보도 자료, 2013. 8. 13.

또한 소득공제 중에서 이번에 세액공제로 전환된 자녀관련 인적공제와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의 세액공제에 대해 회의적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자녀관련 인적공제를 자녀세액공제로 통합하고 두 자녀까지는 1명당 15만원을 세액공제해주고 세 번째 자녀부터는 1명당 20만원씩 세액공제해주는 제

도로 전환했다. 기존 제도의 근간에는 자녀양육, 의료비, 교육비 등의 일정부분을 납세자의 비용으로 간주했다. 자녀양육, 의료비, 교육비 등으로 지출된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이러한 형태의 지출을 더 이상 납세자의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그러나 다자녀추가공제 등 자녀관련 인적공제 항목들은 필요경비의 성격보다는 출산장려를 위한 인센티브의 성격이 강하다. 기부금, 교육비, 보장성 보험료도 기부행위, 교육을 통한 생산성 향상, 사고·재난 대비 등 특정한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의 성격으로 볼 수 있다.²⁾ 또한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를 통해 기본적인 필요경비에 대한 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특별공제 항목들의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고소득자일수록 동일한 공제제도에 의해 더 큰 감세혜택을 받게 되며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누진성이 다양한 공제제도에 의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액공제제도로의 전환은 소득세제의 누진성을 강화하며 소득세의 재분배효과를 제고할 것으로 판단된다.³⁾

나. 근로자의 세 부담 수준

8월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직후 정 치권을 중심으로 야기된 ‘중산층 세금폭탄’ 논란은 다소 지나친 면이 없지 않다. 이른바 ‘중산층 세금 폭탄’ 주장의 타당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연간 총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을 장려하는 인센티브의 성격이 강하지만 여전히 소득공제 항목으로 남아 있는 것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제도는 정책목표를 충분히 달성한 제도로서 폐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제도 설계에 따라 기본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제도화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제제도에 의해 약화된 소득세제의 누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한도를 차등적으로 낮춰야 한다. 이럴 경우 공제제도가 더욱 복잡해져서 납세협력비용이 커질 수 있다. 현행의 기본적인 공제한도와 기타 요건들은 유지하면서 소득세 공제제도의 누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쉬운 방안이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판단된다.

급여 3,450만원~7,000만원 구간에 속하는 납세자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총급여 3,450만~7,000만원 구간에 속하는 납세자들의 세 부담 정도를 정확히 추정할 수는 없지만, <표 2>의 3,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구간의 평균세율은 1.4~4.9%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1년 귀속분에 적용됐던 소득세 법정세율이 6~35%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계층 납세자들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의 비과세·감면에 의해 최저 명목세율 미만의 낮은 실효세율로 과세됐음을 알 수 있다.⁴⁾ 자세히 살펴보면,

6,000만~8,000만원 구간에 속하는 납세자들의 평균 실효세율이 4.9%로 나타났고 총급여 3,000만~4,000만원 구간, 4,000만~4,500만원 구간, 4,500만~6,000만원 구간에 속하는 납세자의 평균 실효세율은 각각 1.4%, 2.0%, 2.9%로 나타나며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에 적용되는 최저세율 6%를 크게 하회하고 있다. 중산층이라고 여겨지는 수준인 총급여액 6,000만~8,000만원에 속하는 납세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세율 6%보다 낮은 평균 실효세율로 과세되고 있는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표 2> 근로소득자 세 부담 분포: 2011년 귀속

(단위: 명, 백만원, %)

	총인원	총급여	과세인원	총부담 세액	평균 세율	납세인원 비중	과세미달자 비중	세부담 비중
총계	15,540,057	437,838,449	9,917,982	17,801,868	4.1	63.82	36.18	100
1천만 이하	4,417,527	21,553,615	304,634	2,795	0.0	1.96	26.47	0.0
1.5천만 이하	2,047,990	25,715,396	1,333,163	51,089	0.2	8.58	4.60	0.3
2천만 이하	1,576,769	27,821,637	1,217,307	115,598	0.4	7.83	2.31	0.6
3천만 이하	2,314,565	57,679,647	2,009,556	422,152	0.7	12.93	1.96	2.4
4천만 이하	1,588,883	55,722,979	1,493,007	764,701	1.4	9.61	0.62	4.3
4.5천만 이하	614,406	26,371,282	597,410	527,051	2.0	3.84	0.11	3.0
6천만 이하	1,302,218	68,550,689	1,288,410	2,004,693	2.9	8.29	0.09	11.3
8천만 이하	930,856	64,330,229	929,192	3,124,552	4.9	5.98	0.011	17.6
1억 이하	385,181	34,531,912	384,669	2,461,271	7.1	2.48	0.003	13.8
2억 이하	321,709	40,061,151	320,885	4,568,714	11.4	2.06	0.005	25.7
3억 이하	23,470	5,622,869	23,313	1,141,032	20.3	0.15	0.001	6.4
5억 이하	10,535	3,937,762	10,497	937,563	23.8	0.07	0.000	5.3
10억 이하	4,363	2,921,650	4,354	779,853	26.7	0.03	0.000	4.4
10억 초과	1,585	3,017,631	1,585	900,805	29.9	0.01	0.000	5.1

주: 2011년 귀속분에 대한 통계자료이고 총급여액 기준으로 국세통계연보에 발표된 14개 구간을 그대로 원용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2.

4) 국세통계연보에서 발표하는 총급여 기준 소득구간은 <표 2>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14개 구간이어서 최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서 발표된 <표 1>의 소득 구간과는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5) 2011년 귀속분에 대해 적용된 세율은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 1,200만~4,600만원 15%, 4,600만~8,800만원 24%, 8,800만원 초과 35%가 적용되었다.

이처럼 관대하게 적용해오던 소득세의 부담을 약 3,450만원 수준의 총급여를 받는 계층부터 연간 16만원씩 더 부과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원안대로 세 부담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3,000만~8,000만원에 속하는 납세자들의 평균 실효세율은 여전히 6%를 크게 하회하는 1.8~5.1% 수준으로 추정된다.⁶⁾ 이 정도의 세 부담 확대를 과연 중산층에 대한 세금폭탄이라고 비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부의 개정안을 수정하도록 해야 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논란으로 판단컨대, 세제상의 지원을 통해 세 부담을 낮추는 것이 어느덧 권리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각종 공제제도를 통한 세 부담 축소가 권리로 인식되게 된 것은 특정한 정책목표를 위해 일시적으로 운영하거나 소득수준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공제제도를 운영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구적으로, 그리고 지나치게 큰 수준으로 공제제도를 운영해 온 정책기조에 기인한다. 특히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과세미달자의 비중이 높고 전체의 36% 정도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과세미달자들은 총급여 1천만원 이하에 속한다. 1천만원 이하에 속하는 인원은 총 441만여 명이지만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납세자는 30만명 수준에 불과하다. 물론 소득이 낮은 경우 적절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겠으나 소득이 발생하면 단돈 만원이라도 세금을 내도록 하고 필요한 계층에는 재정지원을 통한 선별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 자영업자와 근로자 사이의 형평성

이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임금근로자들의 세 부담 확대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개인사업자 및 자영업자와의 형평성이다. 임금근로자의 총급여는 연말정산을 통해 투명하게 신고되지만,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 파악률이 낮아서 충분히 과세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2011년 현재 1인 자영자를 포함한 자영업자 수는 559.4만명으로 집계된다.⁷⁾ 이 중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한 인원은 395.7만명이고 신고인원 중 307.5만명이 과세된 것으로 나타났다. 559.4만명의 자영업자 중 약 29.3%에 달하는 163.7만명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 명확히 제시할 수 없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은 세제의 문제이기보다는 세정의 문제에서 찾아야 한다.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경비를 과대계상해서 소득규모를 과소계상하는 개인사업자의 소득 탈루 문제는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또 다른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개인사업자들이 얼마나 비용을 부풀리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연구결과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여 오랜 기간 정부는 임금근로자들에게 보다 많은 공제혜택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세 부담을 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 자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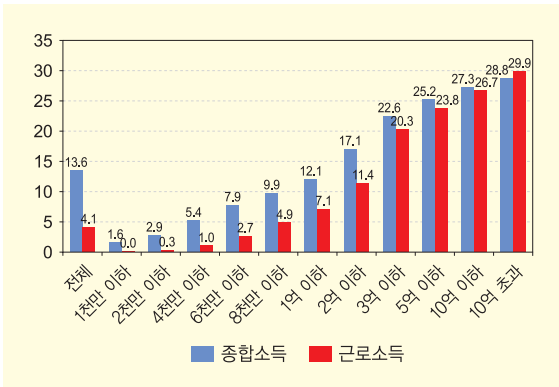
6) <표 2>에서 찾을 수 있는 3,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각 구간의 과세인원이 평균적으로 16만원씩 더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추정한 평균 실효세율로서, 3,000만~4,000만원 구간 1.8%, 4,000만~4,500만원 구간 2.4%, 4,500만~6,000만원 구간 3.2%, 6,000만~8,000만원 구간 5.1%로 추정된다. 여기에서 사용한 전제는 기획재정부의 원안과 달리 3,000만~3,450만원 구간과 7,000만~8,000만원 구간에 속하는 납세자들에게도 16만원씩 연간 세 부담이 더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7) OECD에서는 자영업자(self-employed)의 정의에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기준을 따를 경우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2011년 684.7만명에 달한다.

업자들의 세 부담이 동일한 소득의 근로자들보다 더 낮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1] 종합소득세 납세자와 근로소득세 납세자의
실효세율 비교: 2011년 귀속분

(단위: %)



자료: 2012년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임금근로자나 정치권의 주장과는 반대로 [그림 1]은 동일한 소득 수준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의 평균 실효세율이 임금근로자의 총급여 수준별 평균 실효세율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자영업자들의 경우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 여지 등으로 인한 소득과약률이 낮아서 형평성 차원에서 근로자들에게 보다 더 많은 공제 등 세제상의 혜택을 지원해온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자들의 평균 실효세율은 13.6%로 나타나 소득세 법정 최저세율보다 현저히 낮은 임금근로자들의 평균 실효세율 4.1%의 3.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또한 1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제외한 모든 소득 구간에서 종합소득세 납부자들의 평균 실효세율

이 크게 나타났으며,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구간의 경우 5.7%포인트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이 커짐에 따라 종합소득세 평균 실효세율과 근로소득세 평균 실효세율의 차이가 점차 확대되는 추이를 보이다가 2억원을 초과하면서는 점차 축소되고,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평균 실효세율이 종합소득세 평균 실효세율보다 1.1%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제반 중소기업 관련 조세지원제도를 더 많이 받게 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보다 상세한 근거를 제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비롯한 제반 중소기업 관련 조세지원제도는 대부분 법인의 형태를 가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지원되고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경우 개인사업자에게 지원되어 소득세 감면분이 2011년 실적 1.1조원 중 4,924억원에 달했으며 2012년 잠정 1.3조원 중 6,499억원에 달하고 있다.⁸⁾ 이외에 여러 투자세액공제의 경우에도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부담 축소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금근로자들의 대다수가 법정 최저세율인 6%를 크게 하회하는 실효세율로 과세되고 있으며 전체 평균 실효세율은 4.1%에 불과할 정도로 관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자들과 비교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의 평균 실효세율을 갖고 있다.⁹⁾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나마 개선하고자, 정부는 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세에 주어지던 과다한 세제상의 혜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여 총급여

8) 대한민국정부,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2.

9) 종합소득세 주 신고자인 자영업자들의 소득탈루 방식을 통한 과세 강화는 세제의 문제가 아닌 세정의 문제임을 다시 인식할 필요가 있다.

3,450만원 이상부터 세 부담을 다소 확대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2013년도 세법개정안을 중산층에 대한 과도한 세금폭탄이며 월급쟁이들만 피해를 입는다는 과도한 비판과 조세저항은 설득력을 갖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조세의 기본원칙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급여수준이 더 낮은 계층에게도 세금을 조금씩이라도 더 부담하게 했어야 하는 것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란의 근본적 원인은 지금까지 임금근로자의 세 부담을 지나치게 낮게 유지해온 정부와 국회의 소득세 정책 운용기조에 있으며 복지를 확대하더라도 내 세금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소득세수의 GDP 대비 비중은 2000년대 평균 3.5% 수준으로 OECD 평균 8.9%를 크게 하회한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해 보고 중장기적으로 납세의식 제고와 함께 소득세 강화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라. 수직적 형평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시민단체들은 보편적 복지를 위한 증세의 기반으로 십시일반 차원에서 세법개정안 원안대로 조금씩이라도 세금을 더 내고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의 부담을 더 확대하도록 요청하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수직적 형평성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의 문제이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 누가 얼마나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가는 다를 수 있으며, 이는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새 정부는 출범과 함께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조세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사회통합과 적절한 세 부담 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그 이후

무엇을 논의하고 어떠한 합의를 도출하고 있는지 들리지 않는다. 조세부담의 수직적 형평성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공존과 상생의 문화를 정착하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치를 도출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민대통합위원회의 매우 적절한 논의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이번 세법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 것은 관련 법령제정이 5월 6일에야 이루어졌고 위원회 위원들은 7월 초에 구성되며 출범 자체가 늦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합리적 세 부담 수준의 결정을 주도할 기관으로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지연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조세개혁위원회의 활동도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어서 얼마나 심도 있고 폭넓은 논의를 통해 수평적 및 수직적 형평성 제고 방안을 포함한 조세정책 방향을 도출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수직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정부는 저소득층에게는 근로장려세제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 도입으로 세 부담을 축소하고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게는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 부담을 확대하고자 시도했다. 그러나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소득계층의 세 부담은 실질적으로 거의 늘어나지 않도록 수정됐다. 이러한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조세개혁위원회에서 수직적 형평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왜 3,450만원부터 세 부담을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어야 했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정이 없었거나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산층 세

금폭탄'이라는 정치적 구호에 의해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발표 나흘 만에 수정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정말 시대적 소명인지부터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방안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사회적 의견 교환과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특정한 정책 목표를 위해 도입된 비과세·감면 제도는 원칙적으로 일몰기한 도래 시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 엄격한 검토 후 재도입하겠다는 새 정부의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 원칙은 이미 정부 출범과 함께 널리 알려졌다. 새 정부의 정비 원칙은 그동안 기득권화되고 항구화되며 세수기반을 잠식할 뿐만 아니라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비과세·감면제도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발표된 정비계획은 서비스산업을 성장동력화하는 등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2013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들 중 35개 제도들에 대한 정비계획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일몰기한이 없는 경우도 다수 포함되어 있고 2014년과 2015년에 일몰예정인 제도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¹⁰⁾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는 2013년 세법개정의 3대 기본방향 중 하나인 '과세형평 제고 및 세입기반 확충'을 달성하기 위한 네 가지 추진 전략 중 하나이지만, 국정과제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민중심의 세제를 운영하겠다는 세법개정 기본 방향의 세부 정책내용에도 여러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계획이 포함되어 있다.¹¹⁾ 예를 들어, 2013년 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환경보전시설, 에너지절약시설 등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는 성장동력 확충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통한 국정과제 이행 지원을 위해 기업규모별로 3~5%의 차등화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재설계하여 2016년 말까지 다시 시행하기로 했다. 창조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미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엔젤투자 세제지원, M&A 세제지원, 코넥스 세제지원, 스톡옵션 세제지원 등이 새롭게 신설될 계획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는 기본적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했거나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도의 폐지를 추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정책수단으로써 조세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성장잠재력을 유지·확대하는 기본 방향을 견지하며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세입기반을 확충하면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일련의 비과세·감면제도들을 정비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먼저 이번 비과세·감면제도 정비가 과세형평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고액 금융자산가들의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기존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소득금액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하며 올해부터 금융소득 과세 강화를 통해 수직적

10)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는 반드시 폐지를 의미하지 않는다. 제도의 정비는 정책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제도를 다시 설계하여 시행하는 것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11) 이러한 경우의 비과세 감면제도의 정비는 기존 제도의 재설계 또는 새로운 제도의 신설에 해당한다.

형평성 제고를 도모했다. 그러나 종합과세 기준 소득금액을 인하시키면서 여러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금융자산의 이동만을 초래할 뿐 실질적으로 세수 증대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 가장 바람직했던 정책조합은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금융소득 과세 강화를 논의하면서 금융소득 관련 비과세·감면제도들을 일제히 정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만 인하하고 관련 비과세·감면제도들은 정비하지 않았다.

이미 많은 고액 금융자산가들은 장기저축성 보험 등 가입요건이나 투자액의 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금융상품으로 자산 구성을 변경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소 늦은 감은 있더라도 이번 세법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정비방안을 포함했어야 했지만,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선박투자회사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만을 재설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기존의 저율 분리과세 대상의 한도를 낮추고 투자액의 상한을 정하는 한편 최저세율을 5%에서 9%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이번 금융소득 관련 정비 내역의 전부이다. 이처럼 고액 금융자산가들이 투자할 유인이 큰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금융상품이 존재하는 가운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조정하거나 일부 상품의 조세혜택을 소폭 축소하는 수준의 정책조정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과세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단지 고액 금융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만 여전히 시행되는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금융상품으로 이동시킬 뿐이다. 또한 이처럼 고액 금융자산가들의 과세에 미온적인 정책기조를 갖고 있으면서, 근로소득

자 등 일부 계층의 세 부담 확대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어려우며 국민들이 설득되지도 않을 것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소득금액 인하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그리고 이번 세법개정안이 진정한 과세형평 제고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금융소득 관련 비과세·감면제도의 일제 정비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비과세·감면 정비안의 또 다른 아쉬운 점은 중장기 정비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14년과 2015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여러 비과세·감면제도들 중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2014년 일몰), R&D 설비투자 세액공제(2015년 일몰), 토지수용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2014년, 2015년 일몰) 등 일부 소수의 제도들이 재설계를 통한 합리화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만, 2013년 조세지출예산서 기준 2014년 일몰예정 44개 제도(2013년 잠정 7.3조원)와 2015년 일몰예정 56개 제도(2013년 잠정 6.0조원)에 대한 전체적인 정비계획은 발표되지 않았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비과세·감면제도가 일종의 권리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¹²⁾ 비과세·감면제도들은 한시적으로 특정 목표를 위해 운용되며 정책목표를 달성했거나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제도들에 대한 과감한 정비가 지속된다는 일관된 시그널을 납세자들에게 보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번 세법개정안의 비과세·감면 정비계획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14년과 2015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소수의 제도들이 정비대상에 포함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년과 후년에는 더 이상의 비과세·감면 정비가 없는 것은 아

12)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세원 양성화라는 정책목표를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정비되어야 마땅하지만, 언론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세무담 확대 반대 여론으로 인해 공제한도를 소폭 조정하는 수준의 개편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이는 권리화된 비과세·감면제도의 단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닌가 하는 오해를 낳고 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비정상적으로 운용되어 오던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러한 정부의 정책 운용기조를 알리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 비록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의 궁극적 목표가 과세형평 제고에 있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정부의 공약가계부에서 2013~2017년 동안 18조원의 재원을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조달하기로 했으므로 이번 비과세·감면 정비안은 향후 정비계획과 세수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국회와 국민들에게 정부의 의지를 보다 명확히 하는 계기로 삼았어야 했다.

3.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의 문제

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EITC 확대 및 CTC 신설

근로장려세제(EITC)는 2009년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보전을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면서 빈곤을 축소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2014년부터 근로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을 2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수급 기준과 대상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확대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자녀장려세제(CTC)가 2015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EITC 확대와 CTC 신설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사업이므로, 국정과제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나 EITC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윤희숙(2012)은 Bargain and Orsini(2007)을 인용하여 근로조건부 급여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세제, 사회복지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제도적 배경이 중요하므로 미리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제도의 효과는 예측보다 면밀한 사후적 성과평과와 같은 검증을 통한 제도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09년 도입 이후 EITC 제도의 최대 지급액이 확대되고 60대 이상의 단독가구가 수혜 대상으로 확대되었고 이번 개정안으로 더욱 확대될 계획이지만 윤희숙(2012)이 지적한 바와 같이 아직 EITC의 효과에 대한 심층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소득 하위 1~3분위 계층이 전체 수급자의 66%가 되도록 EITC 제도는 설계되었으나 복지패널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수급자의 28%만이 저소득계층인 것으로 나타나서 빈곤 완화효과는 매우 낮다고 윤희숙(2012)은 지적하며 저소득층의 소득과악률 제고 등 조세행정상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¹³⁾ EITC 확대는 공약사업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점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제시된 방향대로 EITC 제도가 확대되더라도 제도의 성과평가를 하루 빨리 수행하고 차후에라도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자녀양육을 지원하고 여성의 근로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목표를 위하여 일부 국가에서 현금금 형태의 자녀장려세제를 운용하며 저소득층을 지원

13) 윤희숙(2012)은 사용한 복지패널 통계자료가 근로장려세제를 평가하기에 충분히 대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EITC 관련 개별납세자로는 국세청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어서 현재 가용한 자료를 이용한 하나의 잠정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고 있다. 2015년부터 도입될 자녀장려세제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로는 미국과 영국이 있다. 미국의 경우 부부합산 신고소득 11만달러 이하, 한 부모의 경우 7.5만달러 이하 또는 부부 개별 신고 소득 5.5만달러인 경우에 한하여 자녀 1인당 최대 1천달러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세액공제제도는 완전 환급형이 아니어서 납부할 세액이 세액공제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일부만 환급받거나 전혀 환급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영국도 2003년부터 Working Tax Credit과 연계하여 CTC 제도를 도입했다.¹⁴⁾ 영국의 경우 일정소득까지는 최대 공제액을 지급하는 평탄구간과 일정소득 이후 공제액이 감소하는 점감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가 도입하려는 제도와 유사하다.

이번 개정안에서 저소득층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홑벌이 2,100만원/맞벌이 2,500만원까지는 자녀 1인당 50만원의 환급금을 지원하고 이후 가구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4,000만원까지 점감하여 최저 1인당 30만원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세 부담이 작은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환급형태로 제도를 설계함으로써 납부할 세액이 자녀장려금보다 작은 경우 차액이 환급된다. 영국 Joseph Rowntree Foundation에서 발간한 보고서(Chzhen and Middleton(2007))에 따르면, CTC는 육아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의 EITC에 해당하는 WTC도 근로시간을 늘리지는 못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CTC의 경우 일을 그만둘 유인으로 작용하고 WTC의 경우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유인으로

로 작용한다는 이론적 분석결과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다 심도 있는 해외사례 분석이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이러한 부정적 분석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 도입의 목적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나 근로의욕 고취에 두지 않고 단순히 저소득층의 지원이라는 취지에서 찾는다면 제도 도입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저소득층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재정지출의 형태가 아닌 조세지원제도의 형태를 빌어서 해야 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정책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정책목표 달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면밀히 계획된 종합분석을 통해서 도입 이후 성과평가를 깊이 있게 수행할 필요가 있다.

나. 고용창출 관련 지원제도

고용률 70% 달성은 새 정부의 중점 추진 국정과제 중 하나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세지원제도들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어 확대 개편되고 있다. 과거 물적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 중심 세제지원은 투자를 통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구조로 변화됨에 따라 일자리 중심 조세지원제도로 개편되기 시작했다.¹⁵⁾

과거 참여정부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를 통해 고용이 증가하거나 유지되는 중소기업들에 세액감면을 주기도 했으나 그 실효성에 회의적 의견이 제기되면서 명시적 성과평가도 없이 시행한 지 1년 반 만에 폐지됐다. 그러나 점차

14) 영국의 CTC 제도는 근로시간, 소득수준, 자녀수, 보육시설 이용 여부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의 크기가 달라진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일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더 큰 환급을 받을 수 있다.

15) 새로운 제품, 공정, 생산라인 증설 등의 신규투자는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지만, 기존 제품, 공정, 생산설비 등의 대체투자의 경우 오히려 일자리를 축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과 투자를 접목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개편되었다. 2012년부터 시행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성과평가를 하기에는 시기상조임에 틀림없지만, 고용 상황의 개선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그리고 명시적으로 정부가 고용률을 70%라는 특정 수준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함에 따라 관련 조세지원 정책들의 확대 및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양질의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촉진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고용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1인당 100만원을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의 일자리 나누는 기업 세제지원을 경영상의 어려움이 없는 기업들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고용 증가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해 노인이나 장애인 고용 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 한도를 인상하고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는 방안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겨 있다. 이처럼 기업들의 노동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노동공급자들의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자에 노인과 장애인을 추가했으나 감면율은 100%에서 50%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러한 고용창출 관련 조세지원제도의 확대 또는 신설은 취약계층과 같은 특정 계층을 정책대상자로 특정화하는 형태의 제도로 개편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과거 미국에서도 신규고용세액공제

(new jobs tax credits)를 시행하다가 취약계층세액공제(targeted jobs tax credits)와 취약계층의 근로기회세액공제(work opportunity tax credits)로 대체된 바 있다.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세액공제제도에서 사회적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특정 계층을 정책대상자로 삼는 형태의 제도로 개편했던 미국의 사례와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창출 관련 조세지원 정책의 방향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원 대상을 특정화하는 경향을 보이는 정책의 운용 기조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 친화적 조세지원 정책의 효과를 분석할 만한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기존 제도에 대한 엄밀한 성과평가 결과가 없지만 제도를 확대 개편하고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는 경향은 보다 신중히 재고될 필요가 있다.

다. 창조경제 기반 구축

창조경제 구현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이며 창조경제 구현의 주체는 중소기업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창조경제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창의력으로 융·복합하여 새로운 제품, 새로운 산업,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창조경제의 핵심은 모든 경제주체들의 부단한 도전과 혁신이며 그 연원은 우리에게 친숙한 '기업가정신'으로 볼 수 있다. 기업가정신의 정의는 시대와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Kirzner(1973, 1990, 1997)에 따르면 기업가정신은 궁극적 지식(ultimate knowledge)들을 활용하여 잘 알려지지 않는 새로운 사업기회를 실현하기 위해 기민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 정도로 일반화할 수 있다.¹⁶⁾ 따라서 창조경제는 이러한 기업가정신이 잘 발현되어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업기회들이 실현되는 경제일 것이다.

창조경제 구현의 주체인 벤처·중소기업이 사업 활동을 잘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은 단순히 조세지원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창조경제 구현의 주체는 벤처·중소기업에만 국한되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이번 세법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벤처·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엔젤투자 및 코넥스 세제지원 등을 확대 또는 신설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는 현재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포기해야 할 각종 혜택들로 인해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앓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성장에 진정 도움이 되는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기업규모별 조세지원 제도의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이다. 대규모 기업들의 조세지원 제도를 중소기업의 조세지원 제도와 상응하게 완화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를 대규모 기업들의 조세지원 제도에 상응하도록 축소하는 방안이 있다. 두 방안 모두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은 방안들이다. 현재의 제도만으로도 조세지원 혜택의 대부분이 대규모 기업들에 귀착된다는 비판과 세수기반 약화로 인해 첫 번째 방안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후자의 경우 정치적 이유로 인해 중소기업들에 주어지고 있는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 그러나 중견기업이라는 중간다리를 놓더라도 중소기업들이 피터팬 증후군을 극복하

고 성장의 길을 선택할지 의문이다. 중견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의 성과는 중견기업 자체의 성장이라기보다는 많은 혜택을 버리고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서 찾아야 하는데, 중소기업들이 현재의 혜택을 포기하고 기업 쪼개기 대신 성장을 택할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성장사다리의 정책효과를 확신할 수 없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창조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 제도가 수익성이 있는 중소기업들의 세후 수익률 제고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중소기업들의 피터팬 증후군을 치유하고 창조경제 구현에 필요한 도전정신 제고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주체가 각자의 자리에서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도전정신이 요구된다. 이는 젊은 인재들이 공무원 시험이나 대기업 취업에 매달리는 작금의 현실로는 회복되기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이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배양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교육의 변화가 시급하다. 이는 조세정책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의 범위를 벗어나며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하다.

4. 세수확보의 문제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약 2.5조원의 세수효과가 매해 발생해서 2014~2017년의 기간 동안 총 12조원의 추가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발표됐다. 그러나 수정안에 의해 연간 약 0.4조원의 세수가 축소되어 총 11조원의 추가재원이 확보되고 이는 공약 가계부상 비과세·감면을 통해 확보해야 할 재원조

16) 기업가 용어의 어원과 기업가정신의 정의에 대한 문헌들을 간략히 요약하고 있는 김학수(2010)를 참조하기 바란다.

달을 충족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기획재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 있다. 현재 추정된 세수효과는 세수손실법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다. 세수손실법은 특정한 제도를 신설(폐지)하더라도 경제주체들이 경제행위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그 제도가 없(있)었을 때와 동일한 경제행위를 보인다고 전제하고 특정한 제도에 의해 손실(확보)할 수 있는 세수의 크기를 측정한다. 그러나 세수손실법의 기본 가정과는 달리 현실에서 경제주체들은 제도의 변화에 반응하여 행동도 변하게 되므로 세수손실법에 의해 추정된 세수는 실현되기 어렵다.


그러나 경제주체들의 행동변화를 반영하여 세수의 증감을 추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세수손실법으로 추정을 하되 제도 정비를 통해 재원확보를 목표로 한다면 목표액보다 더 큰 규모의 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18조원의 재원을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조달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정비계획을 넘어서는 추가적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려가 이번 개정안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일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법인세율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법인세율 인상은 적절한 대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시행된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구간의 중간단계 20% 세율 구간을 삭제하고 2단계 누진구조로 변경하는 것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간단계의 세율구간을 22% 최고세율과 동일하게 한다면, 연간 약 1.2조원의 세수가 더 건힐 것으로 추정되며 2014~2017년 동안 약 4.8조원에 달하는 세수 증대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는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를 통해 마련해야 하는 18조원의 27%에 달하는 규모로서, 추가적 세수확보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인세율 체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보다 부합하게 바꾸는 효과도 있다. 3단계 이상의 법인세율 누진구조를 가지고 있는 OECD 회원국은 미국, 벨기에, 한국뿐이다. 그리고 OECD 국가들 중 22개 국가들은 단일세율 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국가들은 2단계 누진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잦은 세율구조의 변화는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경기가 좋지 않은 시점에 세율을 인상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Ⅲ. 맺음말

침체된 대내외 경제여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성장잠재력을 유지·확대하며 세계 정상화를 위한 원칙을 수립하고 공약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발표된 2013년 세제개편안의 기본방향과 취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친 정치적 구호와 자신의 세 부담 확대보다는 다른 사람의 세 부담 확대를 통해 복지의 혜택을 향유하려는 이기주의에 의해 2013년 세법개정안은 다소 수정되는 과정을 겪어야 했다. 앞으로도 국회에서 어떠한 수정이 이루어질지 예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소득이 있으면 납세해야 한다는 점과 납세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민의 의무 중 하나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를 보다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되고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일제 정비가 절실히 요구된다.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제도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과연 조세정책이 우월한 정책수단인지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도 있다. 현재의 추정된 세수효과는 경제주체들이 제도 변화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매우 강한 가정을 전제로 추정된 것이므로 향후 목표한 세수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보완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국세청, 『2012 국세통계연보』, 2012.
- 기획재정부, 「2013년 세법개정안 내용 일부 수정·보완」, 보도자료, 2013. 8. 13.
- _____, 「2013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상세본), 2013. 8. 8.
- 김학수, 「기업가정신과 정책환경: OECD 국가를 중심으로」, 『규제연구』 19(2), 2010.
- 대한민국정부,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 2013.
- _____,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2.
- 박노옥, 『비과세·감면제도와 세출예산의 연계 강화 필요성』, 한국조세연구원, 2013.
- 윤희숙, 「근로장려세제로 본 복지정책 결정과정의 문제점」, 『KDI Focus』, 2012. 12. 4.
- Bargain, O. and L. Orsini, “Beans for Breakfast? How Exportable is the British Workfare Model?,” in O. Bargain(ed.), *Microsimulation in Action: Policy Analysis in Europe Using EUROMOD*, Research in Labour Economics, Oxford: Elsevier, Vol. 25, 2007.
- Chzhen, Y. and S. Middleton, *The Impact of Tax Credits on Mothers’ Employment*, Joseph Rowntree Foundation, 2007.
- Kirzner, I. M., “Entrepreneurial Discovery and the Competitive Market Process: An Austrian Approach,”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5, 1997.
- _____, “Knowledge Problems and Their Solutions: Some Relevant Distinctions,” *Cultural Dynamics* 3, 1990.
- _____, *Competition and Entrepreneurship*,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3.



정책토론투리포트

■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개요

- 주 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 일 시 2013년 7월 23일(화), 16:00~18:00
- 장 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0층 대강당
- 진행순서
 - 16:00~16:10 개회사
 - ▶ 개 회 사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16:10~17:40 주제발표 및 토론
 - ▶ 사 회 자 김완석 강남대학교 석좌교수
 - ▶ 발 표 자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 ▶ 토 론 자 김선영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전문
 - 성명재 홍익대학교 교수
 - 이 영 한양대학교 교수
 - 이의영 군산대학교 교수
 - 장경덕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 전수봉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가나다 순)

17:40~17:50 객석토론 및 종합 정리

17:50 폐회

* 본 원고는 2013년 7월 2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연구원 10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의 주제 발표 및 토론 요약입니다. 주제 발표 및 토론의 내용은 소속기관이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주제발표 요약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 정부는 매년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조세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세제개편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 왔는데, 이에 대해 세제개편에 중장기적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었음
- 중장기적 개편방향을 설정한 후 당면한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제개편안을 만들 때 비로소 시의성을 잃지 않으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임
- 본 보고서는 그간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정리한 것으로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조세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새 정부의 국정비전 달성을 위한 향후 조세정책 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언하는 데 목적이 있음

1. 조세정책의 현황과 국제 비교

- **(부담률)**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및 재정규모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임
 - 조세부담률은 2010년 19.3%, 2012년 20.2%로 미국, 일본에 비해 높으나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임
 - 미국, 일본은 오랜 기간 재정적자를 보이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재정규모는 유럽 국가는 물론 미국, 일본에 비해서도 상당히 작은 수준임

〈표 1〉 주요국의 재정규모 비교(2010년)

(단위: %)

구분	한국	일본 (2009)	미국	독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OECD (2009)
조세부담률 (A)	19.3	15.9	18.3	22.1	28.3	29.4	26.3	24.6
사회보장부담률 (B)	5.7	11.0	6.5	14.2	6.7	13.6	16.6	9.2
국민부담률 (C=A+B)	25.1	26.9	24.8	36.3	35.0	43.0	42.9	33.8
재정수지 (D)	1.4 (-1.1)	-8.7	-10.6	-3.3	-10.3	-4.5	-7.0	-8.2
총재정규모 (C-D)	23.7 (26.2)	35.6	35.4	39.6	45.3	47.5	49.9	42.0

주: 괄호 안은 관리대상 수지 기준

재정수지는 General Government Net Len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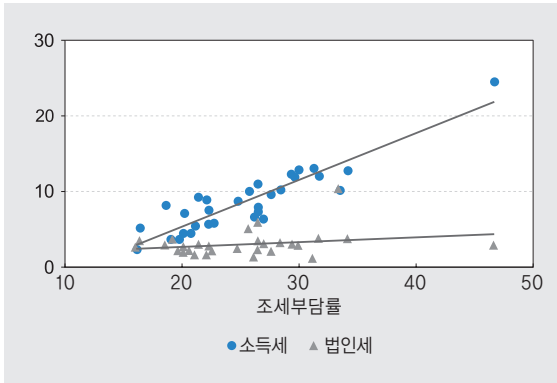
자료: OECD database 2011, 안종석 외(2012)에서 재인용

- 북유럽 국가들은 높은 조세부담률(36.3%)과 국민부담률(45.1%)을 바탕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OECD 최고의 복지수준을 보장하는 반면,
 - PIIGS 국가들의 경우 복지지출은 OECD 평균 보다 높은 수준이나 조세부담률(22.4%)과 국민부담률(32.5%)이 낮아 재정적자가 불가피함
- **(세수입 구조)** 우리나라는 소득세와 일반소비세의 비중이 낮은 편이며, 법인세 부담은 높은 편임
 - 2010년 기준 OECD 국가는 총조세수입의 44.4%를 소득세(23.9%), 일반소비세(20.5%)로 조달하나, 우리나라는 소득세 비중이 14.3%, 일반소비세 비중이 17.6%로 합계 31.9%임
- OECD 국가의 조세부담률과 세목별 세수입의 관계를 보면 법인세와 개별소비세는 조세부담률과 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으나 소득세와 일반

소비세의 GDP 대비 비중은 조세부담률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이 뚜렷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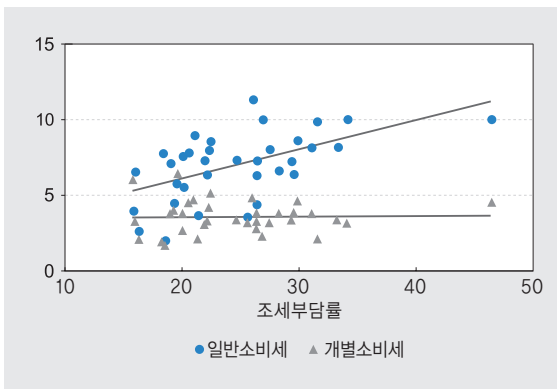
[그림 1] GDP 대비 소득과세 비중(2010)

(단위: %)



[그림 2] GDP 대비 소비과세 비중(2010)

(단위: %)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들은 재정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세수입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추진함
 -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세수입을 확대하였으며, 법인세 부담은 완화 속도가 늦춰졌을 뿐 계속 완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됨
 - 소득세율: 5개국 인하, 12개국 인상, 17개국 유지(평균+0.8%p)

- 부가가치세율: 17개국 인상, 16개국 유지(평균+1.0%p)

2. 중장기 조세정책 여건

- **(저성장)**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노동 투입에 한계가 나타나며, 저축률이 하락함에 따라 투자가 감소하고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잠재성장률 전망치(KDI): 3.8%(2011~20), 2.9%(2021~30), 1.9%(2031~40)
 - 조세정책 수립에 있어 성장잠재력 확충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됨
- **(고령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수요의 증가임
 - 보건복지부·한국조세연구원(2009) 복지지출 규모 전망(2009년 제도 유지 시): GDP 대비 9.52%(2009년) → 21.6%(2050년)
 - 새 정부가 약속한 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35조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조세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임
- **(기후·환경 변화)** 조세정책이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는데, 배출권 거래제 등 다른 정책수단과 연계하여 효과적인 정책조합을 도출하여야 함
 - 에너지 수요를 억제하여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소득격차 확대)** 최근의 동향을 보면 가처분소득 (전국 기준, 1인 가구 및 농가 포함) 지니계수가 2006년 0.306에서 2008년과 2009년에는 0.314로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개선되어 2012년에는 0.307로 2007년 이전 수준을 회복함
 - 그러나 조세·이전소득에 의한 소득분배 개선 효과는 9.2%(2012년)로 개선효과가 20%가 넘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임
 - 조세정책이 소득재분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함
- **(통일 대비)** 통일에 대비해서는 통일 후 예상되는 막대한 재정 소요에 대비하여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1990년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국민부담률이 2%p 내외 증가하였음: 1990년 34.8% → 1992년 36.9%

국민부담률은 2.5%p와 2.4%p 증가하여 다른 정권에서의 변화를 압도하였음

- 전두환 정부와 김영삼 정부에서는 조세부담률이 각각 0.4%p, 0.6%p 증가하였고 국민부담률은 각각 0.4%p, 1.4%p 증가하는 데 그침
- 이명박 정부에서는 조세부담률이 증가하지 않았으며, 국민부담률은 0.7%p 증가함

〈표 2〉 1970년대 이후 시기별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변화¹⁾

(단위: %, %p)

연도	조세부담률(A)	국민부담률(B)	차이(B-A)
1972~1982	15.4	15.6	0.2
1983~1987 (전두환)	15.8 (0.4)	16.0 (0.4)	0.2
1988~1992 (노태우)	16.8 (1.0)	18.8 (2.8)	2.0
1993~1997 (김영삼)	17.4 (0.6)	20.2 (1.4)	2.8
1998~2002 (김대중)	18.6 (1.2)	22.7 (2.5)	4.1
2003~2007 (노무현)	19.8 (1.2)	25.1 (2.4)	5.3
2008~2012 (이명박)	19.8 (0.0)	25.8 (0.7)	6.0

주: 1) 각 정권이 시작한 이후 두 번째 연도부터 다음 정권 첫 해까지의 평균치이며, 괄호 안의 수치는 이전 정권 대비 변화폭을 나타냄

3.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 방향

가. 조세부담률 수준

- 한 나라의 재정규모 및 이에 필요한 조세부담 수준을 결정하는 데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므로 명확한 답을 찾기 어려움
 - 정부 역할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치적 선택과정을 통해 결정될 수밖에 없음
- 참고로 대통령 재임기간(5년)을 기준으로 시기를 구분하여 각 시기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평균치를 비교해 보면,
 - 진보진영에서 집권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조세부담률이 각각 1.2%p씩 증가하고

- 새 정부는 다양한 복지제도의 확충을 제시하였으며, 그 재원 마련 방법으로 세율 인상, 세목조정 등의 직접적인 증세 방법보다 비과세·감면의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에 초점을 맞춤
 - 이는 조세의 공평성, 효율성 관점에서 현행 조세제도 및 행정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개선하는 방법으로서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재정수입의 확보 외에도 조세의 공평성·효율성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이 범위를 넘어서는 세입 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복지재원 수요, 잠재성장률 수준,

비과세·감면의 축소 및 지하경제 양성화의 성과 등을 고려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개별소비세는 환경세 등 외부불경제 교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편을 검토함

나. 세수입의 구성

- 다른 국가와의 비교 결과, 장기적으로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부가가치세 수입을 증대시키고 법인세 부담은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이는 이론적으로 바람직한 방향과 일치하는 정책 방향임
 - 법인세는 효율성 관점에서 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비해 열등하며, 형평성의 개선에도 기여하지 못함
 - 부가가치세는 효율성 관점에서 매우 우수하며, 형평성을 악화시키는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은 효율성 관점에서 부가가치세보다는 못하나 법인세보다 우월하고, 형평성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세목임
- 각 세목의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소득세는 면세자 축소, 과표양성화를 통해 국민 개세주의를 실현함
 - 법인세는 감면제도를 정비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함
 - 재산과세는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해 ‘거래세 인하, 보유세 강화’ 정책 방향을 유지하고,
 - 상속증여세는 비효율성이 크므로 어느 정도의 누진성을 유지하면서 투자·성장 저해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조화 방안을 모색함
 - 소비과세는 면세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과세기반을 확충함

4. 세목별 조세정책 운용방향

- **(소득·금융과세제도)** 과세기반을 확대하여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을 합리화하고 소득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함
 - 주요 추진 과제(예시)
 - 비과세 소득을 과세로 전환하여 과세기반 확대
 - 소득공제 중 세액공제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세액공제로 전환
 -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 **(법인과세제도)**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고 성장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해 세부담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추구함
 - 주요 추진 과제(예시)
 - 기업과세제도 합리화 및 구조조정세제 지속적 보완
 - 투자·R&D에 대한 세제지원 정비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세법)의 관계 재정립
 -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
- **(재산과세제도)** 부동산 거래 정상화에 기여하고 투자·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세제를 운영하며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함
 - 주요 추진 과제(예시)
 -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감면제도 합리화
 - 상속증여세: 재산 평가방법의 선진화, 가업상속제도 실효성 제고

-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현실화하면서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 **(소비과세제도)** 복지지출 증가 등에 따른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세·감면제도를 정비하고,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을 조정하여 세입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추진 과제(예시)

- 금융·의료용역, 학원 등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확대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 조정

- 에너지세제 개편

■ **(국제조세·협력 분야)** OECD 등의 역외탈세 및 공격적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도입하는 등 국제조세제도를 선진화하고 국가 간 행정 협력·공조를 강화함

• 주요 추진 과제(예시)

- 역외탈세 방지 등 국제조세제도 선진화

-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 개선

- 디지털 경제 등 국제 경제 환경에 맞게 국제조세제도 합리화

-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은 국가·지역과의 정보교환협정 체결 확대

■ **(관세 분야)** FTA 확대 등 대외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본관세율 체계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관세환급 합리화, FTA 활용률 제고 방안을 등을 추진함

• 주요 추진 과제(예시)

-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한 관세제도 선진화


- 관세환급제도 합리화

- 기본관세율 체계 개편 검토

- 관세율표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체계 개편

■ **(국세·지방세 조정)** 실질적인 지방의 과세자주권 제고 효과, 지역 간 및 중앙·지방 간 재원 배분 효과를 고려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과세체계 간소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다양한 목적세가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하는 요인이 되므로 정비하여 과세체계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토론 요약**

국제조세 선진화 위한 제도 정비 필요

김선영 /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전문

비과세 소득을 과세로 변환하자는 의견에 동의한다. 기술과 지식을 겸비한 기술자 등 외국인 특혜는 본래 1980년대 해외근무 장려수단으로 인한 특혜로 해외근무 수당에 대한 비과세로 시작하였다. 2002년도에는 비과세 한도를 20%에서 40%로 인상하였는데, 이는 동북아시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소득세 부담을 싱가포르 수준으로 경감하기 위한 것이었다. 2004년에는 30%로 줄이고 이후 17% 단일세율과 30% 소득공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가 현재는 17%이다. 외국인에 대한 특혜는 싱가포르 17%, 홍콩 15%인데, 외국의 수준으로 점차 개편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졌고 외국인 근무 환경 개선과 활성화가 되었으므로 오래된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국제조세의 선진화를 위해 우리나라에 투자하거나 우리나라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할 때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 정비가 필요하다. 외국 파트너십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때, 파트너에게 과세할지 파트너십에 과세할지를 정하고, 입법으로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법인격은 있지만 그 나라의 과세목적상 과세법인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동업기업 과세가 있다. 기본적으로는 동업기업 자체는 과세법인이지만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선택함으로써 동업자에게 모든 소득이 과세되는 경우이다. 이럴 경우 동업기업을 법인격이 있는 법인으로 볼지, 법인격이 없으니 소득세를 과세할지 불분명하므로 정리가 필요하다.

수익적 소유자, 실질과세 문제도 있다. 다국적기업 지역지주회사의 펀딩, 파이낸싱, 셰어드서비스(shared service) 등과 관련된 문제가 이에 속한다. 지역지주회사는 목적 자체가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제조·판매하는 회사를 자회사 격으로 소유하는데, 우리나라 과세 관청은 지역지주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모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서 그 지역을 총괄하는 역할만 인정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지역지주회사는 부인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해외에 투자할 때 지역지주회사를 쓰는 것은 어떻게 볼 것인지 입장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리가 필요하다.

증권 등 하이브리드 인스트루먼트(hybrid instrument)를 어떤 나라에서는 채권으로 여기지만 다른 나라로 가면 주식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정할 필요가 있다. 세법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세에 있어서 각 지방정부가 과세권을 가지는데,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분쟁의 소지가 있다. 납세자의 혼돈으로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비가 필요하다.

의의성·효율성 고려한 세제 개편 되어야

성명재 / 홍익대학교 교수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한 예측이 매우 어려워지고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선진국들의 노쇠화 등은 우리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 지금까지 개발된 경제이론이 제대로 답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이번 공청회는 중장기적인 조세발전방향을 제시하였고

미래지향적 시점에서 볼 때 합리성이 높은 방안을 많이 담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시의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성이 매우 크다. 첫째,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첫해로서 집권 5년 기간 중 가장 개혁적 추진이 용이한 시점이라는 것, 둘째, 이미 시급하게 착수·개혁하여야 할 현안이 많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점에서 중장기 개편방향에 대해서도 관심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제비교에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유용한 참고자료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국제비교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 작금의 세계 경제는 전인미답의 경계를 넘고 있고, 유럽 등 선진국의 과거 추세 분석은 앞으로 우리가 당면해야 할 상황과 너무나 다른 여건이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대부분이 급격히 노쇠하고 있어 과거 동반성장 시대의 경제실적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비교·적용할 수 있는지 근본적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최근 장기 세입여건에 대한 연구를 종합해보면, 세원분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조기에 위축·축소될 수 있다. 복지수요, 통일재원 등 재정소요는 무한하게 증가할 전망이다. 조세부담률은 조기에 하락 반전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근본원인은 저출산·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급변, 불안한 대외여건 등이다. 대내적으로는 산업·자본의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 이미 상황이 개시되면 늦고, 예방적 차원에서 선제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고령사회에서는 높은 재정악화 가능성으로 인해 건전재정구조의 조기 확보가 지속가능발전과 성장에 필수적이다. 고령사회에서는 복지수혜 삭감이나 유효한 재원확보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곤란하거나 매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세원 중 일부는 2030년경 세원 하락의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일

단 세원축소 현상이 나타나면 진행속도가 가속화될 수 있다.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세구조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적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우리 인구·사회·경제구조가 팽창적이었기 때문에 다소 부정적 요소가 있더라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완충재가 있었지만, 수축적 구조로 전환되는 향후 시점에서는 효율성 조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

적정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등을 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교과서나 이론적인 것이고 현실에서는 고부담-고수혜, 중부담-중수혜, 저부담-저수혜의 세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국민적 합의 도출이 기본전제가 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면세범위 축소, 세율인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아울러 개편 시기도 생각보다 빨라야 하는데, 세원분포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위축되고 있고, 일단 위축 현상이 관찰되는 시점에 도달하면 세율인상 등이 정치적으로 더욱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상속·증여세는 고령사회로 가면서 부와 자산이 고령자들에게 집중되어 세대 간 불공평성이 급속히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경우 젊은 계층의 경제 활력이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부의 무상 이전 등을 통해 활력 위축을 방지 또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기적으로 상속·증여세의 과감한 축소 또는 폐지 검토가 필요하다. 상속·증여세는 탈세방지의 한 수단이었던 만큼 과표양성화가 본 궤도에 이르면 이론적으로도 이중과세의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축소·폐지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과세 지속의 실이 득보다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세 과세기반 역시 생각보다 빨리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연동제 등의 도입을 통해 이념 등에 세제가 좌우되지 않도록 정치 과정으로부터의 중립화를

조속히 서둘러야 한다.

법인세는 장기적으로 과도하지 않게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에 동의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전가격 제도 정비 등을 통해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인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제된 상황하에서는 과감히 법인세를 낮추고 장기적으로 개인소득세로 그 중 상당 부분을 환수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소비과세 부문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조정 및 세율 인상이 바람직하고, 죄악세, 환경세, 건강세(비만세 등), 에너지세 강화 등이 필요하다. 또한 원인자부담원칙 강화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완화·방지할 필요가 있다.

경제논리 적용한 구체적 세수확충 방안 필요

이 영 / 한양대학교 교수

중장기 조세정책을 정리하여 정부 문건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와대와 정치권의 목소리가 매우 큰 것에 반해 경제부처들은 경제논리를 반영한 정책대안에 대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조세와 재정지출에 있어서 경제논리가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다.

보고서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5년의 시계라는 것이 보다 명확한 틀로 사용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5년의 기간에 대해서 성장률, GDP 수준,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세목별 세수 목표, 세수확충 방안(세율조정, 비과세·감면 조정, 세율양성화 등으로 분류)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관련 제도 변화를 상세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 복지 확대 135조원, 지역공약 124조원, 교원

확충과 교육여건 개선 등 재정지출 소요는 매우 큰 데 반하여 세수 확충은 비과세·감면 축소, 세율 양성화라는 두 가지 수단만을 통하여 추진되고 있어 재원확충이 필요한 소요재원에 비하여 세수는 매우 부족하며 더욱이 현재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결손이 나타나고 있다.

세수확충 방안이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세수 규모를 포함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담배세 인상, 탄소세 신설, 파생상품 과세, 종교인 과세,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축소, 근로소득공제금액 상한 설정,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간이과세제도 축소 등 여러 세수확충 방안에 대해서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한다.

세율을 인상하고 과세대상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정부 입장과는 맞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개인소득세의 세율 인상과 과표구간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세수확충 방안은 필요한 세수를 확보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소득세를 얼마나 잘 걷고 있는가는 법정최고세율이 얼마인가보다 실효세율과 과세대상 범위에 더 좌우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기준을 낮추고 세율을 40% 정도로 소폭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소득세율을 40% 정도로 인상하고 세율구간을 아래로 내리는 경우에도 확충되는 세수규모는 크지 못하다. 국민에게 비과세·감면 축소, 세율 양성화, 개인소득세율 인상이라는 모든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확충되는 세수규모에 대해서 가감없이 제시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복지, 지역공약, 교육 등 재정지출사업의 축소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금융소득에 대한 실효세율도 매우 중요한데, 이를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이슈다. 현재 2,000만원까지만 원천징수하고 그 이상의 경우 종합소득에 포함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주식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도 소액주주의 경우 비과세, 대주주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북구에서 사용되

고 있는 DIT, 미국에서 적용하는 금융소득에 대한 낮은 세율, 독일에서 사용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낮은 세율 등 다양한 방안이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종합과세 포함 기준금액을 낮추고 대주주의 정의를 확대하는 형태의 세제개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득에 대한 낮은 과세는 이중과세를 피하고 탄력성이 높은 금융소득에 대해서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으나, 금융소득의 분포가 매우 불균등하고 금융소득이 불로소득 형태임을 감안한다면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체제로의 편입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법인세제 개편방안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동의하나,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정비의 필요성을 덧붙이고 싶다. 농업부문과 중소기업부문에 과도하게 세제·금융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지원이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있다. 복지정책을 별도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은 사안이지만 차량운영비용 공제액에 일정 상한을 설정하여 과도하게 고가의 차량을 사용하려는 유인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간이과세제도 축소와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축소에 적극 동의하고, 통일 시 부가가치세율을 2%p 정도 인상하여 통일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은 급박한 사태 변화가 있을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취득세 인하는 재산세 인상으로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조세저항이 매우 큰 세제를 중앙정부의 관할로 잘못 설정하였다는 근본적인 제약점을 고려하여 폐지하고 재산세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경제적 변화 반영된 소득세제 재설계 필요

이의영/군산대학교 교수

발표 내용은 OECD 국가들과의 국제비교와 사회경제적 환경분석을 토대로 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조세관련 단기적인 현안들이 추가되어 있다.

오늘의 주제가 신정부 출범 이후의 중장기 조세정책의 방향인데, 중기에 해당하는 신정부 5년의 국정철학에 해당하는 국민행복, 복지, 국민통합, 경제민주화 등의 정신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총론에 이어 개별과세 항목별로 토론하고자 하나, 시간계약상 소득세에 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소득공제제도의 재설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한국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누진구조 강화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발표 내용은 주로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소득은 유리지갑과 같이 과세되고 있는 반면, 사업소득과 자산소득은 여전히 제대로 과세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업소득과 자산소득에 대한 조세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장기 조세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 등 서구 국가들의 경우에는 자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순으로 소득분배가 악화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근로소득보다 사업소득이, 사업소득보다 자산소득이 훨씬 더 왜곡되어 있다. 외국의 조세구조를 벤치마킹하거나 비교분석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근로소득보다는 사업소득과 자산소득 과세에 더 많은 정책적 역량의 투입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공평조세와 탈세 척결을 통한 소득과 부의 불평등 완화가 필요하며,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세제의 활용, 복지적 측면에서 조세의 왜곡효과 완화와 소득재분배기능 강화, 지역 간 재정격차를 줄이

기 위한 중앙과 지방의 세원 조정이 필요하다.

명확하고 분명한 방향성이 제시되어야

장경덕/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과거 정책당국이 정책 방향을 밝힐 때 ‘중장기’라는 수식어를 쓰면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하여 바로 추진하기 곤란하며 긴 호흡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세정책 방향에 중장기라는 말이 붙으니 당장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좀 더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면 좋을 것 같다.

정책은 어차피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지고 수많은 불확실성이 있고 구체적인 수치로 목표를 제시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은 알지만, 조세부담률이 얼마나 높아질 것인지 분명한 방향성이 나와야 한다.

현 정부는 복지 확대를 약속했고 이를 지키려면 세수를 늘려야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 단지 ‘복지 수요나 잠재성장을 등을 고려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식으로 너무 애매하게 답한다. 조세 여건이 너무 좋지 않으면 재정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 정부가 솔직하게 여건이 얼마나 안 좋은지 밝히고 조세 부담을 얼마나 높일지 또는 재정 지출을 얼마나 줄일지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면세자가 근로소득자의 36%나 되고, 부가세 간이과세사업자가 전체의 3분의 1이나 되므로 국민개세의 원칙에 따라 면세자, 간이과세사업자 축소와 종교인 과세가 필요하다. 부가가치세 세율을 높이는 것은 통일 등 중대한 재정 수요에 대비해 아껴두어야 한다.

명목세율은 전반적으로 그대로 두고 실효세율과 실질적인 세금부담을 높이는 조세정책·세정운영은 양날의 칼인 것 같다. 불합리한 비과세·감면과 지하경제를 줄여서 형평성을 제고하는 측면도 있지만, 자칫 잘 못하면 세정에 지나치게 많은 재량을 주게 되고 쉽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부문을 집중 공략하면 형평성이 소홀히 다뤄질 수도 있다고 본다.

지난 5년 새 정부의 그림자라고 생각되는 공기업 부채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재정이 해야 할 일을 조세를 통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와 공공부문 전체를 보고 조세와 재정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성장 사다리 구축의 조세정책 의지 보여야

전수봉/대한상공회의소 조세본부장

매년 기업들로부터 세제 애로사항을 청취하다 보면 기업인들이 세금과 관련하여 가장 힘들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최근 수년간의 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기업 승계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와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세 부담 완화와 관련된 건의, 대기업은 투자와 R&D 부문의 조세지원을 유지하여 달라는 건의가 주된 내용이다. 물론 정부가 기업의 건의 내용을 일부 반영한 부분도 있으나, 기업인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것 같다.

중소·중견기업은 창업 1세대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 시작하면서 성공적인 기업승계를 위한 상속세 부담 완화를 절실히 바라고 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기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지

만, 공제율과 공제한도가 주요국보다 낮고 사전 및 사후 요건, 추정방법 등이 엄격하여 실제 공제혜택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은 것 같다.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현행 70%의 가업상속공제율을 독일처럼 85~100% 수준으로 늘리고 현재 100억~300억원인 공제한도를 폐지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매출액 2천억원 이하 중견기업까지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데 1조원 이하 중견기업까지 공제대상을 늘려 중견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 한편, 사후관리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면 기업이 경영위기를 겪을 경우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가업상속 후 고용유지의무를 독일이나 일본 수준으로 완화하고 사후의무요건을 일부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안분 추정함으로써 가업상속 후 경제 기여도를 일부 인정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여 중소기업 때 받던 각종 세제혜택이 없어져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완화해야 한다. 최근 중소-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면서 관련 세제 개선에 대한 기업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세수 문제로 정부에서 쉽게 개선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 같다. 튼튼하고 건실한 중견기업이 많아진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기업생태계에 있어 아주 중요한 일이다. 정부가 조세정책에 있어 성장 사다리 구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한편 대기업들은 투자와 R&D 등에 대한 조세지원을 축소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대기업의 경우 투자와 R&D 등에 대한 조세지원 축소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기업의욕이 위축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세입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데 세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제성장이고 투자가 성장의 원동력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법인세율 인상을 지양하는 동시에 기업 투자나 고

용, R&D 등에 대한 비과세·감면 정비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세계 주요국의 법인세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야 하며, 비과세·감면으로 연간 30조원 규모의 세수손실이 있다고 하지만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세수는 경제성장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데, 기업 투자나 R&D 등에 대한 비과세·감면은 경제 전반과 기업 경쟁력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투자회복과 고용창출이 국정운영의 주요 현안인데 이에 대한 조세지원을 줄이는 것은 방향성이 맞지 않다고 본다. 특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고용창출과 관련된 지원세제는 지속되고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청년실업 해소와 여성·고령인력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상속세제는 전반적으로 지나치게 엄격하고 경직적이므로 전체적으로 손질하여 과거의 왕성했던 기업이 정신을 살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상속세율,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상속세 과세유형(유산과세형) 등 상속세제 전반이 외국에 비해 엄격하다.

소득세 과세기반을 확대하여 소득세 비중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 일부에서는 소득세율 인상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소득세제는 높은 면세자 비율 등 과세기반이 좁은 것이 문제인 만큼 이를 해결하지 않고 소수 고소득층 증세로만 대응하는 것은 장기적인 세수 확보 차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면세자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소수 고소득층에게만 세금 부담을 가중시킨다면 근로의욕·자영업자 투자 의욕 등 경제활동 유인 감소, 탈세 및 조세회피 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과 폐지 반대 입장에서는 부동산 투기 우려, 부자 감세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실은 부동산 거래 침체, 가격 하락, 임대가격 상승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는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전세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지 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며, 개인이 보유한 주택 수가 그 개인의 부유한 정도를 정확하게 반영하지도 않았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세율과 GDP 대비 비중이 낮은 편이긴 하지만 선부른 정비는 물가와 소득재분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만약 장기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강화된다면, 늘어난 소비세수 용도를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며,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이 전지출 확대 등 재정지원 정책과 긴밀히 연계하여 형평성 측면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KIF**



주요국의 조세 · 재정동향

*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의 「주요국의 조세동향」과 재정지출분석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재정동향」 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주요국의 조세동향

동향 13-07

요약

- 네덜란드 재무부 장관은 6월 28일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신규 설비자산에 세무상 한시적인 가속상각을 허용하기로 결정함
- 대만 입법원은 6월 25일에 개인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소득세법」 규정을 개정함
- 벨기에 정부는 법인세 납부가 없는 상황에서 배당을 지급한 기업들에게 ‘공평세(Fairness Tax)’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함
- 스페인 정부는 6월 29일에 담배와 술 소비세 인상을 공포하였으며 6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 이탈리아 국세청은 6월 25일 거액 납세자와 과세 당국 간의 협력을 위한 프로그램(regime di adempimento collaborativo, RAP)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발표함
- 헝가리는 6월 17일, EU에서 예측한 헝가리의 GDP 대비 세수부족에 대비하는 대응책으로 금융 거래에 대한 세율 인상을 발표함
- 홍콩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와 조세정

보교환협정(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s; TIEAs)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이 7월 10일 입법회를 통과함

1. 네덜란드의 신규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도입

- 네덜란드 재무부장관은 6월 28일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신규로 투자된 설비(facility)에 가속상각을 세무상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함
 - 2013년까지 신규로 투자한 설비의 경우 50%까지 세무상 감가상각비를 설정할 수 있음
 - 투자금액은 2013년까지 집행되어야 하고, 투자된 설비는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운용되어야 함
- (자료 수집 및 정리: 김태훈 회계사)

2. 대만의 개인 주식양도차익 과세규정 개정

- 대만 입법원은 6월 25일에 개인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소득세법」 규정을 개정함
 - 이번 개정은 2012년에 도입된 주식양도차익 과세에 따라 위축된 주식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것임
- 종전 규정에 따르면 2013년과 2014년에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 실제기준과 간주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2015년부터는 실제기준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였음
 - 실제기준(actual basis)을 선택하게 되면 실제 양도차익에 1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해야 함
 - 실제기준을 적용할 경우 주식양도차손은 동일한 연도의 다른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있으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는 않음

- 반면 간주기준(deemed basis)을 선택할 경우에는 주가지수가 8,500포인트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되며, 양도가액에 0.02~0.06%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됨
 - 간주기준에 의한 계산방식은 양도가액에서 0.1~0.3%의 간주이익율을 곱하여 계산한 간주이익에 20%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양도가액에 0.02~0.06%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됨
 - 다만, 이 방식은 비상장주식이나 비거주자 보유주식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기업공개(IPO)에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¹⁾
- 간주기준은 2015년부터 폐지되는 대신, 종전에 간주기준을 선택할 수 있었던 납세자들은 연간 양도가액이 10억타이완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 실제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 개정법에 따르면 2013년과 2014년에는 주가지수 8,500포인트 이상인 경우에도 간주기준을 선택하면 과세하지 않고, 2015년 이후에는 2가지 과세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함
- 침체된 주식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2013년과 2014년에는 주가지수가 8,500포인트 이상인 경우라도 간주기준을 선택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음
- 2015년부터는 연간 양도가액이 10억타이완달러를

초과하는 납세자들에게 ①양도가액에 0.1%의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과 ②양도차익에 1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함

- 양도가액 중 10억까지는 0.1%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10억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만 0.1%의 세율로, 또는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15%의 세율로 신고납부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이나 비거주자가 보유하는 주식, 기업공개에서 취득한 주식의 양도는 종전과 같이 실제기준에 따라 과세됨

(자료 수집 및 정리: 마정화 연구원)

3. 벨기에의 '공평세(Fairness Tax)' 부과 방안²⁾

- 벨기에 정부는 EU에서 요구한 재정부족 해소 및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7월 1일에 발표한 정책 수단들 중의 하나로, 법인세는 내지 않고 주주들에게 배당을 지급한 기업들에게 '공평세(Fairness Tax)'를 부과할 것을 제안하였음
- 벨기에에는 2012년에 GDP 대비 세수부족률이 3.9%에 이르렀으며 EU는 벨기에 정부에게 세수부족률을 3% 이하로 낮출 것을 권고하였음
- EU의 권고에 따라 벨기에에는 세수부족률을 GDP 대비 2.7%로 낮추기 위하여 세금 신설 및 기존 세금의 세율 인상 및 각종 감면 및 공제를 축소하려고 준비 중임
- 공평세(Fairness Tax)는 이월결손금 공제 또는 각종

1) 기업공개에서 취득한 주식을 1만주 초과하여 양도하는 경우나 2013년 1월 1일 이후 기업공개에서 주식을 취득하고 대만 주식시장에서 매각하는 경우, 신흥 회사 주식(emerging shares)을 10만주 초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제기준을 적용해야 함

2) [http://services.taxanalysts.com/taxbase/tnipdf2013.nst/PDFs/TT1710708.pdf/\\$file/TT1710708.pdf](http://services.taxanalysts.com/taxbase/tnipdf2013.nst/PDFs/TT1710708.pdf/$file/TT1710708.pdf)

세금 혜택으로 인하여 법인세를 내지 않았지만 같은 연도에 주주들에게 배당을 실시한 기업들이 대상이며 지급된 배당 총액 대비 5%의 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임

- 대기기업들이 공평세 부과 범위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기업의 R&D 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투자에 대한 감면 또는 특허 관련 감면으로 생긴 세금공제로 인한 이익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을 것임

- 벨기에 정부는 공평세의 신설은 2013년에 1억 4천만 유로, 2014년에 1억 6,500만 유로의 세입을 증가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이외에 외교관들에게 적용했던 소비세 면제의 일부 폐지, 법률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상업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신설, 은행에 대한 'subscription tax'³⁾ 인상 등도 계획하고 있음
 - 외교관을 대상으로 한 담배, 연료, 알콜 소비세 면제를 폐지할 것이며 이 결과로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1,020만 유로의 세입을 예상하고 있음
 - 법률서비스에 대한 VAT 적용이 2014년에 시작될 것이며 이 결과로 2014년에 8,900만 유로의 세입 증가가 예상됨
 - 상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기업들은 2014년에 법인세를 납부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3천만 유로의 세수가 창출될 것임
 - 은행에 대한 'subscription tax'의 인상으로 2013

년에 4천만 유로 2014년에 1억 7,100만 유로의 세수 증가가 예상됨

(자료 수집 및 정리: 홍성열 회계사)

4. 스페인의 담배와 술 소비세 인상⁴⁾

- 스페인 정부는 담배와 술 소비세 인상 시행령을 6월 29일에 공포하였으며 당해 시행령은 6월 30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임
 - 알콜과 알콜음료 소비세(일괄적인 세율로 부과됨)는 10% 인상할 것이나 와인과 맥주는 해당 인상 대상 품목에서는 제외하였음
 - 순수 알콜에 부과되는 세금은 현행 1리터당 8.3유로이며, 개정으로 인하여 1리터당 9.13유로로 인상됨(10%인 0.83유로 인상). 이러한 인상에 따라 알콜 함량 비율에 따라 알콜음료에 부과되는 세금도 인상됨⁵⁾
 - 담배에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1천개피당 19.10유로에서 24.10유로로 인상되었으나 증가세율(담배의 가격에 따라서 매겨지는 세금)은 종전 53.1%에서 51%로 낮아짐
 - 이와 같은 인상에 따라서 1천개피당 부과되는 최소한의 세금은 종전 123.97유로에서 128.65유로로 상승하게 됨

(자료 수집 및 정리: 홍성열 회계사)

3) 프랑스 원문으로 'Taxe d'abonnement'이며 벨기에에서는 은행의 예금 계좌 잔고에 연간으로 부과하는 세금임

4) http://online.ibfd.org/kbase/#topic=doc&uri=/data/tns/docs/html/tns_2013-07-02_es_2.html&WT.z_nav=Navigation&colid=4913

5) <http://www.benidormallyearround.com/2013/06/spanish-government-raises-tax-on.html>



5. 이탈리아의 거액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의 협력프로그램 실시

- 이탈리아 국세청은 6월 25일 대기업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의 협력을 위한 프로그램(regime di adempimento collaborativo, RAP)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발표함
 - 시범실시 후, 확대 실시의 필요가 있을 경우 입법을 통해 제도화할 예정
- RAP은 납세자가 과세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투명성에 기초한 조세협력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즉 납세협력을 이끌어 내는 방법으로 종전과 같은 사후적 방법이 아니라, 사전적인 방법을 도입하는 것임
- 국세청은 납세자가 RAP 참여를 신청할 경우 대기업 납세자(Large Business Taxpayers) 해당 여부 등을 심사하여 시범실시 대상자를 선정함
 - RAP 시범실시 참여자의 필수적 요건은 다음과 같음
 - 2011년 기준으로 납세자의 총매출액이나 영업매출이 1억유로를 초과하는 납세자⁶⁾
 - 조세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조세통제제도(tax control framework)를 채택하여 운영중인 납세자
 - 국세청의 RAP 참여자 심사 시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다국적 기업의 계열사이거나 고정사업장을 통해 이탈리아나 해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납세자인

지 여부

- 외국에서 RAP과 유사한 납세협력프로그램을 채택하거나 다른 국가의 과세당국의 행동규범(a code of conduct)을 채택하는 납세자인지 여부
- 국제조세규정(section 8 of decree-law no. 269 of 30 September 2003)과 같은 납세협력제도를 따르고 있는 납세자인지 여부

- RAP에 참여하는 납세자는 과세당국에 수행한 거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하고 해결할 필요가 있는 납세협력상 이슈(issue)를 알려야 함
 - 국세청은 납세협력상 이슈에 대해서 호의적인 분위기에서 해결하여야 하고 납세자의 필요사항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납세협력 부담을 감소시키고 사전예규와 같은 법적인 확실성을 확보하는 제도에 관한 혜택을 제공함
- (자료 수집 및 정리: 김태훈 회계사)

6. 헝가리의 금융거래에 대한 세율 인상 발표⁷⁾

- 헝가리의 경제 장관은 헝가리의 GDP 대비 세부부족 비율이 EU의 제한 범위를 넘지 않도록 세입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세법개정안의 세부사항을 6월 17일 발표함
- 해당 세법개정안은 여당인 'Fidesz party'에서(헝가리 의회의 2/3를 차지하는 당)지지하고 있어 통과가 거의 확실시되며 의회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2013년 8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됨

⁶⁾ section 27, paragraph 10, of decree-law no. 185/2008, as converted by section 1 of law no. 2/2009

⁷⁾ [http://services.taxanalysts.com/taxbase/tnipdf2013.nsf/PDFs/11700624.pdf/\\$file/11700624.pdf](http://services.taxanalysts.com/taxbase/tnipdf2013.nsf/PDFs/11700624.pdf/$file/11700624.pdf)

- 헝가리는 EU 회원국으로서 EU 회원국은 GDP 대비 세수부족률 제한 범위를 3%로 하고 있으나 2014년 예상 세수부족률이 3.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입을 증가시키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것임

과 조세정보를 교환할 수 있었음

- 이에 대해 OECD는 홍콩에 조세정보교환협정(TIEAs)을 위한 법적 체계 마련을 권고하였고, 홍콩은 이번 법률로 그 근거를 규정하게 됨

〈자료 수집 및 정리: 마정화 연구원〉

- 6월 17일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2012년 1월에 도입되었던 금융거래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것으로써, 과세되는 거래는 자금 송금, 외화 환전, 모기지론 상환, 무인현금인출기에서의 현금인출을 포함하고 있음
 - 현재는 금융거래에 대하여 0.2%(현금인출의 경우 0.3%)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개정안은 현금인출의 경우 세율을 0.3%에서 0.6%로 인상, 자금 송금에는 0.2%에서 0.3%로의 세율 인상을 제안하고 있음
 - 해당 세금은 거래의 총액에 대해서 거래가 있을 때마다 부과되고 있음⁸⁾

- 금번 개정안은 개인의 이자소득에 대해서 현행 16%의 건강기여금(Healthcare contribution)을 22%로 인상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홍성열 회계사〉

7. 홍콩의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와 조세정보교환협정(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s: TIEAs)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이 7월 10일 홍콩 입법회를 통과함
 - 종전 규정에서는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만이 홍콩

8) <http://gss.unicreditgroup.eu/markets/hungary/newstlashes/financial-transaction-tax-update>



주요국의 재정동향



EU

- 크로아티아 EU 가입(2013. 7. 1.)¹⁾
 - 7월 1일 크로아티아 EU 가입, EU 회원국 총 28개국으로 확대
 - EU 가입으로 인해 크로아티아 중앙은행(Hrvatska narodna banka) 또한 유럽중앙은행제도(ESCB)의 회원 기관이 되었으며, 유로화 사용은 차후 결정될 예정
- EU 재무장관회의, 2013 EU 수정예산안 채택, 라트비아 유로존 가입, 그루지아 금융지원(MFA) 등 논의(2013. 7. 9.)²⁾
 - (2013 EU 수정예산안 채택) 이사회는 73억유로를 추가 승인, 2013 두 번째 수정예산안 채택
 - 이는 지난 5월 14일 재무장관회의³⁾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청년들을 위한 경제성장 지원, 고용창출, 실업 대책 등에 주로 사용될 예정
 - (라트비아 유로존 가입) 2014년 1월 1일 라트비아 유로존 가입 결정 승인
 - 라트비아의 유로존 가입으로 유로존 국가는 18개

- 국으로 확대될 예정
- (그루지아 거시금융지원(MFA)⁴⁾) 그루지아에 최대 4,600만유로 지원 승인
 - 국가경제 안정화 지원 및 국제수지 개선을 목적으로 거시금융 지원을 승인

- EU 집행위, 2013 Report on Public finances in EMU 발표(2013. 7. 19.)⁵⁾
 - (Part I) 최근 상황 및 전망
 - EU 집행위는 2012년 이후의 재정건전화 조치가 2013년까지 유지될 것이며, 2014년에는 건축 속도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
 - ☞ EU 전체의 2013년 GDP 대비 재정적자는 3.4%, 2014년은 3.2%, 유로존의 GDP 대비 재정적자 또한 3% 이하로 감소할 전망
 - 반면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14년까지 EU 전체는 96%, 유로존은 90.6%로 계속해서 상승할 전망
 - 2012년 총 16개국 GDP 대비 재정적자 3%를 초과하여 과다적자시정절차(EDP)의 대상이 되었으며, 2013년 봄 전망에 의해 5개국⁶⁾이 종료 대상이 되었고 7개국⁷⁾의 만기가 연장
 - 2013년 새로운 안정화 계획 및 수렴 계획(SCP: Stability and Convergence Programmes)에 의하면, 2010-2012년 건전화 조치 조기 집행의 결

1) ECB, "Croatia joins the European Union," 2013.7.1.

2)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3) 『KIPF 재정동향』 2013년 6월 제1호 참조

4) MFA: Macro-Financial Assistance. EU주변국을 위한 예외적 EU위기대응기구조로 IMF 자금 지원 경제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 그루지아 거시금융 지원에 관한 내용은 2011년 1월에 처음 제안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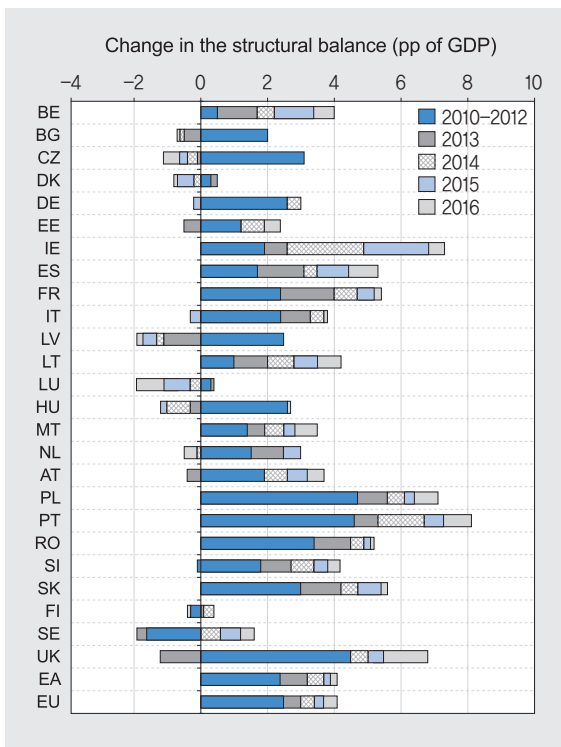
5) EU 집행위, "2013 Report on Public finances in EMU," 2013.7.19.

6)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헝가리

7) 키프로스, 프랑스,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포르투갈

과로 현저히 재정적자가 감소하여 재정건전화는 계속될 것이나 속도가 늦춰질 전망

[그림 1] 2013 인정수렴프로그램(2013 SCPs) 시행에 따른 EU 국가들의 구조적 재정수지의 변화



주: This graph presents the 2012-2010 structural effort achieved by Member States based on the 2010 estimate of the structural balance by the Commission 2013 Spring forecast and the (recalculated) 2012 estimate presented by the Member States in 2013 SCPs. Starting from 2012, structural efforts are directly reported from the SCPs, using the commonly agreed methodology to recalculate structural balances.

• (Part II) EU의 경제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최근 과정에 대한 논의

- 2010년 시행된 'Six Pack'은 EU 예산 체계를 강화시키는 개혁이었으나 유로존 국가 간의 보다 강력한 통합 필요성이 점차 명확해짐에 따라, 유럽

경제통화동맹(EMU)의 재정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한 Two Pack을 2013년 5월 말 시행

- Two Pack은 유로존 국가에서만 적용되는 두 가지 규정으로 구성되며, 유로존 국가 간 예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것과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 증대를 목표로 함

1. 유로존 국가 전체의 기존 재정정책 입안 체계 개선을 위한 유로존 국가 간 예산정책 조정과 과다재정적자의 엄격한 감시 및 국가 재정체계 강화와 관련된 새로운 조항

2.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유로존 국가(EU 체제에서 받는 재정적 원조 포함)에서 적용되는 경제 재정 감독의 통합 및 간소화 관련 규정

• (Part III) 재량적재정노력(DFE: the Discretionary Fiscal Effort)이라는 새로운 재정수입지표를 소개

- 기존 재정기조 측정지표로 사용하던 top-down 방식의 경기조정수지(CAB: Cyclically-adjusted balace) 및 이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bottom-up 방식의 측정 모두 정책기조 변화를 판단하는데 구조적 한계가 있음

- DFE는 세입측면에서는 top-down 방식과 세출측면에서는 bottom-up 방식을 혼합한 지표로, CAB를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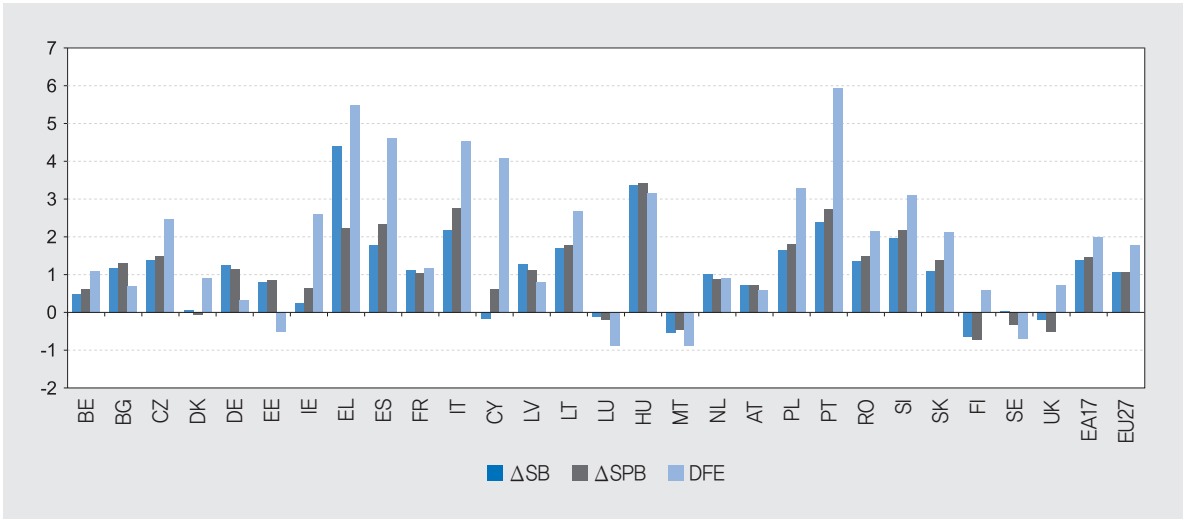
• (Part IV) 공공 의료 지출: 중요성 증가 및 성장을 억제하는 정책의 개혁에 관한 논의

- EU에서 GDP 대비 공공의료지출은 1980년대 5.7%에서 2010년 약 8%로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총정부지출 및 GDP 대비 공공의료지출(HCE: Health Care Expenditure)의 중요성 증가

- 의료비 지출의 장기적 변화 조사를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의료비지출 과거 트렌드를 검토한 계량 모델의 결과와 장기적 전망을 제시



[그림 2] 2012년 구조적재정수지(ΔSB), 구조적기초재정수지(ΔSPB), 재정적재정노력(DFE)에 따른 재정기조 (% of GDP net of one-off)



자료: AMECO(Commission Spring 2013 forecast) and Commission Services calculations

- 2060년까지의 GDP 대비 의료비 지출 비율 전망 결과, 의료비 지출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인구변화가 아닌 의료서비스 제공과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상승이 비용을 증가 시킨다는 것
- 따라서 장기적인 의료시스템 안정을 위하여 회원국은 구조적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

■ EU 통계청, 2013년도 1분기 정부부채 발표(2013.7.22.)⁸⁾

- 유로존(EA17)과 EU 27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는 92.2%, 85.9%를 기록하여 전분기 대비 각각 1.6%p, 0.7%p 증가, 전년동기 대비 각각 4.0%p, 2.6%p 증가

- 전분기와 비교하였을 때, 21개국이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6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감소
- 2013년 1분기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는 그리스(160.5%), 이탈리아(130.3%), 포르투갈(127.2%), 아일랜드(125.1%)이며 낮은 나라는 에스토니아(10.0%), 불가리아(18.0%), 룩셈부르크(22.4%)
- 전분기에 비해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나라는 아일랜드(+7.7%p), 벨기에(+4.7%p), 스페인(+4.0%p)이며, 가장 많이 감소한 나라는 라트비아(-1.5%p), 덴마크(-0.8%p), 독일(-0.7%p)

8) Eurostat, "Euro area government debt up to 92.2% of GDP," 2013.7.22.

〈표 1〉 유로존(EA17) 및 EU 27개국의 2013년 1분기 정부부채

(단위: million euro, % of GDP)

	2012 Q1	2012 Q4	2013 Q1
EA17			
Government debt	8,344,353	8,600,626	8,750,131
	88.2	90.6	92.2
of which: Currency and deposits	236,156	243,139	243,186
	2.8	2.8	2.7
Securities other than shares	6,616,190	6,708,316	6,900,141
	78.3	76.3	77.1
Loans	1,492,007	1,649,170	1,606,805
	17.9	19.2	18.4
Memo: Intergovernmental lending in the context of the financial crisis	111,026	193,483	199,076
	1.2	2.0	2.1
EU27			
Government debt	10,607,211	11,010,515	11,111,990
	83.3	85.2	85.9
of which: Currency and deposits	413,363	418,487	410,164
	3.9	3.7	3.6
Securities other than shares	8,538,412	8,777,984	8,940,191
	79.7	78.3	79.0
Loans	1,655,437	1,814,045	1,761,635
	15.6	16.5	15.9
Memo: Intergovernmental lending in the context of the financial crisis	112,477	196,454	202,916
	0.9	1.5	1.6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정은 연구원)



- IMF 이사회는 그리스의 국제 구제금융 프로그램 이행에 대한 네 차례의 검토 결과 17억 2천만유로의 차기 구제금융 집행을 승인(2013.7.29.)
- 이번 구제금융 집행 승인에 따라 2012년 3월에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계획*을 실행한 이후로 그리스

에 지원한 자금은 82억 4천만유로로 증가

*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프로그램으로 IMF는 향후 4년에 걸쳐 280억유로를 그리스에 지원하기로 함 (2012.3.15.)

(자료 수집 및 정리: 강민채 연구원)



- OECD, *The Employment Outlook 2013* 발표 (2013.7.16.)⁹⁾
 - *The Employment Outlook 2013* 보고서에서 2014년까지 높은 실업률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OECD 34개국의 전체 실업자 수는 4,800만명 정도이며, OECD 평균 실업률은 2014년 말까지 7.8% 수준일 것으로 예상
 - 국가별 실업률은 미국의 경우 2013년 5월 7.6%에서 2014년 말까지 7% 미만, 독일의 경우 5.3%에서 5% 이하, 유럽국가의 실업률은 현재와 비슷하거나 높아질 전망
 - 한국은 2013년 5월 3.1%로 OECD 평균 실업률 8%에 비해 매우 양호한 수준이며 2014년 말까지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
 - OECD는 노동시장의 소득불평등 문제를 지적하며,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
 - 대부분 OECD 국가의 저숙련·저소득 계층의 일자리와 소득 감소, 임시직이나 청년계층의 실업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적절한 소득지원, 고용증진을 위한 정책을 권고
 - 한국은 고용률 제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
- 위기 이후, OECD 국가의 전반적인 노동시장 프로

9) http://www.oecd-ilibrary.org/employment/oecd-employment-outlook-2013_emp_outlook-2013-en



그램에 대한 공공지출이 감소했다고 지적하며 공공 지출의 증대의 필요성을 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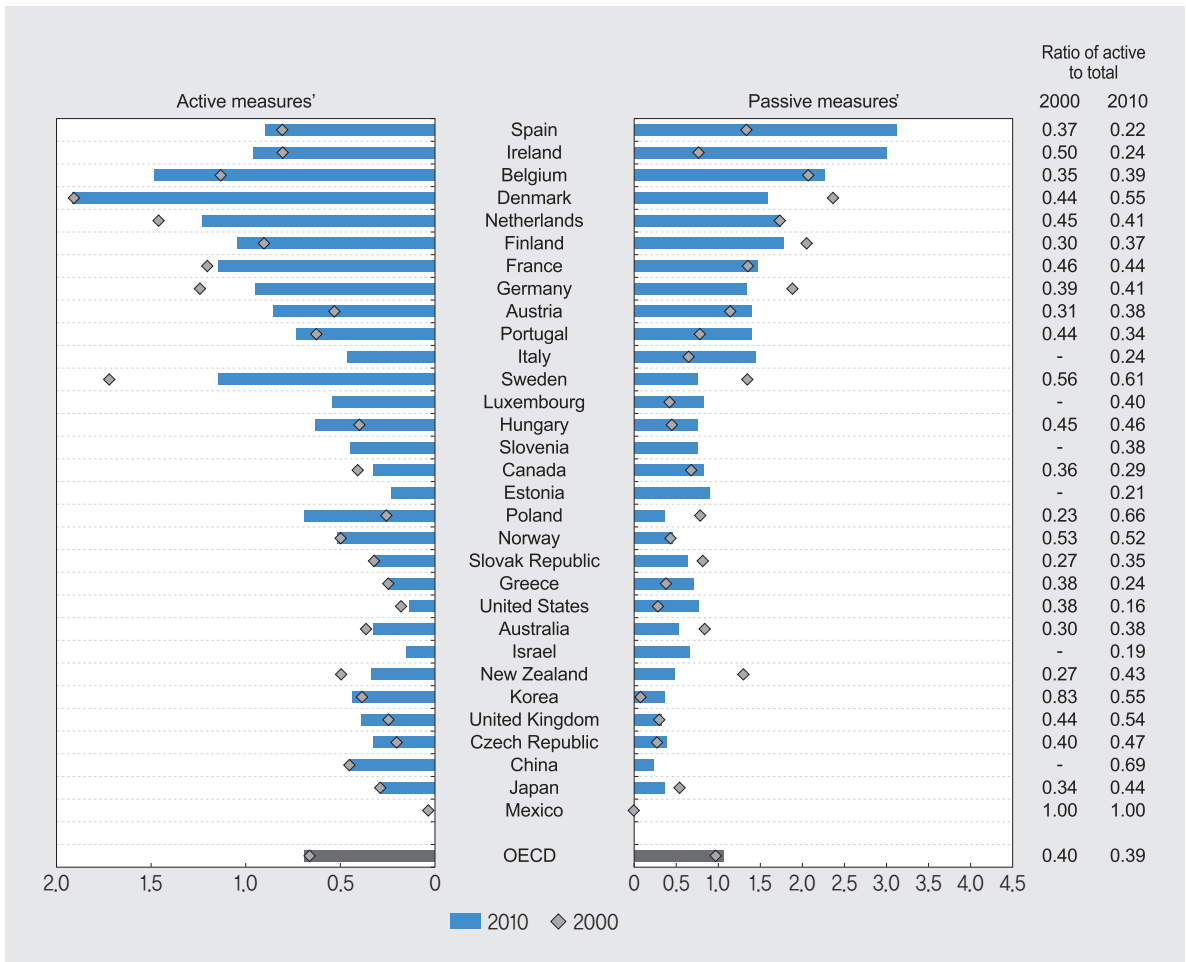
- 2000년과 2011년의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대한 공공지출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감소하였고, 적극적인 노동시장 프로그램보다 수동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비중이 커졌음

- OECD 국가들의 구직자 1인에 대한 평균 공공지출은 경제위기 이전에 비해 20%가량 감소하였고, 이에 대해 일정 수준의 공공지출을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

[그림 3] OECD 국가의 적극적·수동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대한 공공지출 비교

(단위: GDP 대비 공공지출 %)



주: 1.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미국의 경우 회계연도 2010~2011년 반영

2. 칠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한국, 슬로바키아를 제외한 국가들은 적극적 및 수동적 프로그램에 비가중 평균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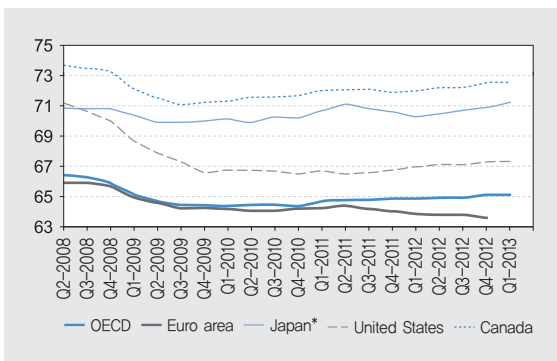
3. 적극적 프로그램은 직업훈련, 전직, 재취업, 고용유지 지원, 재활지원, 직접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 등이며, 수동적 프로그램은 실업급여, 부분실업급여, 조기은퇴 지원 등이 해당

자료: OECD/Eurostat Labour Market Programme Database

- OECD, 2013년 1분기 고용률 발표(2013.7.16.)¹⁰⁾
 - OECD 국가의 2013년 1분기 고용률은 65.1%로 2012년 4분기 고용률과 동일
 - 전년 동기 대비 0.2%p 높고 2008년 2분기(위기 이전) 대비 1.4%p 낮은 수준
 - OECD 국가의 연령그룹별 고용률 격차는 지속되고 있지만, 주요 국가의 고용률은 대체적으로 안정적임
 - 2013년 1분기 주요국의 고용률은 미국 67.3%, 캐나다 72.5%, 독일 73.1%로 대부분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탈리아(56.5 → 56.1%), 영국(70.6 → 70.4%), 한국(64.2 → 64.1%) 등의 경우 직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
 - 연령그룹별 고용률 격차는 점점 벌어져 청년(15~24세) 고용률은 39.1%로 낮아졌고, 노년(55~64세) 고용률은 56.1%로 상승하여 직전 분기 대비 0.1%p 높아짐

[그림 4] OECD 국가의 분기별 고용률

(단위: %)



주: 일본의 2011년 1분기 및 3분기 통계 없음, 계절 조정함
 자료: OECD, Quarterly Employment Situation

(자료 수집 및 정리: 박신아 연구원)

호주

1. 예산·결산 등

- 호주 재무부 및 예산부, 경제성명(Economic Statement 2013) 발표(2013.8.2.)¹¹⁾
 - 2013-14년도 재정적자 예상액은 301억호주달러로 지난 전망에 비해 급증
 - 5월 예산안의 전망치(180억호주달러)에 비해 약 120억호주달러 증가
 - 경상성장률 하락과 임금성장률 약세로 인해 향후 4년간 333억호주달러의 세수 부족 예상
 - 2016-17 회계연도 재정흑자 달성을 목표로 세수 증대 방안을 도입
 - 예금자 보호세 신설: 2016년부터 25만호주달러 이상의 예금 계좌에 대해 과세, 초기 18개월간 7억 3천만호주달러의 세수 증대 효과 기대
 - 담배세 대폭 인상: 향후 4년간 현행 세율의 60% 인상

<표 2> 예산총량(Budget aggregates) 전망

(단위: 십억호주달러, %)

	추정(Estimates)		예측(Projections)	
	2013-14	2014-15	2015-16	2016-17
예산수지 (Underlying cash balance) ¹⁾	-30.1	-24.0	-4.7	4.0
GDP 대비 비율	-1.9	-1.5	-0.3	0.2
재정수지(Fiscal balance)	-25.6	-22.2	1.8	7.6
GDP 대비 비율	-1.6	-1.4	0.1	0.4

주: 1) Future Fund 예상 수익금 제외
 자료: Economic Statement 2013, 2013.8.

10) <http://www.oecd.org/std/labour-stats/employmentsituationfirstquarter2013oecd.htm>

11) <http://www.treasurer.gov.au/>



■ 선거전재정보고서(Pre-election Economic and Fiscal Outlook:PEFO) 발표(2013.8.13.)¹²⁾

- 2013-14년 경제성장률은 5월 예산안 전망치(2.75%)를 하향 조정하여 2.5%로 전망, 실업률 전망치는 5.75%에서 6.25%로 수정

〈표 3〉 주요 경제 변수

(단위: %)

	전망(Forecasts)		예측(Projections)	
	2013-14	2014-15	2015-16	2016-17
경제성장률 ¹⁾	2.5	3	3	3
고용률	1	1.5	1.5	1.5
실업률	6.25	6.25	5	5
소비자물가지수(CPI)	2.5	2	2.5	2.5
경상성장률 ¹⁾	3.75	4.5	5.25	5.25

주: 1) 경제성장률과 경상성장률은 연평균 증가율
 자료: PEFO 2013, 2013.8.

- 경제성명(Economic Statement 2013)상 301억호주달러 재정적자 재확인
 - 기존 2016-17년 흑자 달성 목표를 유지하나, 예산수지는 경제성명의 전망치(40억호주달러)보다 상향 조정된 42억호주달러

〈표 4〉 예산총량(Budget aggregates) 전망

(단위: 십억호주달러, %)

	추정(Estimates)		예측(Projections)	
	2013-14	2014-15	2015-16	2016-17
예산수지(Underlying cash balance) ¹⁾	-30.1	-24.0	-4.7	4.2
GDP 대비 비율	-1.9	-1.5	-0.3	0.2
재정수지(Fiscal balance)	-25.5	-22.1	1.8	7.8
GDP 대비 비율	-1.6	-1.3	0.1	0.4

주: 1) Future Fund 예상 수익금 제외
 자료: PEFO 2013, 2013.8

- 연립야당 대표 토니 애벗(Tony Abbott)은 PEFO를 바탕으로 '공약 소요 비용'을 추계할 것임을 표명¹³⁾

2. 기타

- 호주중앙은행, 분기 통화정책 성명(Statement on Monetary Policy) 발표(2013.8.8.)¹⁴⁾
 - 2013년 12월까지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25%,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은 2%로 전망
 - 광산업의 부진이 예상됨에 따라 지난 5월 발표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5%)를 2.25%로 하향 조정
 - 호주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이 광산 투자에서 수출 및 내수로 점차 전환될 것으로 전망

12) <http://www.treasurer.gov.au/>

13) 「예산공정법(The charter of Budget Honesty Act 1998)」상 「경제 · 재정전망 보고서」는 선거 공고 후 10일 이내 발간하며, '공약 소요'의 경우 선거 6일전 까지 추계를 요청한 공약을 대상으로 공약별로 선거 전날까지 가능한 빨리 발표

14) <http://www.rba.gov.au/>

〈표 5〉 호주중앙은행 경제 전망

(단위: %)

	Year-ended					
	2013.6	2013.12	2014.6	2014.12	2015.6	2015.12
GDP 성장률	2.5	2.25	2.5	2.5-3.5	2.75-3.75	2.75-4.25
CPI 인플레이션	2.4	2	2.5	2-3	2-3	1.75-2.75
근원 인플레이션	2.5	2.25	2.25	2-3	2-3	2-3
	Year-average					
	2012/13	2013	2013/14	2014	2014/15	2015
GDP 성장률	2.75	2.25	2.5	2.5-3.25	2.5-3.5	2.75-3.75

자료: Statement on Monetary Policy, 2013.8.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선미 연구원)

캐나다

1. 예산·결산 등

- 캐나다 재무부, 『정부 대출 프로그램 평가(Evaluation of the Crown Borrowing Program: CBP)』 보고서 발표 (2013.8.1.)¹⁵⁾
 - 재무부는 캐나다 주요 대출 기관인 캐나다 모기지 주택공사(CMFC), 캐나다 사업개발은행(BDC), 농업 신용공사(FCC)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 예산안부터 정부대출프로그램(CBP) 도입
 - 정부대출프로그램(CBP)은 주요 공기업이 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연방 정부로부터 직접 차입(direct lending)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보고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시행기간을 평가한 결과, 정부대출프로그램(CBP)으로 자금조달의

효율성 및 유동성을 높임과 동시에 캐나다 국제시장의 기능이 강화되었다고 평가

- 다음 6가지의 평가 이슈(Evaluation Issues) 제시
 - ☞ 연방정부 역할 및 책임과의 일치(Alignment of the CBP with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federal government)
 - ☞ 연방정부 우선순위의 일치(Alignment of the CBP with the priorities of the federal government)
 - ☞ 이행 방식 (Implementation method)
 - ☞ 목표 및 예상 결과 달성(Achievement of objectives and expected outcomes)
 - ☞ 경제적 효율성의 입증과 개선 가능성 (Demonstration of economic efficiency and opportunities for improvement)

(자료 수집 및 정리: 황보경 연구원)

프랑스

1. 기타

- 고등교육연구부, 국가장학금제도 정비 및 예산 추가 배정(2013.7.16.)¹⁶⁾
 - 프랑스 고등교육연구부 장관 주느비에브 피오라조(Geneviève Fioraso)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장학금 혜택을 제공하기위해 국가장학금 예산을 2013년 1억 1,800만유로, 2014년은 전년 대비 약 두배 증액된 2억유로 계획
 - 장학금제도 개혁으로 2013년 9월 1일부터 9만 2

15) <http://www.fin.gc.ca/treas/evaluations/cbp-pese-eng.asp>

16) 자료: 정부포탈, <http://www.gouvernement.fr>



천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 부모소득 연간 7,540유로 미만인 취약계층 가정의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연간 4,697유로 → 5,500유로로 증가
- 부모소득 연간 33,100유로 미만인 중산층 가정의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연간 1,000유로 제공하는 제도 신설

■ 애로(Ayrault)총리, 공공정책의 현대화(Modernisation de l'action publique) 조치 발표(2013.7.17.)¹⁷⁾

- 공공정책의 현대화(Modernization of public policy)는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국가개발, 재정수입의 효율적인 사용에 부합되게 정책이 집행되고 있는지 평가하여 재정적자를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
- 2014년 기업지원정책 정비로 15억유로, 가족정책 개편으로 10억유로, 고용지원정책 정비로 5억유로 절감을 통해 총 30억유로의 재정적자 감소 계획
- 200개의 공공정책 및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 채택 (ex. 68개 자문위원회 폐지)

■ 부동산 양도소득세 개정(2013.7.22.)¹⁸⁾

- 부동산 양도소득세 개정안은 부동산시장 활성화가 목적
 - 1가구 2주택자가 두 번째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기 위한 보유기간이 30년에서 22년으로 감소됨
 -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8월 31일 사이에 매각된 부동산에 대해 25%의 추가 특별소득공제 적용

• 이 개정안은 9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

■ IMF, 『2013년 프랑스 연례 평가보고서(France: 2013 Article IV Consultation)』 발표(2013.8.5.)¹⁹⁾

- (경제전망) 실질 GDP 성장률은 2013년 재정건전화의 영향으로 -0.2%로 감소, 2014년은 대외환경의 개선과 확장적 통화정책의 영향으로 0.8%로 증가할 전망
- (재정전망) 재정적자는 2013년 전년 대비 0.9%p 감소한 GDP 대비 3.9%, 2014년 GDP 대비 3.5%로 전망되며, 이는 유럽연합위원회가 GDP 대비 3%의 재정적자 감축시한을 2015년으로 2년 연장한 것과 일관
 - 2013년 재정건전화 속도는 가속화되어 GDP 대비 1.8%의 구조적조정이 시행되었으며 구조적 재정수지는 GDP 대비 1.7%로 감소할 전망
- (부채전망) 공공부채는 2013년 GDP 대비 93.5% → 2014년 GDP 대비 95%로 상승하지만 2014년을 정점으로 하향 추세를 지속하여 2018년 GDP 대비 88.7%에 이를 전망
- (정책적 제언)
 -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재정건전화 속도를 다소 완화할 것을 권고
 - 세율이 이미 고수준이므로 세수증대보다 지출감축에 집중하여 균형잡힌 재정건전화 조치를 시행해야 함을 권고
 - 청년층 고용상황 개선을 위해 한층 강화된 노동시장 개혁 및 노동시장 참여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17) 자료: 정부포탈, <http://www.gouvernement.fr>

18) 자료: 재무부, <http://www.economie.gouv.fr>

19) 자료: IMF, <http://www.imf.org/external/np/sec/pr/2013/pr13295.htm>

연금개혁 촉구

〈표 6〉 프랑스 경제 및 재정 전망

(단위: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실질 GDP 성장률	0.0	-0.2	0.8	1.5	1.7	1.8	1.9
실업률	10.2	11.2	11.6	11.4	10.9	10.6	10.4
소비자물가지수 ¹⁾	2.0	1.4	1.5	1.5	1.6	1.7	1.8
일반정부 재정수지 ²⁾ (general government balance)	-4.8	-3.9	-3.5	-2.8	-1.9	-1.0	-0.8
구조적 재정수지 ²⁾ (Structural balance)	-3.5	-1.7	-1.2	-0.8	-0.4	0.0	0.0
공공부채 ²⁾ (Public debt, Maastricht definition)	90.2	93.5	95.0	94.9	93.8	91.4	88.7

주: 1) Harmonised consumer price index

2) GDP 대비 %

자료: IMF, France: 2013 Article IV Consultation

(자료 수집 및 정리: 하에스더 연구원)

• (신규차입) 2013년 6월 기준, 채무 상환액은 약 14억 유로임

- 홍수 복구를 위한 추경편성으로 인해 2013년 기준 신규 차입은 당초 계획한 171억유로에서 251억유로로 증가할 전망

* 다만 이는 「부채제한법」이 정한 최고 한도에는 못 미치는 수준임

〈표 7〉 FY2013 2분기 예산 집행 결과

(단위: 백만유로)

	2013(추정) ¹⁾	2013(1-6월)	2012(1-6월)
재정지출	310,000	150,687	148,013
재정수입	284,590	132,239	129,741
조세수입	260,611	120,691	119,123
재정수지	-17,410	-18,410	-18,231
신규차입 ²⁾	25,100	-1,367	16,515

주: 1) 2013년 추경예산 포함

2) (-)는 채무상환, (+)는 차입을 의미함

자료: 독일 재무부, Federal budget and fiscal policy key figures, June 2013.

독일

1. 예산·결산 등

■ 독일 재무부, FY2013 2분기 예산집행 결과 발표 (2013.7.22.)²⁰⁾

- (재정수지) 2013년 6월 연방정부 재정수지는 184억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재정적자의 폭이 증가함
 - (재정지출) 2013년 2분기까지 1,507억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7억유로(1.8%) 증가
 - (재정수입) 2013년 2분기까지 1,322억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5억유로 (1.9%) 증가

2. 기타

■ IMF, 『독일 보고서(2013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Germany)』 발표(2013.8.6.)²¹⁾

- (평가) 적절한 재정기조, 건전한 공공부문 재무지표와 금융시스템이 독일의 안정적 경제상황을 이끌었다고 평가됨
 - 그러나 불확실성은 투자와 수출에 영향을 주고 있음
- (경제 전망) 올해 독일의 GDP 성장률은 0.3%, 내년은 1.3%로 예상됨
 - 소비는 계속 확대되고 유로지역 수출도 점차 회복

20)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Monatsberichte/2013/07/monatsbericht-07-2013.html>

21) http://www.bundesbank.de/Redaktion/EN/Kurzmeldungen/Current_issues/2013_08_07_imf_germany_outlook.html



될 전망

- 특히 올해와 내년은 다른 유로국가의 회복 및 불확실성 해소에 의해 좌우될 전망
- 정책 권고
 - (재정정책) 다소 완화된 재정기조 전망은 적합한 것으로 보이며 재정건전화에 대한 과도한 달성은 낮은 성장과 불확실성하에서는 지양되어야 함
 - (금융개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하방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금융 개혁 모델은 국내와 유로 지역 수준에서 계속되어야 함
 - (구조 개혁)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 보육 및 교육에 대한 개선과 고속권 근로자의 이민 촉진 등을 통해 고용률을 높이고, 벤처 캐피탈 기금과 같은 자금 조달 확대가 필요

〈표 8〉 IMF 전망-독일 주요 지표(2009~2014)

(단위: %, GDP 대비 %)

	2009	2010	2011	2012	2013 ¹⁾	2014 ¹⁾
실질 GDP	-5.1	4.0	3.1	0.9	0.3	1.3
실업률	7.7	7.1	6.0	5.5	5.6	5.5
GDP 디플레이터	1.1	1.1	0.7	1.1	1.0	1.0
재정수지	-3.1	-4.1	-0.8	0.1	-0.4	-0.1
구조적 수지	-1.1	-2.3	-0.9	0.2	-0.1	0.1
정부채무	74.5	82.4	80.4	81.9	81.3	79.3

주: 1) IMF 전망치

자료: IMF, IMF Executive Board Concludes 2013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Germany, August 2013.

- 홍수구호기금을 통한 재정지원을 위한 관리협약 체결

(2013.8.2.)²²⁾

- Werner Gatzert 연방 재무부 장관, Klaus-Dieter Fritsche 연방 내무부 장관, 주 정부 장관들이 홍수 구호 재정지원을 위한 관리협약에 서명함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긴급구호자금 외에 상당한 수준의 추가 지원이 8월 중 이루어질 전망
- (경과) 연방정부와 주정부 대표는 홍수 구호를 위한 추가 재건자금 지원 방법을 결정(2013.7.25.)²³⁾
- (내용) 홍수로 인한 개별 손실의 80%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다른 구호자금과의 중복 구제는 불가
- (규모) 연방 의회의 특별 회의에서 80억유로 규모의 홍수구호펀드 지급에 대한 허가가 이루어질 예정(8월 16일 예정)
- (기금 조성)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펀드조성 비율은 50:50임
- * 단 연방정부 관할의 인프라 재건은 연방정부가 단독 부담함
- (후속 조치) 8월 14일 연방정부는 관련 조례를 제정할 예정

(자료 수집 및 정리: 한혜란 연구원)

 그리스

1. 기타

- 그리스 경제산업연구소(IOBE)는 『2013년 경제전망 보고서』 발간(2013.7.9.)²⁴⁾
- 그리스 경제는 6년 연속 침체를 겪을 것이며 2013년

22)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Standardartikel/Themen/Oeffentliche_Finzen/Foederale_Finanzbeziehungen/2013-08-02-Flutopfer-Verwaltungsvereinb.html

23)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13/07/2013-07-25-PM159.html>

24) http://www.iobe.gr/index.asp?a_id=922

국내총생산(GDP)은 4.2%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이는 2013년 1분기 GDP는 -5.6%, 2012년 1분기 -6.7%, 2012년 -6.4%에 비해서는 개선된 수준임
 • 실업률은 전년도 1분기 22.6%에서 27.4%로 상승하고 임금과 연금 삭감으로 내수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

■ EC, 그리스 두 번째 경제조정프로그램 보고서 발간 (2013.7.25.)²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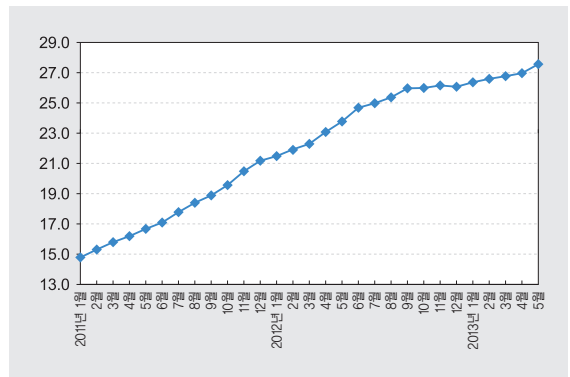
- 재정건전화 및 은행 재자본화 분야 등은 전반적으로 지원조건을 충족하였으나, 공공부문 개혁(민영화 포함), 기업환경 개선, 에너지 및 사법제도 등의 분야에서의 개혁조치는 여전히 미진
- 거시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혼재
 - 2013년도에도 마이너스 경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금융시장에서는 신뢰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2014년 초부터는 투자 및 수출 증가로 인해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Troika 실사단은 그리스 정부가 2차 구제금융 2013년도 3분기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을 전반적으로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3분기 지원금 집행을 건의²⁶⁾

■ 통계청, 5월 실업률 27.6%로 사상 최고치 경신 발표 (2013.8.8.)²⁷⁾

- 2013년 5월 실업률은 27.6%로 전년 5월 23.8%보다

높은 수치이며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그림 5] 그리스 월별 실업률



(자료 수집 및 정리: 최경진 연구원)

이탈리아

1. 예산·결산 등

- 『2012년 이탈리아 결산보고서(Rendiconto Generale dello Stato)』 발표(2013.6.27.)²⁸⁾
 - 2012년 재정수지는 -476억유로(2011년, -600억유로)로 개선되었으나, 2012년 공공부채는 GDP 대비 127.0%(2011년 GDP 대비 120.8%)로 증가
 - 명목 GDP 성장과 평균 부채비용 차이에 기인
 - GDP 대비 재정수지 규모는 2013년 -2.9%, 2014년 -2.5%, GDP 대비 공공부채는 2013년 131.4%, 2014년 132.2%로 전망
 - 자산은 9,797억유로(금융성 자산 6,941억유로, 비금융성 자산 2,856억유로)

25) 자료: The Second Economic Adjustment Programme for Greece Third Review, 주그리스 대한민국 대사관

26) IMF의 승인내역은 2013년 8월 제1호 재정동향 참고

27) 자료: 그리스 통계청 <http://www.statistics.gr/>

28) 이탈리아 회계감사원(corte dei conti) 참고: http://www.corteconti.it/controllo/finanza_pubblica/bilanci_manovra_leggi/rendiconto_generale_2012/



용성 자산 2,856억유로)이며, 부채는 2조 5,135억유로 규모
 - 2012년 12월 31일 기준 부채 잔고는 1조 5,338억 유로로 지난해 1조 5,232억유로보다 증가

〈표 9〉 2012년 공공재정 결산

(단위: 백만유로, GDP 대비 %)

	2009	2010	2011	2012
Spese (지출)	798,436	792,884	796,080	801,082
	52.5	51.1	50.4	51.2
Entrate (수입)	714,833	723,617	736,064	853,449
	47.0	46.6	46.6	48.1
Indebitamento netto (재정수지)	-83,603	-69,267	-60,016	-47,633
	-5.5	-4.5	-3.8	-3.0

자료: Relazione sul Rendiconto generale dello Stato per l'esercizio finanziario 2012 - Volume I: Rendiconto e quadro di finanza pubblica

〈표 10〉 2012년 자산운영 결산

(단위: 유로)

구분	내역	금액
ATTIVITA' (자산)		979,716,702,386
	Attività finanziarie (금융성자산)	694,086,256,855
	Attività non finanziarie (비금융성 자산)	285,630,445,531
PASSIVITA' (부채)	Passività finanziarie (재정부채)	2,513,467,357,328
	Eccedenza passiva al 31 dicembre 2012 (2012년 12월 31일 기준 부채잔고)	1,533,750,654,942

자료: Relazione sul Rendiconto generale dello Stato per l'esercizio finanziario 2012 - Decisione sulla Relazione sul Rendiconto generale dello Stato

- 국가종합회계실(Ragioneria Generale Dello Stato: RGS), 2014년 예산 및 2014-2016 중기재정계획 편성지침 발표(2013.7.17.)²⁹⁾
 - 예산에 포함되는 자원의 타당성 분석과 평가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예산 제약과 공공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강조
 - (Two-pack) 차년도 예산안 계획을 10월 15일까지 유럽당국에 제출³⁰⁾

2. 기타

- 이탈리아 재무부, 『공공부채 상환 모니터링 보고서』 공표 개시(2013.7.22.)³¹⁾
 - 이탈리아 재무부는 2013년 법령 35조³²⁾ 실시에 따른 민간부문에 대한 『공공부채 상환 모니터링에 관한 보고서』 공표 개시
 - 보고서에는 회계감사원에 의해 작성된 2013년 법령 35조 실시 과정과 진행상황이 게재
 - 2013년 법령 35조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2013-14년에 걸쳐 총 400억 유로를 상환할 예정

29) 이탈리아 국가종합회계실, 참고: http://www.rgs.mef.gov.it/VERSIONE-I/CIRCOLARI/2013/Circolare_del_17_luglio_2013_n_32.html

30) 자세한 내용은 2013년 『재정동향』 5월 제2호 참조

31) 이탈리아 재무부, "Relazione sullo stato di attuazione del decreto legge n.35/2013 relativamente ai pagamenti dei debiti delle pubbliche amministrazioni: Situazione al 22 luglio 2013." 2013.7.22.

32) 『지방당국 공공요금 및 지방당국 재정균형을 위한 연체채무 상환에 관한 긴급 명령』, 2013.4.8. (『KIPF 재정동향』 2013년 4월 제2호 참조)

〈표 11〉 2013년 법령 35조에서 규정한 상환 계획 및 현황

(단위: 백만유로)

	2013	2014
1. 지방당국	6,800	1,800
2. 지방 및 자치주	10,200	14,000
3. 채무상환상태(2013.7.22. 현재)	500	0
4. 세금환급금 증가	2,500	4,000
합계	20,000	19,800

- 이탈리아 통계청 2013년 1분기 일반정부 비금융계정 발표(2013.7.4.)³³⁾
 - 이탈리아 2013년도 1분기 일반정부 비금융계정 발표, 전년 동기 대비 총지출은 1.3% 증가, 총수입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냄

〈표 12〉 2013년도 1분기 일반정부 비금융계정

(단위: 백만유로)

	2012 1Q	2013 1Q	전년동기대비(%)
지출			
순경상지출	156,310	159,135	1.8
총경상지출	175,231	176,912	1.0
총자본지출	8,864	9,541	7.6
총지출	184,095	186.456	1.3
수입			
총경상수입	158,412	158,406	0.0
총자본수입	632	669	5.9
총수입	159,044	159,075	0.0
대차대조표			
경상수지	-16,819	-18,506	
순차입	-25,051	-27,378	
GDP 대비 경상수지	-4.4	-5.0	
GDP 대비 순차입	-6.6	-7.3	

- RGS, 2013년 1차 경기회복조치 발표(2013.7.9.)³⁴⁾
 - 국내 수요 활성화를 위해 2013~2014년 동안 400억 유로의 유동성 제공
 - 이외에도 가계와 고용에 관한 소득 지원, 국가 기술 개발을 통한 신재생 에너지원의 개발 및 에너지 효율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 혜택 등 제공
- 이탈리아 통계청, 2013년 2분기 실질 GDP 잠정치 발표(2013.8.6.)³⁵⁾
 - 2013년 2분기 실질 GDP 잠정치는 전 분기 대비 0.2%,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
 - 농업, 산업 및 서비스의 세 가지 경제활동 주요 영역에서 하락세
 - 전 분기 대비 실질 GDP는 2011년 3분기 이래로 8분기 연속 하락세

〈표 13〉 이탈리아 분기별 실질 GDP

(단위: 백만유로, %)

	GDP(2005년기준)	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2011-I	356,569	0.2	1.3
2011-II	357,027	0.1	0.9
2011-III	356,636	-0.1	0.3
2011-IV	354,076	-0.7	-0.5
2012-I	350,374	-1.0	-1.7
2012-II	348,363	-0.6	-2.4
2012-III	347,407	-0.3	-2.6
2012-IV	344,130	-0.9	-2.8
2013-I	342,209	-0.6	-2.3
2013-II	341,374	-0.2	-2.0

자료: 이탈리아 통계청 보도자료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정은 연구원〉

33) 이탈리아 통계청, "Quarterly non-financial accounts for General Government"

34) 이탈리아 국가종합회계실, "I PRIMI PROVVEDIMENTI DEL 2013 PER IL RILANCIO DELL'ECONOMIA"

35) 이탈리아 통계청(<http://www.istat.it/it/archivio/97261>)



● 일본

1. 예산 · 결산 등

- FY2013 예산집행조사 결과 발표(2013.7.26.)³⁶⁾
 - 재무성은 FY2013 예산집행조사 75건 중 종료된 52건의 조사 결과를 발표, 남은 23건에 대해서는 추후 발표 예정
 - 조사 사안의 필요성, 효과, 효율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모든 사업 또는 일부 사업의 폐지 및 통합을 포함하여 향후 개선 사항 검토의 방향성을 지적함
 -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 대해 FY2014 개선 요구 및 향후 예산집행에 확실하게 반영하도록 요청
- FY2012 결산 개요 발표(2013.7.31.)
 - FY2012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07조 7,620억엔, 세출결산 총액은 97조 871억엔 규모
 - FY2012 신규 발생 잉여금은 2조 8,434억엔(세입 증감액은 -517억엔, 세출 불용액 2조 8,951억엔)이며 「재정법」 제6조의 순 잉여금은 1조 6,892억엔 수준

〈표 14〉 FY2012 일반회계 결산개요(잉여금)

(단위: 억엔, 단위 미만 버림)

예산(추경 후)		결산	
세입	세출	세입	세출
	전년도에서의 이월액 70,568		내년도 이월액 76,111 FY2011까지 발생한 잉여금 사용잔액 2,202
전년도잉여금 19,870		전년도잉여금 92,641 (이월재원포함)	불용액 28,951 세입증감 -517
공채금수입 520,491	세출예산액	공채금수입 500,491	지출공제세출액
[건설공채] 114,290	1,005,366	[건설공채] 114,289	970,871
[특례공채] 380,360	주요 내역	[특례공채] 360,359	주요 내역
	• 사회보장관계비 294,502		• 사회보장관계비 291,975
[연금공채] 25,841	• 문교 및 과학진흥비 64,157	[연금공채] 25,841	• 문교 및 과학진흥비 59,607
세외수입 38,934	• 국채비 215,452	세외수입 45,173	• 국채비 210,106
	• 지방교부세교부금등 168,846		• 지방교부세교부금등 168,846
세수 426,070	• 방위관계 48,264	세수 439,314	• 방위관계비 47,615
	• 공공사업관계비 69,977		• 공공사업관계비 57,759
주요 내역	• 기타 144,164	주요 내역	• 기타 134,960
• 소득세 136,010		• 소득세 139,924	
• 소비세 103,160		• 소비세 103,504	
• 법인세 89,920		• 법인세 97,583	
[세입예산액] 1,005,366	[세출예산현액] 1,075,935 (전년도로부터 이월액을 차감하면 1,005,366)	[수납공제세입액] 1,077,620	[지출공제세출액] 970,871 (재정법제41조 잉여금을 더하면 1,077,620)

자료: 재무성, 「平成24年度一般會計決算概要」, 2013.7.31.

36) 재무성, 「平成25年度予算執行調査の調査結果の概要」

〈표 15〉 FY2012 일반회계 결산개요 내역

(단위: 억엔)

구분	금액	참고
1. 세입결산 총액(수납공제세입액)	1,077,620	
2. 세출결산 총액(지출공제세출액)	970,871	
3. 재정법 제 41조 ³⁷⁾ 의 잉여금	106,748	(1-2)
4. FY2011까지 발생한 잉여금 사용 잔액	2,202	
5. 이월예산재원	76,111	
6. 신규발생잉여금	28,434	(3-4-5)
7. 공제액(특정 재원 등)	11,541	
8. 「재정법」 제 6조 ³⁸⁾ 의 순잉여금 ³⁹⁾	16,892	(6-7)

주: 1) 매 회계연도에서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그 익년도 세입에 이월시키는 것으로 함
 2) 각 회계연도에서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잉여금 가운데 1/2을 웃도는 금액은 다른 법률에 의한 것 외에, 이를 잉여금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다음 회계연도까지 공채 또는 차입금 상환 재원에 충당해야만 함
 3) 「재정법」 제 6조의 순잉여금은 부흥분(FY2011 2차 추경에 따른 잉여금 3,490 억엔)을 포함

■ 재무성, FY2014 예산 개산 요구 기준(예산편성지침) 및 중기재정계획안 각의 승인(2013.8.8.)³⁷⁾

• (개산 요구)³⁸⁾

- 연금 및 의료 등에 관한 경비에 대해서는 고령화 등에 따른 자연증가분 9,900억엔을 가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요구
- 동일본 대지진 부흥 특별회계 전입은 기본 방침에 따라 요구, 기타 경비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액의 90% 범위 내에서 요구
- 예산의 중점화를 추진하기 위해 긴급경제 대책(2013년 1월) 및 방재 대책, 성장에 따른 부의 창출, 생활의 안심·지역 활성화 외에도 각 부처는

새로운 일부를 위한 우선 과제 추진 틀을 마련하여 30% 범위 내에서 요구

- (예산편성지침) 공공사업비 등 약 10% 축소, 성장전략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 특별한도 3조엔 설정. 단, 추후 1조엔 규모로 조정 예정
- (중기재정계획) 기초재정수지적자 34조엔을 2015년 약 17.1조엔으로 감소시켜 2020년도까지 재정적자 해소를 도모, 2014년과 2015년 국채발행도 전년 실적을 상회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
 - 현재 명목 GDP 3% 성장 및 소비세율 인상 시행 후에도 FY2020에는 GDP 대비 2%대의 기초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2. 기타

-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총 121석 중 자민당 65석, 공명당 11석, 민주당 17석 획득(2013.7.21.)
 - 총 242석 중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수 이상인 135석(약 56%)을 차지
- 내각부, 『FY2013 연차경제재정보고』발표(2013.7.23.)³⁹⁾
 - (구성 및 목표) 경제 재정의 현황과 과제, 일본 기업 경쟁력, 경제활동을 지탱하는 기반활동으로 구성, 이는 경제의 선순환 확립을 목표로 함
 - (경제재정의 현황과 과제) 과거 회복 국면에 비해 개인 소비가 강한 반면, 수출이 약해 수출이 주도해 온 기존의 회복국면과는 크게 다른 모습을 보임

37) 내각부, 『平成26年度予算の概算要求に当たっての基本的な方針について』

38) 주요 요구 내용 이외에도 지방교부세 교부금 및 지방 특례 교부금 합계 금액은 중기재정계획과의 정합성에 유의하여 요구, 의무적 경비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요구, 참의원 선거 비용의 감소 등 특수요인에 대해서는 가감하며, 근본적인 재검토를 실시하여 가능한 세출의 억제 도모 내용 포함

39) 내각부, 『平成25年度 年次経済財政報告』



- 통화정책과 물가동향, 재정 및 사회보장의 현황과 재정건전화에 대한 내용 포함
- (기업 경쟁력) 일본 기업이 생산성과 수익성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한 과제에 대해 분석
- 제조업의 수익성과 생산성, 비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에 대한 내용 포함
- (경제활동을 지탱하는 기반활동) 경제 활동의 기반으로서의 인재, 금융서비스, 사회 인프라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
- 인재양성과 관련된 세 가지 논점,⁴⁰⁾ 투자 자금 및 사회 인프라의 공급 기반 등에 대한 내용 포함

〈표 16〉 증장기 경제지표

(단위: %, 조엔)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20	2022	2023
실질 GDP 성장률	1.2	2.8	1.0	2.0	1.9	2.0	2.3	2.3	2.3
명목 GDP 성장률	0.3	2.6	3.1	3.7	3.9	3.5	3.6	3.6	3.5
잠재 성장률	1.0	0.8	1.0	1.4	1.6	1.9	2.4	2.5	2.5
소비자물가 상승률	-0.3	0.5	3.3	2.6	2.8	2.0	2.0	2.0	2.0
GDP 디플레이터	-0.9	-0.2	2.1	1.6	2.0	1.5	1.3	1.3	1.2
완전실업률	4.3	3.9	3.7	3.5	3.4	3.3	3.2	3.2	3.2
기초 재정수지	-30.6	-34.0	-21.5	-17.1	-13.9	-13.6	-12.4	-10.4	-10.2
	(-6.4)	(-7.0)	(-4.3)	(-3.3)	(-2.6)	(-2.4)	(-2.0)	(-1.6)	(-1.5)
국가	-32.8	-36.0	-23.7	-19.4	-16.7	-16.3	-15.9	-15.7	-15.3
	(-6.9)	(-7.4)	(-4.7)	(-3.7)	(-3.1)	(-2.9)	(-2.6)	(-2.4)	(-2.2)
지방	2.2	2.0	2.1	2.3	2.8	2.7	3.5	5.3	5.1
	(0.5)	(0.4)	(0.4)	(0.4)	(0.5)	(0.5)	(0.6)	(0.8)	(0.7)
재정수지	-40.7	-44.5	-32.0	-28.2	-26.5	-28.4	-36.8	-42.5	-46.7
	(-8.6)	(-9.1)	(-6.4)	(-5.4)	(-4.9)	(-5.1)	(-5.9)	(-6.4)	(-6.8)
국가	-40.1	-43.7	-31.3	-27.4	-25.8	-27.4	-35.3	-41.7	-45.2
	(-8.4)	(-9.0)	(-6.4)	(-5.3)	(-4.8)	(-4.9)	(-5.7)	(-6.3)	(-6.6)
지방	-0.6	-0.7	-0.7	-0.8	-0.6	-1.0	-1.5	-0.8	-1.5
	(-0.1)	(-0.2)	(-0.1)	(-0.1)	(-0.1)	(-0.2)	(-0.2)	(-0.1)	(-0.2)
채권 등 잔액	893.2	928.5	962.0	992.3	1021.5	1053.4	1166.3	1256.0	1306.6
	(188.1)	(190.6)	(191.4)	(190.4)	(188.6)	(187.9)	(187.9)	(188.6)	(189.5)

주: 1) () 안은 GDP 대비 수치

자료: 내각부, 『中長期の經濟財政に關する試算』

40)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율 상승, 정보 서비스 등 정보 통신 인력 부족, 주요 선진국 평균(인구의 0.5%정도)보다 현저히 낮은 외국인 유입 비율과 관련된 내용

■ 내각부, 중장기 경제 재정에 관한 시산⁴¹⁾ 발표 (2013. 8.8.)

- (경제 관련 시나리오) 일본 경제 재생을 위한 대담한 금융정책, 적극적인 재정정책, 민간 투자를 환기시키는 성장전략의 효과가 꾸준히 발현
 - 향후 10년(2013~2022년) 연평균 성장률은 실질 2%, 명목 3% 정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소비세율 인상 영향 제외)은 중기적으로 2%에서 안정적인 것으로 예상
- (주요 가정) 2016년도 이후 사회보장지출은 고령화 요인 등으로 증가하고 일반 세출은 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주요 시산 결과) 2015년 국가 및 지방의 기초재정수지(복구, 부흥 대책 비용과 재원 금액을 제외한 베이스)는 -3.3%로 2010년도 수준에 반감할 것으로 전망
 - 2020년도 국가 및 지방 기초재정수지는 GDP 대비 -2.0% 정도로 흑자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선 노력이 필요

■ 내각부, 2013년 2분기 GDP 1차 속보치 발표 (2013.8. 12.)

- 2013년 2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6%, 연율 환산 2.6%를 기록, 3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보임
 - 이는 지속적인 가계소비 증가와 엔화 약세에 의한 수출 증가, 긴급경제대책 효과에 의한 공공 투자 증가에 기인

〈표 17〉 분기별 실질 성장률(계절조정계열)

(단위: %, 조엔)

항목	2012년			2013년		2013년 (연율환산)
	4~6월	7~9월	10~12월	1~3월	4~6월	4~6월
국내총생산	-0.2	-0.9	0.3	0.9	0.6	2.6
국내수요	0.0	-0.2	0.3	0.5	0.4	1.8
민간수요	-0.2	-0.6	0.1	0.6	0.2	1.0
공적수요	0.9	1.0	1.0	0.3	1.0	4.2
재화·서비스 순수출 ¹⁾	-0.2	-0.7	-0.1	0.4	0.2	-

주: 1) 실질성장률 대비 기여도

자료: 내각부, 『四半期別GDP速報(2013年4-6月期・1次速報)』, 2013.8.12.

(자료 수집 및 정리: 서주영 연구원)

포르투갈

1. 예산·결산 등

- 예산총국(DGO), 2014년도 예산편성지침(Instruções para preparação do Orçamento do Estado para 2014) 공표(2013.8.9.)⁴²⁾
 - 2014년도 예산의 공무원 증원 및 감원, 휴가보조금 관련 인건비 지출은 공공부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함
 -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들은 정부의 예산제약을 반영하여 삭감분을 포함한 예산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 상기 조건으로 정부의 예상수입이 2012년 예산안의 총지출 수준을 넘지 않을 것으로 기대

2. 기타

- 재무부, 2013년 1~2분기 공공부문 적자 40억유로 기

41) 본 시산은 경제, 재정, 사회보장을 일체적으로 모델링한 계량모형(경제재정모형)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성장률, 물가 및 금리 등은 동 모형에서 추정

42) 예산총국(Direção-Geral do Orçamento), CIRCULAR SÉRIE A N.º 1374



록 발표(2013.7.24.)⁴³⁾

- 2012년 동기간 17억유로의 적자를 기록한 것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
- 보조금 지출 증가로 지출이 3.8%증가하고 재정수입은 3.1% 감소

■ 중앙은행, 하계보고서에서 2013년 경제성장률을 -2%로 전망(2013.7.16.)⁴⁴⁾

- 춘계보고서(2013.3.26.)의 전망치인 -2.3%에서 0.3%p 상향 전망
 - 국내수요 감소와 수출 증가를 반영하여 전망치 수정
 - 2014년 경제성장률은 긴축조치로 인해 춘계 전망치인 1.1%보다 낮은 0.3%로 하향 전망

〈표 18〉 포르투갈 중앙은행의 경제 전망치

(연간 변화율, %)

	2013	2014
국내총생산(Produto Interno Bruto)	-2.0	0.3
민간소비(Consumo Privado)	-3.4	-1.4
공공소비(Consumo Público)	-2.1	-3.2
국내수요(Procura Interna)	-4.4	-1.2
수출(Exportacoes)	4.7	5.5
수입(Importacoes)	-1.7	2.1

■ 통계청, 2013년 2분기 실업률 16.4% 발표(2013.8.7.)⁴⁵⁾

- 전년도 동분기보다 1.4%p 증가, 직전 분기보다

1.3%p 감소한 수치

- 청년실업률(15-24세)은 37.1%를 기록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정인 연구원)

스페인

1. 예산 · 결산 등

■ 2014~2016년 안정화 목표 수정 및 2014년도 정부 비금융 지출상한 설정(2013.6.28.)⁴⁶⁾

- 지난 5월 29일 EC가 스페인에 대한 재정적자 감축 시한을 2년 연장하며 유예기간 동안의 재정적자 목표수치를 새롭게 제시함. 이에 따라 2014~2016년 안정화 목표가 다음과 같이 수정됨

〈표 19〉 2014~2016 안정화 목표 수정

(단위: % PIB)

	2013	2014	2015	2016
중앙정부 (Administración Central)	-3.7 → -3.8	-3.5 → -3.7	-2.8 → -2.9	-2.0 → -2.1
지역(주)정부 (Comunidades Autónomas)	-1.2 → -1.3	-1.0 → -1.0	-0.7 → -0.7	-0.2 → -0.2
지방정부 (Corporaciones Locales)	0.0 → 0.0	0.0 → 0.0	0.0 → 0.0	0.0 → 0.0
사회보장 (Seguridad Social)	-1.4 → -1.4	-1.0 → -1.1	-0.6 → -0.6	-0.5 → -0.5
계 (Total Administraciones Publicas)	-6.3 → -6.5	-5.5 → -5.8	-4.1 → -4.2	-2.7 → -2.8

• 2014년 정부 비금융 지출상한은 전년 대비 2.7% 증가한 1,333억유로로 결정됨

- 정부부처 지출상한은 전년 대비 0.7% 감소한 360

43) Direção-Geral do Orçamento, Execução orçamental Junho/2013

44) Banco de Portugal, Boletim Economico versão 2013

45) 통계청 (Instituto Nacional de Estatística), A taxa de desemprego estimada foi de 16,4% - 2.º Trimestre de 2013

46) 스페인 재정부(http://www.minhap.gob.es/es-ES/Prensa/En%20Portada/2013/Paginas/20130628_CM Ministros.aspx)

역유로임

- 수정된 2014~2016년 안정화 목표 및 2014년도 정부 비금융 지출상한은 하원·상원에서 7월 2일, 10일에 통과됨

2. 기타

- 저금리 대출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발표(2013.7.4.)⁴⁷⁾
 - 스페인 국영신용개발은행(ICO)과 독일 국영재건신용은행(KfW)이 각각 8억유로 규모의 차관을 제공해 스페인 중소기업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실시할 계획
 - 스페인 정부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해 실업률이 완화될 것을 기대
- 내각, 지방정부 효율화 법안 승인(2013.7.26.)⁴⁸⁾
 - 재정부가 지난 2월 15일 내각에 제출한 지방정부 효율화 법안이 내각의 승인을 얻어 통과됨. 지방정부의 효율성 제고 및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
 - (주요 내용) 정부 계층 간 중복 사업 방지를 위한 지방정부의 권한 명확화, 지방정부의 조직 간소화, 지방정부에 대한 감독 강화, 지방정부의 경제활동 활성화
 - (지방정부의 권한 명확화) 지방정부는 법에서 명시한 사업들만 수행 가능하며, 중앙정부(Administración Central), 지역정부(Comunidades Autónomas)와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
 - (지방정부의 조직 간소화) 지방정부 간 자발적 합병 장려, 지방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방공무

원의 연봉 상한 설정, 지방정부의 상근직 지역대표 수 제한

〈표 20〉 지방공무원의 연봉 상한 설정

인구	연봉 상한	인구	연봉 상한
50만명 초과	장관 급	5만명 이하	장관 급 - 45%
50만명 이하	장관 급 - 10%	2만명 이하	장관 급 - 55%
30만명 이하	장관 급 - 20%	1만명 이하	장관 급 - 60%
15만명 이하	장관 급 - 25%	5천명 이하	장관 급 - 70%
7.5만명 이하	장관 급 - 35%	1,001~2,000명 이하	장관 급 - 80%

〈표 21〉 지방정부의 상근직 지역대표 수 제한

인구	지역대표 수	인구	지역대표 수
100만명 이하	25	3.5만명 이하	10
70만명 이하	22	2만명 이하	7
50만명 이하	20	1.5만명 이하	5
30만명 이하	18	1만명 이하	3
10만명 이하	15	3천명 이하	2
5만명 이하	11	2천명 이하	1

주: 1,500명 이하는 상근직 지역대표를 둘 수 없음. 마드리드는 45명, 바르셀로나는 32명 가능

- (지방정부에 대한 감독 강화)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감사 과정에 관한 규칙을 설정할 수 있게 됨. 지방정부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실제 비용을 공개해야 함
- (기대 효과) 동 법안이 실시될 경우 2013~2019년 동안 80억유로의 예산 절감 효과 발생

47) 스페인 총리실 (<http://www.lamoncloa.gob.es/ServiciosdePrensa/NotasPrensa/MinisterioEconomiaCompetitividad/2013/040713-pymes.htm>)

48) 스페인 재정부 (http://www.minhap.gob.es/es-es/prensa/en%20portada/2013/Paginas/20130726_Reforma_Local.asp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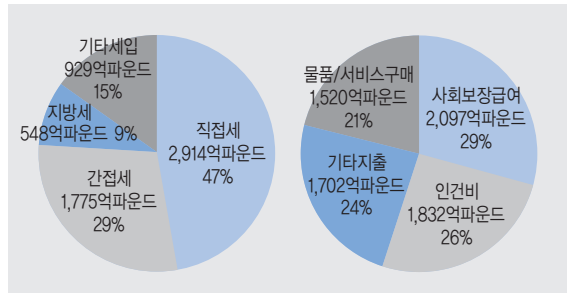


- 2013년 6월 말, 중앙정부(Estado, State)의 재정적자는 GDP 대비 3.82%(2013.7.30.)⁴⁹⁾
 - 2013년 6월 말 스페인 중앙정부 재정적자는 GDP 대비 3.82%로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2012년 6월말 재정적자는 4.15%)
 - 세입은 4.68% 증가함. 소득세는 3.6% 감소했으나 VAT가 16.9% 증가
 - 몬토로 재정부 장관은 스페인이 불황에서 벗어나 경기회복에 성공할 것이라고 평가하며 실업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지혜 연구원〉

- WGA 적자(WGA deficit)⁵¹⁾는 1,853억파운드, 순부채(net liabilities)는 13,470억파운드 규모

[그림 6] 세입 및 지출 구성



자료: HM Treasury, Whole of Government Accounts: year ended 31 March 2012

영국

1. 예산 · 결산 등

- 영국 재무부, 『FY2011-12 결산보고서(Whole of Government Accounts 2011-12: year ended 31 March 2012)』 발표(2013.7.17.)⁵⁰⁾
 - (세입) 공공부문 총세입은 6,166억파운드로 FY2010-11의 6,140억파운드 대비 26억파운드 증가 - 직접세 2,914억파운드(47%), 간접세 1,775억파운드(29%), 지방세 548억파운드(9%) 등
 - (지출) 공공부문 총지출은 7,151억파운드로 FY2010-11의 6,249억파운드 대비 902억파운드 증가 - 사회보장급여 2,097억파운드(29%), 인건비 1,832억파운드(26%), 물품/서비스구매 1,520억파운드(21%) 등

2. 기타

- 영국 예산책임청(OBR), 『재정 지속가능 보고서(Fiscal Sustainability Report)』 발표(2013.7.17.)⁵²⁾
 - 공공부문 순채무(Public Sector Net Debt)는 FY2017-18에 GDP 대비 85%에서 2030년대 66%로 하락한 후 FY2062-63에는 GDP 대비 99%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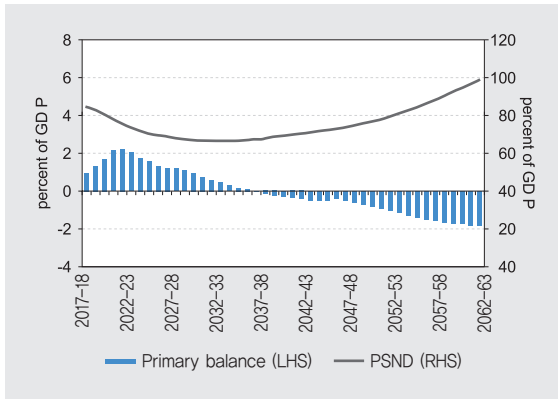
49) 스페인 재정부(http://www.minhap.gob.es/es-es/prensa/en%20portada/2013/Paginas/20130730_DEFICIT.aspx)

50)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whole-of-government-accounts-2011-to-2012>

51) 지출과 수입의 차이, FY2010-11까지는 'net deficit' 이라는 용어로 사용했으나 FY2011-12부터 'net expenditure'로 변경

52) <http://budgetresponsibility.independent.gov.uk/fiscal-sustainability-report-july-2013/>

[그림 7] 기초재정수지 및 PSND 전망



- (지출전망) 인구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인한 공공지출 압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의료)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의료지출 비중이 FY2017-18에는 GDP의 7.0%에서 FY2062-63에 8.8%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장기요양) FY2020-21 GDP 대비 1.4%에서 FY2062-63에는 2.4%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 (국가연금)⁵³⁾ FY2017-18에 GDP 대비 5.8%에서 FY2062-63에 8.4%까지 증가 예상

<표 22> 장기 지출 전망

(단위: Percent of GDP)

	Estimate ¹⁾		FSR Projection					
	2012-13	2017-18	2020-21	2022-23	2032-33	2042-43	2052-53	2062-63
Health	8.1	7.0	6.9	7.0	7.6	8.2	8.5	8.8
Long-term care	1.2	1.3	1.4	1.5	1.8	2.1	2.3	2.4
Education	5.6	4.6	4.5	4.5	4.5	4.3	4.4	4.4
State pensions	6.0	5.8	5.7	5.8	6.6	7.5	7.6	8.4
Pensioner benefits	1.2	1.0	1.0	1.0	1.0	1.1	1.1	1.1
Public service pensions	2.2	2.3	2.2	2.2	1.9	1.6	1.4	1.3
Total age-related spending	24.4	22.0	21.6	21.9	23.4	24.8	25.3	26.4
Other social benefits	6.5	5.8	5.7	5.7	5.8	5.8	5.9	5.9
Other spending	9.6	8.8	8.7	8.4	8.4	8.4	8.4	8.4
Spending ²⁾	40.5	36.7	36.1	36.1	37.6	39.0	39.6	40.6

주: 1) Spending consistent with the March 2013 EFO

2) Excludes interest and dividends

자료: 영국 예산책임청,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July 2013.

- (세입전망) 증기전망은 FY2012-13에 GDP 대비 37.0%에서 FY2017-18 37.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FY2062-63에는 GDP 대비 38.8%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 (소득세) 인구고령화에 따른 연금 소득세 납부 증가로 GDP 대비 비중이 FY2062-63에 10.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법인세) 주요 법인세율의 감소가 반영되어 FY2017-18에 GDP 대비 비중은 2.1%로 감소 전망
 - (자본세) 경제가 회복되고 자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GDP 대비 자본세 비중이 FY2012-13의 1.1%에서 FY2062-63에는 2.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53) 국가연금(state pensions)에는 국가기초연금(Basic State Pensions), 국가2층연금(State Second Pension)을 비롯한 많은 항목이 포함



〈표 23〉 장기 세입 전망

(단위: Percent of GDP)

	Estimate ¹⁾		FSR Projection					
	2012	2017	2020	2022	2032	2042	2052	2062
	-13	-18	-21	-23	33	-43	-53	-63
Income tax	9.7	10.5	10.5	10.5	10.5	10.6	10.6	10.7
NICs	6.7	7.0	7.0	7.0	6.8	6.9	6.9	6.9
Corporation tax	2.6	2.1	2.2	2.2	2.1	2.2	2.2	2.2
VAT	6.5	6.3	6.3	6.3	6.4	6.5	6.5	6.5
Capital taxes	1.1	1.5	1.9	1.9	1.9	2.0	2.0	2.0
Other taxes	10.4	10.2	10.2	10.2	10.3	10.4	10.4	10.5
Revenue ²⁾	37.0	37.6	38.1	38.0	38.1	38.6	38.5	38.8

주: 1) Receipts consistent with the March 2013 EFO

2) Excludes interest and dividends

자료: 영국 예산책임청,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July 2013.

■ 영국 통계청, 2013년 2분기 공공부문 재정 현황 발표 (2013.7.19.)⁵⁴⁾

- 2013년 2분기 공공부문 경상재정 적자(Public Sector Current Budget)는 전년 동분기 대비 121억 파운드 감소한 203억파운드로 나타남
 - 2013년 2분기 공공부문 순차입(Public Sector Net Borrowing)은 전년 동분기 대비 157억파운드 증가한 243억파운드 규모
 - 공공부문 순부채(Public Sector Net Debt)는 2013년 6월 말 기준 847억파운드 증가한 12,028억파운드로 GDP의 74.9%를 차지

〈표 24〉 공공부문 재정(Public Sector Finance)

(단위: 십억파운드)

	2분기			June		
	2013 /14(A)	2012 /13(B)	(A-B)	2013 (C)	2012 (D)	(C-D)
경상재정수지 ²⁾	-20.3	-32.4	12.1	-7.0	-10.6	3.6
순투자 ³⁾	4.0	-23.9	27.8	1.5	1.3	0.2
순차입 ⁴⁾	24.3	8.6	15.7	8.5	11.9	-3.4
순부채 ⁵⁾	1,202.8	1,118.1	84.7	1,202.8	1,118.1	84.7
GDP 대비 순부채 (%)	74.9	71.6	3.3	74.9	71.6	3.3

주: 1) not seasonally adjusted

2) Current Budget is the difference between current accrued receipts and current accrued expenditure

3) Net Investment is investment less depreciation

4) Net Borrowing is Current Budget less Net Investment

5) Net Debt is financial liabilities less liquid assets

자료: 영국 통계청, *Public Sector Finances*, June 2013.

■ 영국 재무부,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조기교육 · 양육의 질적 향상과 범위 확대를 위한 계획 발표(2013.7.25.)⁵⁵⁾

- (범위 확대) 2세 아동에 대한 조기교육을 2013년 9월에 시행하고 2014년 9월 확대할 방침
 - 2013년 9월 약 13만명, 2014년 9월 약 26만명의 2세 아동이 주 15시간의 조기교육을 받게 될 예정
 - 2010년 9월부터 3-4세 아동에 대한 주 15시간 국가지원 조기교육이 시행 중
- (비용 지원) 아동 양육비용 지원 계획
 - 2015년 가을, 일하는 가정(working families)에 대한 새로운 비과세 아동양육제도(tax-free childcare scheme)⁵⁶⁾ 시행 계획
 - 2016년 4월, 통합급여의 보육지원에 2억파운드를

54) <http://www.ons.gov.uk/ons/rel/psa/public-sector-finances/june-2013/stb---june-2013.html>

55) <https://www.gov.uk/government/policies/improving-the-quality-and-range-of-education-and-childcare-from-birth-to-5-years>

56) 영국 재무부는 새로운 비과세 아동양육제도(tax-free childcare scheme)의 시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4월 1호 『재정동향』 참고)

투입하여 저소득 가정에 대한 보육비용을 지원할 계획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진아 연구원)

 미국

1. 예산 · 결산 등

- CBO, 자동지출삭감 규모를 반영한 FY2014~FY2021 재량 지출(Budget Authority) 한도* 추정치 발표 (2013.8.5.)⁵⁷⁾

* 2011년 BCA법 규정사항: CBO는 FY2021까지의 각 회계연도 재량지출 한도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8월 15일까지 발표해야 함

- 자동지출삭감 규모는 FY2014 910억달러(8.6%), FY2021 870억달러(7.1%)로 예측
 - FY2014 삭감 규모는 2013년 4월 OMB의 추정치: 국방 540억달러, 비국방 370억달러⁵⁸⁾
- CBO는 FY2014 재해구호(disaster relief) 최대 비용을 121억달러로 추정
 - BCA법에 따라 해외긴급작전, 재해구호 등의 긴급 지출은 한도에 증액 반영
- 삭감 규모를 반영한 재량 지출 총한도는 FY2014 9,670억달러에서 FY2021 1조 1,470억달러로 점증 예상 (연평균 2.5% 증가)
 - FY2014 재량 지출 한도는 2012년 ATRA (American Taxpayer Relief Act)에서 국방, 비국방 각각 40억달러씩 삭감

〈표 25〉 CBO, 재량지출한도 FY2014-2021

(단위: 백만달러)

구분	FY2014	FY2015	FY2016	FY2017
BCA법 설정한도	1,058,000	1,086,000	1,107,000	1,131,000
국방	552,000	566,000	577,000	590,000
비국방	506,000	520,000	530,000	541,000
자동지출삭감 효과	-90,527	-90,824	-90,671	-90,651
국방	-53,918	-53,954	-53,949	-53,940
비국방	-36,609	-36,870	-36,722	-36,712
조정 한도	967,473	995,176	1,016,329	1,040,349
국방	498,082	512,046	523,051	536,060
비국방	469,391	483,130	493,278	504,288
구분	FY2018	FY2019	FY2020	FY2021
BCA법 설정한도	1,156,000	1,182,000	1,208,000	1,234,000
국방	603,000	616,000	630,000	644,000
비국방	553,000	566,000	578,000	590,000
자동지출삭감 효과	-90,271	-89,302	-87,931	-87,243
국방	-53,928	-53,914	-53,902	-53,890
비국방	-36,343	-35,388	-34,029	-33,353
조정 한도	1,065,729	1,092,698	1,120,069	1,146,757
국방	549,072	562,086	576,098	590,110
비국방	516,657	530,612	543,971	556,647

(자료 수집 및 정리: 권나현 전문연구원)

57) CBO, Sequestration update report: August 2013, 2013.8.5.

58) FY2014 의무지출 삭감 비율 : 비면제 국방 9.8%, 비면제 비국방 7.2%, 메디케어 2.0%

OMB, Sequestration preview report to the president and congress for fiscal year 2014 and report to the congress on the joint committee reductions for fiscal year 2014, 2013.4.10,(2013.5.20 update)



| 정책 흐름 |

- 2013년 세법개정안
- 최근 경제상황과 중점 추진·점검과제
- '13년 7월 전월세 거래량, 전년 동월 대비 5.3% 증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어디서든 즉시 발급

2013년 세법개정안

-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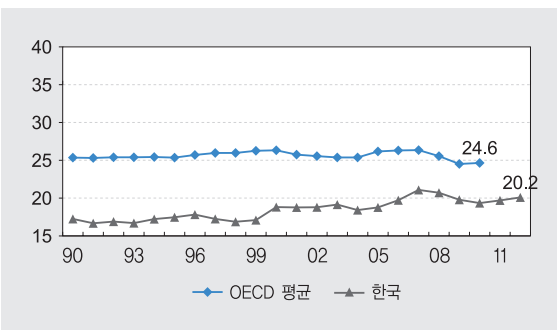
* 본 자료는 2013년 8월 8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에서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 요약 및 이후 보도자료입니다. (편집자 주)

I. 박근혜 정부 5년간의 조세정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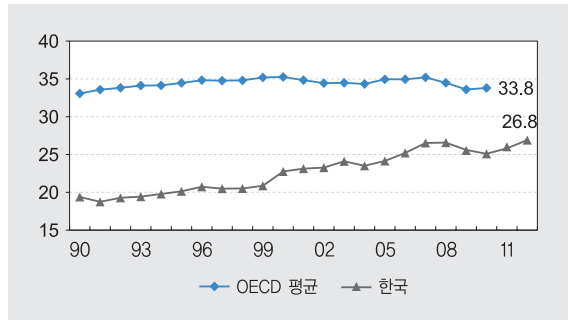
1 조세부담률 및 조세구조

- **(조세부담률)** '07년 21%까지 증가했던 조세부담률은 감세정책 등으로 인해 하락한 후 '12년 20.2% 시현
 - 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사회보장부담률)은 '12년 26.8%까지 증가하였으나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 * 사회보장부담률(%): (90)2.0, (96)2.7, (02)4.4, (08)5.8, (11)6.1, (12)6.6

조세부담률 추이



국민부담률 추이



-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주변경쟁국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편임

구분	한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대만	중국	인도
조세부담률 ('10년, %)	19.3	16.3	13.1	13.9	11.9	18.2	16.5

- **(조세구조)** OECD 평균에 비해 소득세·일반소비세 비중은 낮고, 법인세·재산세 비중은 높은 수준임

주요국의 GDP 대비 세원별 세수비중('10년, %)

구분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사회보장기여금		
	소득세	법인세	일반소비세			개별소비세		
◆미국	10.8	8.1	2.7	3.2	3.7	2.0	1.7	6.4
◆영국	13.1	10.0	3.1	4.2	10.3	6.5	3.7	6.6
◆독일	10.3	8.8	1.5	0.8	10.3	7.2	3.0	14.1
◆프랑스	9.4	7.3	2.1	3.7	10.4	7.2	3.2	16.6
◆일본	8.4	5.1	3.2	2.7	4.6	2.6	2.0	11.4
◆한국	7.1	3.6	3.5	2.9	8.2	4.4	3.8	5.7
OECD 평균	11.3	8.4	2.9	1.8	10.4	6.9	3.5	9.1

2 분야별 조세제도에 대한 평가

- **(소득과세)** 소득세 최고세율(38.0%)은 OECD 평균(36.0%) 수준이나 각종 비과세·공제 등으로 면세자 비율*이 높고 과세기반이 약함

* 근로자 면세자 비율(%): (07)43.8 (08)43.2 (09)40.3 (10)39.0 (11)36.1

중위소득자 총소득 중 소득공제 비율 (Taxing wages, 2013 OECD)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일본	OECD 평균
43.4%	20.5%	22.6%	26.8%	16.1%	0.0%	52.9%	18.1%

- **(법인과세)** 법인세는 3단계 누진세율*구조로서 최고세율은 OECD 평균(23.3%)과 유사하나 최저세율(10%)은 OECD 복수세율 11개국**의 평균(17.1%)에 비해 매우 낮음

* 과표구간별 세율(%): (2억원 이하)10, (2억~200억원 이하)20, (200억원 초과)22

** 스페인 25%, 영국 20%, 일본 18%, 미국 15%, 프랑스 15%, 캐나다 11% 등

- **(재산과세)** 부동산 세제는 '高거래세 - 低보유세' 구

조이며 양도소득세는 높은 명목세율로 인해 정상적인 거래를 위축

- 상속증여세는 세수기여도('12년 국내비중: 2.0%)에 비해 높은 누진세율 체계 등으로 인해 경제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큼

* 주요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한국·일본 50, 영국·프랑스 40, 미국 35, 독일 30

- **(소비과세)** VAT세율(10%)은 OECD 평균(18.7%)에 비해 낮고 면세범위가 넓음

- 에너지세의 경우 수송용 유류 위주로 과세되어 에너지원별 조세중립성을 저해하고, 주세는 고도주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유류세의 세부담 수준(가격 대비)은 OECD국가 중 낮은 수준 (휘발유 19위, 경유 20위)

* 주세율: (탁주) 5%, (약주·청주) 30%, (맥주·소주·위스키) 72%

3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 방향: "원칙에 입각한 세제의 정상화(正常化)"

1 조세부담 수준의 적정화

-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합리적으로 조정('12년 20.2% → '17년 21% 내외)

- 다만, 세율인상·세목신설 등 직접적 증세가 아닌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과세기반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

※ 추가재원 필요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세입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한 합의 도출

2 조세구조의 정상화

- 소득·소비과세 비중을 높이고, 법인·재산과세는 성장친화적으로 조정

- (소득과세)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세원을 넓히고, 공제제도 정비를 통해 과세기반을 확대

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적정(適正)부담' 구조로 전환

- (소비과세) 복지지출 증가 등 재정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에너지세제 개편 등을 통해 외부불경제 교정
- (법인과세)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장친화적 조세체계를 구축하고 기업규모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세제지원체계 마련
- (재산과세) '거래세 인하-보유세 적정화'를 추진하고富力 불균형 시정 및 경제효율 제고 등을 위해 상속증여세 제도를 합리화

③ 조세지원의 효율화

- 조세지출제도는 성장동력 확충, 일자리 창출 및 서민지원 중심으로 재편하고, 일몰도래 제도는 종료 하되 필요시 새로운 형태로 재설계
- 조세지출-세출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효과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사후 성과관리를 강화

II. 2013년 세법개정 방향

-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의 틀 내에서 국정과제의 적극적 지원, 국민중심의 세제 운영, 과세형평 제고·세입기반 확충을 일관성 있게 추진

2013년 세법개정 기초

- ◆ **(국정과제 적극 지원)** 창조경제 기반 구축, 고용률 70% 달성, 중소기업 육성, 문화예술 진흥 등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
- ◆ **(국민중심 세제 운영)**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칙에 입각하여 일관성 있게 조세제도를 운영
* 법령용어 및 조문체계를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제작성
- ◆ **(과세형평 제고·세입기반 확충)**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마련

비전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		
기본 방향	국정과제 적극 지원	국민중심 세제 운영	과세형평 제고·세입기반 확충
추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동력 확충·중소기업 지원 • 창조경제 기반 구축(벤처투자 활성화) • 고용률 70% 달성 지원 • 문화예술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의 사회안전망 강화(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 농어민·영세자영업자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 납세편의 제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 비과세·감면 정비 • 과세기반 확대 • 지하경제 양성화

III. 주요 개정내용

1 국정과제 적극 지원

1. 성장동력 확충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① 유망 서비스업* 등에 대한 R&D·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 과학기술·ICT 등과 결합되거나 산업간 융합, 문화융성에 기여하는 서비스업

- **(유망서비스업 등 R&D 세제지원)**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망서비스업과 연구개발업에 대해 R&D비용 세액공제* 허용

*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지출비용의 3~25%를 세액공제하거나 전년 대비 증가한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지출비용의 40~50%를 세액공제

- **(지식재산서비스업 등 지원)** 지식재산서비스업과 유망서비스업·사회서비스업 중 일부 업종에 중소기업지원세제* 적용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5~30%),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14년, 4~7%)

②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상생협력 지원

- **(창업중소기업 투자 지원)** 창업 초기의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 **(중소기업 핵심인력 장기근속 유도)** 중소기업이 장기근속 근로자 지원 목적으로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에 자금 출연시 손금 인정

* 5년 이상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기업·근로자의 공동기금 납입금 전액 지급예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상생협력기금출연금 세액공제(7%) 대상을 출연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에 지출하는 분으로 한정하여 지원

③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 **(기술이전소득 감면)**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제고

를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 **(기술혁신형 M&A 지원)** 벤처·창업투자자의 자금회수와 기업간 기술이전의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형 M&A*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 합병 전후 주식평가차익이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시 증여세 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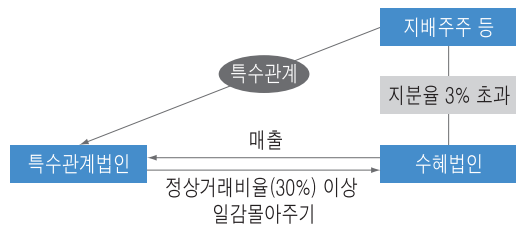
④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 개요

- **(제도 개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준 경우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 과세

- **(과세 이익)** 특수관계법인과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영업이익 중 지배주주 지분상당액

*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정상거래비율(30%)×1/2)×(지배주주 지분율-3%)



-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요건 완화)**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주주 지분율이 높고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가족기업이 많은 점 등을 감안, 지분율(3% → 5%)과 정상거래비율(30% → 50%)을 완화

- **(기업내부거래 과세 제외)** 일감을 주고받는 특수관계법인간에 지분이 있는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거래*는 내부거래로 보아 과세 제외

* 해당 특수관계법인과과의 매출액×수혜법인(또는 지배주주)의

지분을

- **(증여세와 배당소득세 이중과세 조정)** 지배주주가 수혜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서는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

5 창업 및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개선

- **(가업상속재산 이월과세제도 도입)**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가업상속재산(최대 300억원)에 대하여는 추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도록 함으로써富力의 무상이전을 방지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적용대상 기업을 매출액 3,000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견기업까지로 확대
-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완화)**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 후 동일업종 유지 요건을 완화하여 유사업종 내 전환을 허용
 - 10년 이상 가업영위요건 위반시 8년차부터 단계적으로 추징세액 경감*
 - * 경감률: 8년차 10%, 9년차 20%, 10년차 30%
- **(가업승계 등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개선)** 가업승계 과세특례대상에서 업무무관자산을 제외하고 창업자금특례의 경우 창업지원업종으로 한정
 - *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창업자금(30억원 한도)은 5억원 공제 후 10% 저율과세

6 투자지원제도의 재설계

-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투자지원제도는 대·중소기업간에 세액공제율을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재설계하여 운용

구분	공제율		개정이유
	현행	개정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7%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	• 의약품산업 발전 지원 • 법적인무시설 감안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10%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	•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 법적 의무시설 감안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10%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	• 에너지효율 제고 지원 • 저리용자 등 세출지원 가능
■ R&D설비 투자 세액공제	10%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	• R&D 지속 지원 • 저리용자 등 세출지원 가능

2. 창조경제 기반 구축 (벤처·창업자금 생태계 선순환방안(5.15))

- 1 엔젤투자 세제지원 확대(6. 28 법안 국회 제출)**
 - 엔젤투자 공제율·공제한도를 인상하고 투자대상을 확대*
 - * (공제율) 투자금액의 30% → 5천만원 이하 50%, 5천만원 초과 30%
 - * (공제한도) 연간 종합소득금액의 40% → 50%
 - (투자대상) 벤처기업 → 벤처기업, 기술성평가 통과 3년 미만 창업기업
 - 엔젤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특별공제 종합한도 적용시 예외 인정
- 2 M&A 세제지원(7. 2 법안 국회 제출)**
 - 기술혁신형 M&A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 인수시 법인세 세액공제
- 3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7. 2 법안 국회 제출)**
 - 비상장 벤처기업 등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의 경우 교환 주식 처분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4 기업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7. 2 법안 국회 제출)

- 벤처기업 창업주 또는 기업 소유자가 경영권 이전으로 지분을 매각하고 일정기간 내에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한 경우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5 코넥스 세제지원

-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해 코스닥 시장에 상응하는 세제 적용(7. 1 시행)

* (주식양도차익) 대주주만 과세, (증권거래세) 탄력세율(0.3%) 적용(기본세율 0.5%)

- 창투조합 등이 코넥스 상장기업에 투자시 세제지원(기재위 조세소위 계류중)

* 주식양도차익·배당소득 및 증권거래세 비과세

6 스톡옵션 세제지원(7. 2 법안 본회의 통과)

- 우수인력의 벤처·창업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기업 등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분할납부(3년간) 허용

3.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1 시간제 일자리 세제지원* 확대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시 고용인원계산(상시근로자) 1명,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자) 0.5명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증대인원 계산시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는 0.5명에서 0.75명으로 인상하여 적용

* ① 상용직, ② 상시근로자와 무차별(임금·복지 후생 등), ③ 최저임금의 130% 이상 지급

2 중소기업 고용증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제지원)** 중소기업의 고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를 지속 허용

*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임금총액의 8.9%+α) 세액공제: 청년 100%, 기타 50%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 전환직원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 신설

- **(일자리 나누는 기업 세제지원 확대)** 일자리 나누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 - 다만, 경영상의 어려움이 없는 기업이 임금삭감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임금삭감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세제 지원 (근로자) 임금감소분의 50% 소득공제, (중소기업) 임금감소분의 50% 손금산입

3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사회적기업 등 지원 확대)** 취약계층의 고용비용이 높은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감면율: (현행) 5년간 50% → (개정) 3년간 100%, 2년간 50%

- **(고용취약계층 고용 지원)** 노인(60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을 청년고용 수준으로 인상(1인당 1,000만원 → 1,500만원)

4. 문화예술 진흥 지원

1 문화시설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

* 사업용 유형자산(토지, 건물 등 제외)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 문화시설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을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

2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한도 확대

- 기업이 지출하는 문화접대비의 추가 비용인정을 위해 총접대비의 1%를 초과하여 지출해야 하는 문턱요건을 폐지

* (현행) Min [문화접대비-접대비 총액×1%, 일반접대비 한도액×10%]

(개정) Min [문화접대비, 일반접대비 한도액×10%]

3 외국인 관광객 호텔숙박료 부가가치세 환급

-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내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의 호텔숙박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도입('14년 적용)

2 국민중심 세제 운영

1.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CTC) 신설

◆ 일하는 복지와 근로를 통한 탈수급 지원을 위해 '09년 도입한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대상 및 지원수준을 확대

- 양육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녀장려세제(CTC, 1인당 50만원)를 도입하고 복잡한 자녀 지원방식을 단순화

1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변경 및 자녀장려세제 도입

- 지급기준을 자녀기준에서 가구원기준(단독, 가족)과 자녀기준으로 이원화하고 결혼·양육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도록 설계
 - 결혼에 대한 지원을 위해 가족가구에 대한 지원 수준을 확대
 -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맞벌이가구에 대해 추가 지원
 - 양육비 지원을 위해 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차등 지원

(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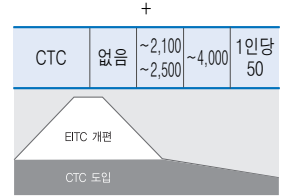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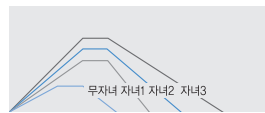
(단위: 만원)

구분	구간			최대 지급액
	점증	평탄	점감	
무자녀	~600	~900	~1,300	70
자녀 1인	~800	~1,200	~1,700	140
자녀 2인	~900	~1,200	~2,100	170
자녀 3인 이상	~900	~1,200	~2,500	200

(개정)

(단위: 만원)

구분	구간			최대 지급액	
	점증	평탄	점감		
단독가구	~600	~900	~1,300	70	
가족가구	출벌이	~900	~1,200	~2,100	170
	맞벌이	~1,000	~1,300	~2,500	210



2 지급대상 가구 확대

① 소득요건 완화

- 가족가구(2자녀 이하)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소득기준을 확대(1,300만~2,100만원 이하 → 2,100만~2,500만원 이하)
- 유자녀가구에 대하여는 소득금액 4,000만원까지 자녀장려금 추가 지급

② 재산·주택가액요건 상향 조정('15년부터 적용)

- 재산기준을 상향조정(1억원 → 1.4억원 이하)하고 주택가액요건(0.6억원)을 폐지
 - 다만, 재산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장려금을 50%만 지급

③ 중·장년층, 기초생활수급자로 지급대상 확대('15년부터 적용)

- 저소득 단독가구의 증가추세를 감안, 중·장년까지 수급대상 확대
- * (현행) 60세 이상 → (개정) 50세('16년부터), 40세('17년부터) 이상
- 근로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 지급*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운영

③ 최대지급액 상향 조정

- 가족가구의 경우 EITC 최대지급액을 대폭 확대 (70만~200만원 → 210만원)
-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하여 자녀 1명당 50만원을 추가 지급('15년)

	현행 (단위: 만원)	개정(단위: 만원)		
		EITC	CTC	합계
■ 단독가구	70	70	-	70
■ 가족 가구	- 무자녀	70	-	210/홀별이170
	- 1자녀	140	50	260/홀별이220
	- 2자녀	170	100	310/홀별이270
	- 3자녀*	200	150	360/홀별이320

* 자녀장려금은 '15년부터 지급하므로 '14년에는 3자녀 홀별이가구의 EITC 지급액이 줄지 않도록(200만원 → 170만원) 맞벌이에 관계없이 최대 210만원 지급

2. 농어민·자영업자 등 서민·중산층 지원

① (농어촌특별세 적용기한 연장)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 목적으로 도입된 농어촌특별세의 적용기한을 10년 연장

② (택시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 지속 적용)

* 택시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회사 부가가치세 세액의 90%를 경감하고 그 경감액은 택시기사에게 지급

③ (주거비 부담 경감)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소형주택 (85㎡ 이하, 3억원 이하)에 대한 전세보증금은 항구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

* 전세보증금 과세: 3주택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

- 세대주 이외 세대원에 대해서도 전월세 소득공제를 허용

* 전월세 소득공제요건: 세대주, 무주택,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④ (의료비 지출목적 연금*에 대한 특례 허용) 동 연금

인출분에 대해 한도와 관계없이 3~5% 저율분리과세 적용

* 3~5% 저율분리과세하나 한도초과 인출시 퇴직소득(3~7%), 기타소득(20%)으로 과세

3. 납세편의 제고 등

① (소득세법·법인세법 알기 쉽게 새로 쓰기)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법령용어 및 조문체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작성

* 법률 제1조,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1-1-1조로 상위법령과 하위규정을 체계화

② (FTA관세특례법 전면개정) FTA특례적용 절차 순서대로 법조문을 재구성하고 복잡한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세분화(36개 조문 → 45개 조문)

③ (국세청의 과세정보 제공 관련 규정 정비) 부처간 협업 강화 차원에서 4대 사회보험기관 등에 대한 국세청의 정보제공 근거 마련

④ (증여세 공제금액 인상) '94년부터 동일하게 유지되어 온 부모로부터의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금액을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인상

* (현행) 10년간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 → (개정)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⑤ (설탕관세율 인하) 국내 설탕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면서 제당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잠정세율 적용(기본세율 30% → 잠정세율 20%)

3 과세형평 제고 · 세입기반 확충

1.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 과세형평을 위해 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

- 전환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전환
- 면세자비율 축소 등을 위해 근로소득공제를 일부 조정

◆ 기본공제, 공적연금 · 건강보험료 공제,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창출을 위한 필요경비적 측면 등을 고려해 소득공제방식을 유지

① 소득공제 유지항목

공제항목	공제내용	현행유지 이유
■ 기본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공제	• 생활공동체인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공제
■ 공적연금 · 건강보험 공제	국민 · 공무원연금 등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등 보험료 전액공제	• 세금과 성격이 유사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의 5~80% 공제	• 근로자 · 사업자 간 세부담 형평을 고려한 비용공제적 성격

② 인적공제: 자녀양육관련공제(㉠~㉣)는 자녀세액공제로 통합하고, 기타 인적공제(㉤~㉨)는 '14년 이후 세액공제로 전환

공제항목	공제내용	개정
㉠ 다자녀 추가	자녀 2인 100만원 2명 초과 1명당 200만원	•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 자녀1~2명 1명당 15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만원
㉡ 6세 이하 자녀양육비	6세 이하 자녀당 100만원	
㉢ 출산 · 입양	출산입양 당해연도 200만원	• CTC와 중복적용 배제
㉤ 장애인	장애인 1명당 200만원	• 현행유지, '14년 이후 세액공제로 전환 • 다만, 부녀자 소득공제는 소득금액 1,500만원 이하*만 적용 (EITC와 중복적용 배제) * 총급여 2,500만원 수준
㉥ 경로우대자	70세 이상 경로자 100만원	
㉦ 부녀자공제	부녀자 50만원	
㉧ 한부모공제	한부모 100만원	

③ 특별공제: 중산층에 대한 직 · 간접적 지원항목 (15%)과 보험 · 연금 등에 대한 지원항목(12%)으로 나누어 공제율을 이원화

공제항목	공제내용	개정
■ 의료비 공제	총급여 3%초과분 (700만원 한도) 본인, 장애인, 경로자 무제한	• 세액공제율 15%로 전환 - 공제한도 등 기타사항은 현행 유지
■ 교육비 공제	본인 전액공제, 대학생 900만원, 초중고학생 300만원	
■ 기부금 공제	법정기부금 전액 지정기부금 소득금액 30%	• 세액공제율 12%로 전환 - 공제한도 등 기타사항은 현행 유지
■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전액 (100만원 한도)	
■ 연금저축 · 퇴직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불입액 전액 (400만원 한도)	
■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불입액 전액 (300만원 한도)	

※ 14년 이후 전환 항목: 창투조합 등 출자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시주조합출연금, 주택자금 공제

• (표준소득공제) 표준세액공제(근로자 12만원, 사업자 7만원)로 전환

- **(특별공제 종합한도)** 주택자금 공제, 우리사주 조합 출연금 등 일부 소득공제가 존치되므로 현행 공제한도(2,500만원) 유지

④ 근로소득공제 조정: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계층간 세부담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일부 조정

총급여 구간	근로소득공제율	
	현행	개정
~500만원	80%	70%
~1,500만원	50%	40%
~3,000만원	15%	15%
~4,500만원	10%	
~1억원	5%	5%
1억원 초과	5%	2%

2. 비과세·감면 정비

① R&D지원의 효율성 제고

- **(R&D 준비금제도 폐지)** R&D 준비금은 국제적으로 운용되지 않는 제도이고 내부유보가 많은 대기업의 혜택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폐지
-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조정)** 연구소 직원이 아닌 직원의 유학비, 훈련비 등 R&D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② 정책목적 달성·세출예산과의 중복지원 등 제도 정비

구분	지원제도	정비 사유
폐지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전자신고제도 정착 (법인세 97.5%, 종소 87.8%)
	■ 지급명세서 전자식 제출 세액공제	• 지급명세서 전자식 제출이 보편화
	■ 현금성 결제 등에 대한 세액공제	• 현금성 결제비율 개선 (11년 92.2%)
	■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 공기업 지원 편중
	■ 해저광물자원개발업 VAT 등 면제	• 공기업 지원 편중
재설계	■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인하 (15 → 10%)	• 직불형카드(체크카드) 사용 유도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세액공제 (0.5 → 0.3%)	• 유가가 안정된 점을 감안, 종전수준 환원
	■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 감면 (50%)	•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기한 2년 연장
	■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 감면 (30%)	• 중소기업에 한해 2년 연장

③ 토지 수용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정비

- 공익사업용 토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 대상 토지 등에 대해 시가보상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과도한 감면율을 조정

구분	공익사업용 토지		개발제한구역 매수대상 토지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현금보상	채권보상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취득	매수청구일 20년 전 취득	
현행	20%	25%	50%	30%	20%
개정	10%	15%	30%	20%	10%

3. 과세기반 확대

① 부가가치세 세입기반 확대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설정)** 농수산물 매입액의 과도한 부가가치세 공제수준을 적정화하기 위해 음식업종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매출액의 30%) 설정
- **(재활용폐자원 특례매입세액공제를 조정)** 소비

자로부터 매입한 폐자원의 부당공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제율* 하향 조정

* 공제율: (폐자원) 6/106 → 3/103, (중고차) 9/109 → 5/105

- **(미용 목적 성형수술 과세범위 확대)** 치료를 제외한 미용·성형 목적의 모든 의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현행 과세대상: 코성형수술, 쌍꺼풀수술, 지방흡인술, 주름살 제거술, 유방확대·축소술

② 양도소득세 감면 합리화

-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정화)** 물가 상승 등을 감안시 과도한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인하

* (현행) 연 8%, 최대 80% → (개정) 연 6%, 최대 60% → '15. 1. 10일부터 적용

- **(비전업농민 8년 자경 양도세 감면 배제)** 소득, 직업형태 등에 비추어 전업농민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배제

* 농업(축산업, 임업)외 근로·사업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③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의 대가로 받는 보수를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과세

※ 종래 과세관행 및 신고·납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15년부터 적용

- 종교단체는 반기별로 원천징수하고 종교인은 선택적으로 종합소득 신고(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가능)

- 다만, 종교단체가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종교인이 직접 납부하도록 규정

④ 고소득 부농에 대한 소득세 과세

- 농어업관련 소득유형간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일정 수입금액(예시: 10억원) 이상 고소득 작물재배업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

- 다만, 벼, 보리 등 곡물 및 식량작물 재배소득은 비과세 유지

⑤ 카지노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강화

- 물가상승과 사행행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여 카지노·경마장·경륜장·경정장 입장료를 인상하는 차원에서 개별소비세 과세를 강화

* 폐광지역 카지노(강원랜드): 3,500원 → 7,000원

* 경마장: 500원 → 1,000원, 경륜장·경정장: 200원 → 400원

⑥ 공무원 직급보조비 및 재외근무수당 소득세 과세

-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공무원 직급보조비를 과세로 전환하고, 월 100만원을 초과하는 재외근무수당에 대해서도 과세

※ 과세에 따른 준비 등을 고려하여 '15년부터 적용(1년 유예)

⑦ 인지세 과세대상 등 확대

- 상품권에 대한 과세를 확대(1만원권: 비과세 → 100원, 10만원권 초과: 400원 → 800원)하고 전자문서(공사계약서 등)도 과세로 전환

4. 지하경제 양성화

① 해외 소득·재산 등에 대한 정보과약 강화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개인)에게 자금출처 소명의무를 부여하고 미소명 금액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10%)
- 개인의 경우에도 해외투자자료 미제출시 과태료(1,000만원 이하) 부과

②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하향 조정(현행 30만원 → 개정 10만원)

③ 탈세제보포상금 지급한도 상향 조정

- 조세범칙행위·조세탈루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 인상(10억원 → 20억원)

IV. 세법개정 세수효과

1. 세수효과 : 총 +2.49조원

- 금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2.49조원
 - **(증가 요인)**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설정, 현금영수증의 무발급대상 확대 등 +4.48조원
 - **(감소 요인)** 근로장려세제 확대·자녀장려세제 도입, 장애인·노인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한도 인상 등 △1.99조원

'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연도별 세수효과 (전년 대비 기준, 조원)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이후
소득세	0.52	△0.17	0.89	△0.08	△0.11	△0.01
법인세	1.02	-	1.02	-	-	-
부가가치세	0.77	0.55	0.18	0.04	-	-
기타	0.18	0.05	0.03	0.09	0.01	-
계	2.49	0.43	2.12	0.05	△0.1	△0.01

2. 세부담 귀착

서민·중산층* /중소기업	고소득자/대기업	기타**	계
△0.62조원	+2.97조원	+0.14조원	+2.49조원
(△24.9%)	(119.3%)	(5.6%)	(100%)

* OECD의 서민·중산층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자: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외국인·비거주자·공익법인 등

V. 향후 추진일정

1. 개정대상 법률 : 총 15개

- 내국세(12개)
 -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인지세법
- 관세(3개)
 -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특례법

2. 추진일정

- 8~9월중 입법예고, 부처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상정(9. 24, 잠정)
- 9월말 정기국회 제출

참고 1

금년 세법개정안 관련 중산·서민층 세부담 증가, 공약가계부상 재원 마련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의견

1.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이 늘어나는지에 대한 의견

세법개정안에 따른 전체 세부담 귀착 효과

- 금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부담 귀착은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은 줄어들고, 고소득자·대기업은 늘어남
- 고소득자·대기업의 경우 세부담이 약 3조원 늘어나게 되는 반면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은 세부담이 약 6,200억원 줄어듦

근로자의 세부담 변화

-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은 대부분 줄어들어 전체 근로자의 72%는 세부담이 감소
- 상위 28%에 해당하는 3,450만원 이상 근로자의 세부담은 다소 증가하지만, 7,000만원 근로자의 경우라도 월 1~2만원 수준(최대 연 16만원)
- 또한, 양육수당 지급 대상 확대 등 중산층 복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어 중산층의 부담은 전체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기대
- 상위 계층의 증가 세수는 저소득 계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1,3조원)으로 증가하는 세수는 전액이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자녀장려세제 도입 등 저소득 계층의 세부담 경감 재원(△1.7조원)으로 활용됨

2. 재벌 퍼주기, 자영업자 쥐어짜기인지에 대한 의견

- 대기업의 경우에도 비과세·감면 정비로 세부담이 약 1조원 증가

- 자영업자 경우 그동안 과도하게 지원받았던 부분을 정상화*하는 것임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설정 등

- 농민의 경우에도 고소득 농민(예,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비전업농민(8년 자경 양도세 감면 배제)에 대해 일부 과세하는 것이며,
 - 농어촌특별세 적용 연장 등을 통해 농어민 등에 대한 지원 방안도 별도로 마련하였음

3. 공약가계부 달성 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

- 정부는 지난 5월 공약가계부 발표를 통해 향후 5년간 국세 세입 확충으로 48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 이는 비과세·감면 정비(18조원), 지하경제 양성화(27.2조원), 금융소득 과세강화(2.9조원) 등을 통해 조달
- 비과세·감면 정비는 '13년 세법개정을 통해 18조원 중 약 11조원(연간 약 3.4조원)의 공약 이행 재원을 마련할 계획인바,
 - 금년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약 12조원(연간 약 3.7조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당초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
 - ※ 금년 세법개정안에 발표된 세수효과(2.49조원, '14년 0.43조원)는 공약가계부상 세입확충 방안 외에 근로장려세제 확대·자녀장려세제 도입 등의 효과를 포함하여 계산한 것으로 공약가계부 세수효과와 다소 차이
- (지하경제 양성화) 과세관청의 세정노력 강화(23.2조원)와 제도 개선(3.9조원) 등으로 5년간 27.2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
 - 과세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는 '13. 6월 시행령 등을 통해 대부분 기초치*** 성실신고 대상 확대, 탈세제보 포상금 확대 등

※ ('13년 세법개정안)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확대

- FTU 정보 등을 활용한 과세당국의 세징노력 강화를 통해서도 차질 없이 공약 이행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것으로 봄

※ 세징노력 강화(조원): ('13) 2.6 ('14) 4.7 ('15) 5.0 ('16) 5.3 ('17) 5.7

* 제도 개선(조원): ('13) 0.1 ('14) 0.8 ('15) 1.0 ('16) 1.0 ('17) 1.0

- **(금융소득 과세강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4천만원 → 2천만원, '12년 기초치)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당초 목표인 5년간 2.9조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참고 2 2013년 세법개정안 내용 일부 수정·보완

소득세법 수정안

- 정부는 금년도 세법개정안 중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조정하였음
 - 이에 따라 총급여 3,450만원부터 5,500만원 이하 중상층은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으며
 - 교육비, 자녀양육비 등의 지출이 많은 5,500만원부터 7,000만원까지 중상층은 세부담이 거의 늘어나지 않음(2만~3만원)
- 이를 위해 해당구간의 근로자가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66만원으로 상향조정
 -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공제한도를 50만원에서 63만원으로 조정
 - ※ 해당소득구간에 해당하는 229만명이 혜택을 받게 됨

(단위: 만명, 만원)

총급여액	인원		현행	원안		수정안	
	인원	비중		세액	차액	세액	차액
~1,000만	435.8	28.2%	0	0	0	0	0
~2,000만	362.5	23.4%	5	0	△5	0	△5
~3,000만	231.5	15.0%	17	6	△11	6	△11
~4,000만	158.9	10.2%	36	37	1	36	0
~5,000만	112.4	7.3%	83	99	16	83	0
~5,500만	41.6	2.7%	147	163	16	147	0
~6,000만	37.6	2.4%	200	216	16	202	2
~7,000만	57.7	3.7%	285	301	16	288	3
~8,000만	35.4	2.3%	412	445	33	445	33
~9,000만	22.1	1.4%	540	638	98	638	98
~10,000만	16.4	1.1%	741	854	113	854	113
~11,000만	11.2	0.7%	942	1,065	123	1,065	123
~12,000만	7.3	0.5%	1,160	1,294	134	1,294	134
~15,000만	9.3	0.6%	1,586	1,842	256	1,842	256
~3억	6.7	0.4%	3,669	4,011	342	4,011	342
3억 초과	1.6	0.1%	17,600	18,465	865	18,465	865

2. 보완 추진 과제

1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 강화

■ 제도 개선사항

- 일정수준의 수입금액 이상의 사업자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현금거래 탈루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 세징강화 방안

- 조사대상 선정시 FTU자료 활용, 대형 유흥업소·고급주택 임대업 등 현금 수입업종과 취약업종에 대한 정보수집 및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허위비용 계상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

2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대기업 위주의

투자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한편,

- 세정강화를 통해 대기업의 역외탈세 방지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 국가간 정보교환 및 역외탈세 추적 등 세정 강화를 통해 대기업의 역외탈세 방지

최근 경제상황과 중점 추진 · 점검과제

* 본 자료는 2013년 8월 7일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에서 발표한 「최근 경제상황과 중점 추진 · 점검과제」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차 경제 · 민생활성화 대책회의'(13. 8. 7(수) 08:00,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 를 주재하고 '최근 경제상황과 중점 추진 · 점검과제' 를 논의하였음

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

I. 최근 경제상황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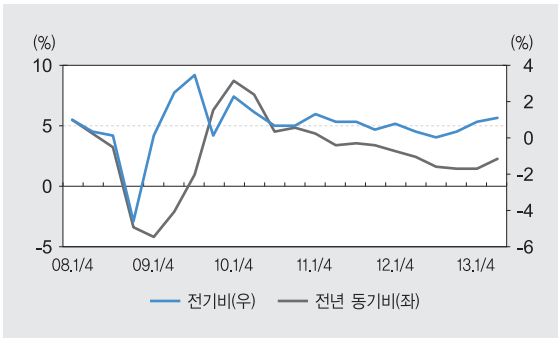
- **(경제상황)** 최근 우리 경제는 주요 지표가 개선세를 보이면서 장기간 지속된 저성장 흐름에서 벗어나 점차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확고하지 않고 대내외 불안요인이 남아 있어 회복 국면에 본격 진입이 녹록치 않은 상황
 - ↳ 이에 대응하여 금년 하반기가 경제회복을 체감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경주
- **(대응방향)**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확고해질 수 있도록 투자 활성화 · 부동산시장 정상화 노력을 강화하고, 거시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
 - 핵심규제 개선, 정책금융 기능 강화를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취득세 인하 방안 마련, 핵심 법안 처리 등으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
 - 우리 경제 리스크요인을 시기별 · 분야별로 목록화하여 종합 관리하고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

- ◇ 최근 우리 경제는 주요 지표가 개선세를 보이면서 장기간 지속된 저성장 흐름에서 벗어나 점차 회복 조짐
- ◇ 그러나,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확고하지 않고 대내외 불안요인이 남아 있어 회복 국면에 본격 진입이 녹록치 않은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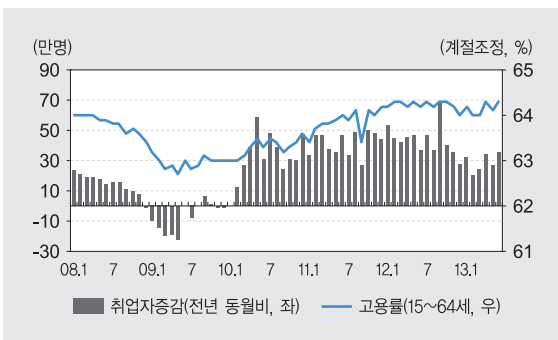
1 최근 경제상황 평가

- **(현황)** 우리 경제는 2/4분기 들어 저성장 흐름에서 벗어나고 고용도 완만히 개선
 - 정부지출(2.4%), 건설투자(3.3%) 증가 등으로 2/4분기 GDP가 1.1% 성장(전기비)하면서 9분기 만에 1%대 성장률을 기록
 - 고용도 작년 4/4분기부터 부진했던 흐름이 완화되면서 2/4분기 중 취업자 증가가 32만명(전년 동기비) 수준을 회복

GDP 성장률 추이



고용률과 취업자 증감



- **(평가)** 저성장 흐름을 끊은 것은 의미가 있으나, 민간의 회복모멘텀이 뚜렷하지는 않은 상황
 - 2/4분기 경제성장률이 1%대를 달성하는 등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
 - 다만, 설비투자가 감소세로 전환(2.6% → △0.7%) 되고, 민간소비 증가 폭(+0.6%)이 크지 않은 등 민간의 회복세가 확고하지 않은 모습
- * 2/4분기 1.1% 성장은 SOC예산 등 재정 조기집행 추진으로 건설투자(성장기여도 0.5%p)와 정부소비(0.4%p)가 크게 기여한 데 기인

2 하반기 여건 진단

- **(대내외 여건)** 대외적으로 미국 등 세계경제가 완만하게 개선되었으나 美 양적완화 축소, 中 경제 둔화 우려가 상존
 - * 미국 7~8월 경제·고용 지표 등에 따라 9월중 양적완화 축소 시작 가능성
 - * 중국 경제성장률(전년동기비, %): (11)9.3 (12)7.8 (13.1/4)7.7 (2/4)7.5
- 대내적으로 주택거래 급감, 전력수급 불안 등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 3/4분기 주택 거래 전기대비 △36.6% 감소전망(국토연구원)
 - * 절전규제 시행(8. 5~30일)시 철강, 자동차 등 전력 다소비업체 생산 축소 우려
- **(부문별 전망)** 수출이 개선세를 보이는 반면 내수에서 재정지출이 둔화되고 민간부문의 본격 회복이 불확실할 전망
 - **(수출)** 중국 경기둔화 등에 따른 영향에도 불구하고, 선박·반도체 수출 호조 등으로 완만하게 개선될 전망
 - * 수출증가율(전년 동기비, %): (12.4/4)△0.4 (13.1/4)0.4 (2/4)0.8 (7월)2.6
 - **(재정)** 상반기 조기집행에 따라 하반기 재정여력이 약화
 - * 재정집행률(%): (13.1/4)28.2 (2/4)32.1 (3/4)19.7 (4/4)20.0
 - **(민간소비)** 소득·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겠지만, 주택시장 위축, 긴 장마 등으로 상승세 제약 우려
 - * 7월 속보지표상 소비 개선세가 주춤할 전망(전년 동월비, 6월 → 7월, %)
 - : (자동차 판매)△8.5 → 4.9 (대형마트)4.3 → △5.2 (백화점)3.7 → △2.1
 - **(투자)** 설비투자는 수출개선 등으로 증가할 전망이다이나, 일부 기업의 투자계획 축소, 최근 악화된 기업심리 등으로 완만할 가능성
 - * 30대그룹 투자계획(연초 대비, 13. 7월 전경련): (확대)1, (축

소)6, (유지)23

* 기업경기실사지수(한은): ('13.1)70 (2)71 (3)75 (4)79 (5)80 (6)79 (7)72

- 건설투자는 상반기 SOC 조기집행이 종료되고, 아파트 분양물량이 줄면서 둔화 예상

* 아파트 분양(만호, 전국, 주택협회): ('13.1/4)1.8 (2/4)3.5 (3/4)2.1 (4/4)2.7

- (고용) 경기 개선, 추경 일자리 사업집행 등에 따라 30만명대 취업자 증가 지속 전망

⇒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확고해질 수 있도록 투자 활성화·부동산시장 정상화 노력을 강화하면서, 거시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

II. 중점 추진·점검과제

- ◇ 핵심규제 개선, 정책금융 기능 강화를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취득세 인하 방안 마련, 핵심법안 처리 등으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
- ◇ 우리 경제 리스크요인을 시기별·분야별로 목록화하여 종합 관리하고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

1 투자 활성화

- 1 기 발표된 1·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계속)
 - 현장 대기 프로젝트(11건)는 착공 등 성과가 초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시 후속 보완조치 마련
 - 입지·융복합·지주회사 관련 규제 등 제도개선 과제들은 관련 법령·지침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투자환경 개선

2 산업단지·환경 규제 개선 등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마련(10월)

- 산업단지·경자구역·농공단지 등 각종 계획입지 제도 전반을 재점검하여 산업간 융·복합이 활성화되도록 관련 규제 개선
 - 장기간 미개발된 계획입지지구는 지역 특성에 맞게 용도를 전환하고, 산단 내 용도별 입주업종 제한 규제 등을 완화
- 기술발전에 부합하지 않거나 신시장 창출을 저해하는 등 경직적인 환경규제를 개선하고, 규제 절차를 투명화·간소화
- 부총리 1박 2일 경제현장 방문 등 현장에서 발굴한 투자·경영애로·창업 등 규제완화 과제를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

3 규제·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추진

- 경자구역 내 복합리조트 설립을 조기 추진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복합리조트 개발시스템 마련('14. 2월)
 - * 외국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컨셉제안(RFC: Request for concept) 방식 등 투명하고 효과적인 개발·지원 체계를 도입
- 의료법인 해외투자 근거규정 마련(11월, 지침제정), 의료관광 광고 허용(12월, 의료법 개정안 마련)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의료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강원도 전 지역으로 확대('14. 1월)하고,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추진 방안 마련(12월)

4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기능 강화

- 해외 건설·플랜트 산업의 경쟁력 제고, 고부가가치 수출 산업으로의 전환 유도 등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방안 등 마련(8월)

- 창업·벤처 육성, 창조경제 지원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해 정책자금의 시장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 기능 재정립(8월)

2 부동산시장 정상화

1 취득세율 인하 등 부동산 세제 개편방안 검토

-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개편 등을 포함한 중앙·지방정부 간 재원조정 문제와 연계하여 취득세율 인하 방안 마련(8월)
-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종부세·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 검토(9월)

2 부동산관련 핵심법안 조속 처리 추진

- 4.1 주택종합대책 핵심법안*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위해 국회 등과 협의, 정기국회에서 처리 추진
* 다주택자 등 양도세 증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 수직축 리모델링 허용 등

3 거시 위험관리

1 우리 경제 리스크요인을 시기·분야별로 목록화하여 종합 관리

구분	하반기 주요 대내외 위험요인
대외요인	(미) 양적완화 축소, 국가채무한도 협상 실패 (일) 아베노믹스 성공 여부 (중) 정책기조 변화로 인한 경착륙 가능성 (유럽) 재정불안 재점화
대내요인	(가계) 가계부채 증가 (기업) 취약업종 구조조정, 회사채만기도래 집중 (정부) 세입여건 부진

2 개별 위험요인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대응 강화

- (대외) 자본유출입 동향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외환시장 불안 발생시 신속한 시장안정조치 시행

-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을 내실화하고 거시경제금융회의 등 관계기관 합동 점검체제를 통해 실시간 정보 공유
- 외환시장·외화유동성 등 분야별로 기 마련된 상황별 대응방안에 따라 거시건전성 조치의 탄력적 적용 등 기민하게 대응
- 주요국 통화정책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G20 등을 통한 국제공조
- (민간) 가계·기업 등 분야별 위험요인 예방조치 강화
 - 국민행복기금과 하우스푸어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체제 개편(9월) 등을 통해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
 -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한계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 발표한 회사채시장 정상화방안(7.8일)을 원활하게 시행
- (정부) 세출이 정상 집행되도록 우선 세수확보에 최대한 역점을 두되, 필요시 추가 대응방안* 강구(8월)

* (예시) 기금 등 여유자금 활용, 상시불용사업 등 불요불급한 세출조정 추진

- ◇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상기 대책들의 「구체화-집행-점검」 전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
-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병행하여 정책수혜자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제·민생활성화대책회의’를 신설·운영(격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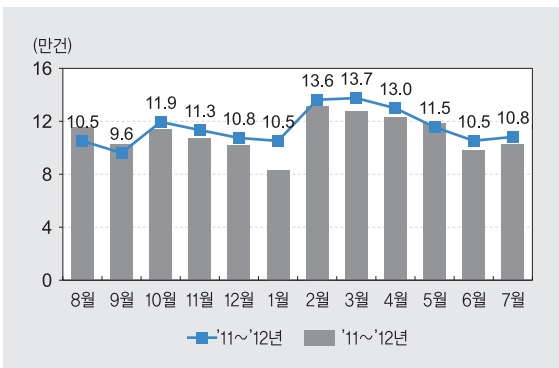
'13년 7월 전월세 거래량, 전년 동월 대비 5.3% 증가

- 수도권 4.5%, 지방 7.1% 각각 증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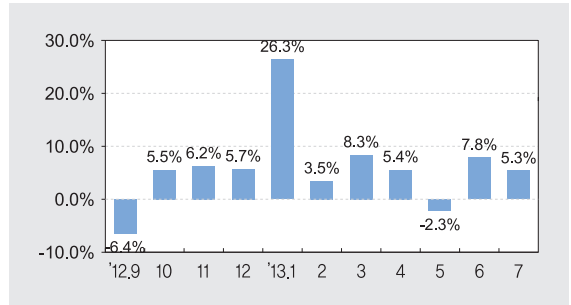
* 본 자료는 2013년 8월 20일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에서 발표한 「'13년 7월 전월세 거래량, 전년 동월대비 5.3% 증가」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13. 7월 전월세 거래량 및 실거래가 자료를 공개하였다.
 - '13년 7월 전월세 거래는 전국 10.8만건으로 집계되어 전년 동월 대비 5.3%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전월 대비로는 2.6% 증가)
 - 전월세 거래량은 '12년 10월 이후 7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다가, 5월에 소폭 감소하였으나 6~7월은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 * 전년 동월비(%): ('13. 2)+3.5 → ('13. 3)+8.3 → ('13. 4)+5.4 → ('13. 5)△2.3 → ('13. 6)+7.8 → ('13. 7)+5.3

전월세 거래량 추이



월별 증감률 추이(전국)



* '13년(1~7월) 누계 거래량은 836,637건으로 전년동기대비 6.9% 증가

-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7만 2천건이 거래되어 전년 동월 대비 4.5% 증가하였고, 지방은 3만 6천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7.1% 증가하였다.

'13. 7월 전월세거래량

구분	'13. 7월	'13. 6월	'12. 7월	증감률 ('13. 7월, %)		누계 ('13. 1~7월)	
				전월비	전년 동월비	거래량	전년동기 대비(%)
전국	107,874	105,189	102,431	2.6%	5.3%	836,637	6.9%
수도권	71,955	70,053	68,886	2.7%	4.5%	554,449	6.1%
서울	34,328	33,057	32,134	3.8%	6.8%	272,275	8.2%
(강남3구)	6,415	6,105	5,669	5.1%	13.2%	49,963	13.6%
지방	35,919	35,136	33,545	2.2%	7.1%	282,188	8.5%

-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량은 50,047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0.7% 감소하였고, 아파트 외 주택은 57,827건으로 11.1% 증가하여, 비아파트 주택의 거래량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13. 7월 주택유형별 거래량 및 증감률

(단위: 건, %)

구분	전체주택		아파트		아파트 외	
	거래량	전년 동월비	거래량	전년 동월비	거래량	전년 동월비
전국	107,874	5.3%	50,047	△0.7%	57,827	11.1%
수도권	71,955	4.5%	31,482	△1.9%	40,473	10.0%
서울	34,328	6.8%	12,664	1.8%	21,664	10.0%
(강남3구)	6,415	13.2%	3,218	6.8%	3,197	20.4%
지방	35,919	7.1%	18,565	1.4%	17,354	13.8%

- 계약 유형별로는 전체주택 중 전세는 65,170건(60.4%), 월세는 42,704건(39.6%)이고, 아파트 중 전세는 33,376건(66.7%), 월세는 16,671건(33.3%)으로 조사되었다.

-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의 순수전세(월세 제외) 실거래가격을 살펴보면,

- 서울 강남(은마), 서초(반포 미도), 성북(대우 그랜드) 등은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 강남 대치 은마(76.79㎡)

: ('13. 6) 31,279만원 → ('13. 7) 31,536만원

서초 반포 미도(84.96㎡)

: ('13. 6) 29,917만원 → ('13. 7) 35,500만원

성북 대우 그랜드월드(84.97㎡)

: ('13. 6) 24,300만원 → ('13. 7) 25,000만원

경기 수원 영통 황공마을(49.76㎡)

: ('13. 6) 14,000만원 → ('13. 7) 14,000만원

- 서울 송파(리센츠), 경기 성남 분당(이지더원) 등 일부 단지에서는 가격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송파 잠실 리센츠(84.99㎡)

: ('13. 6) 58,500만원 → ('13. 7) 56,389만원

성남 분당 이지더원(84.28㎡)

: ('13. 6) 33,909만원 → ('13. 7) 33,667만원

- 전월세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홈페이지(rt.mltm.go.kr) 또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전월세 거래량(전체주택)

(확정일자 기준, 단위: 건)

구분	'13년					'12. 7월	'11. 7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국	137,351	129,702	115,409	105,189	107,874	102,431	92,857
수도권	91,256	87,809	78,228	70,053	71,955	68,886	62,211
서울	46,063	42,675	37,436	33,057	34,328	32,134	29,715
강북	21,099	19,401	17,583	14,953	15,524	15,062	13,265
강남	24,964	23,274	19,853	18,104	18,804	17,072	16,450
강남3구	7,605	7,590	6,523	6,105	6,415	5,669	5,506
인천	7,677	8,371	7,746	6,947	7,123	6,596	5,902
경기	37,516	36,763	33,046	30,049	30,504	30,156	26,594
지방	46,095	41,893	37,181	35,136	35,919	33,545	30,646
지방광역시	21,281	19,519	17,696	17,189	16,649	15,508	14,236
부산	8,385	7,635	7,006	6,596	6,494	6,110	5,455
대구	3,902	3,772	3,647	3,770	3,212	2,874	2,812
광주	2,446	2,346	2,236	2,206	2,086	1,720	1,989
대전	4,293	3,760	3,068	2,984	3,138	2,981	2,529
울산	2,255	2,006	1,739	1,633	1,719	1,607	1,451
세종시	224	211	220	183	188	216	-
지방도	24,590	22,163	19,265	17,764	19,082	18,037	16,410
강원	2,918	2,712	2,100	1,990	2,135	2,165	1,825
충북	2,949	2,601	2,181	2,033	2,421	2,201	1,956
충남	4,093	3,756	3,235	2,849	3,066	2,962	2,907
전북	2,679	2,454	2,067	1,831	1,978	2,078	1,749
전남	2,043	1,821	1,764	1,517	1,534	1,363	1,194
경북	3,460	3,036	2,758	2,536	2,626	2,224	2,218
경남	6,123	5,510	4,914	4,806	5,082	4,860	4,436
제주	325	273	246	202	240	184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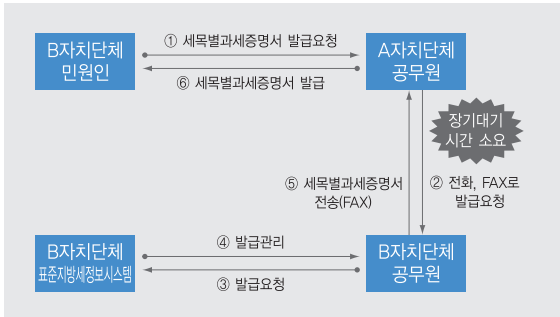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어디서든 즉시 발급

* 본 자료는 2013년 8월 14일 안전행정부 지방세분석과에서 발표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어디서든 즉시 발급」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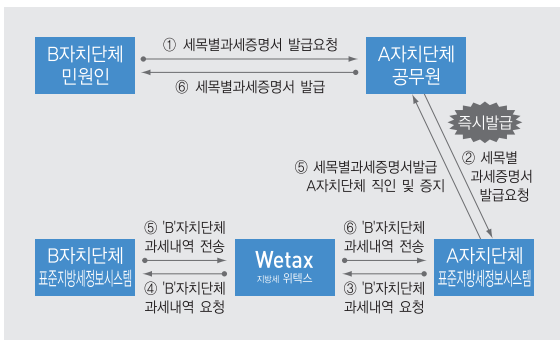
- 8월 14일(수)부터 전국 자치단체 어디서든 다른 자치단체의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신청해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전국 어디서나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을 통해 지방세 과세증명서 발급 관련 불편사항을 크게 해소했다.
- 이번 개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원인이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자신의 과세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 4시간에서 즉시 발급으로 크게 단축된다.
 - 지금까지는 타 자치단체에서 관할 자치단체의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신청하려면 타 자치단체 공무원이 관할 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전화 또는 FAX로 발급 요청하여 처리하는 방식이었다.
 - 하지만, 이번에 전국 자치단체의 표준정보시스템과 위택스 시스템 간의 과세내역정보 연계망 구축을 통해 민원인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든 방문해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신청하면 즉시 실시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개선 전 · 후											
◇ (개선) 가까운 자치단체 어디든지 방문, 전국 무관할 지방세 과세증명 즉시 발급											
	<table border="1"> <thead> <tr> <th>개선 전</th> <th>개선 후</th> </tr> </thead> <tbody> <tr> <td>4시간 (자치단체간</td> <td></td> </tr> <tr> <td>• (처리시간) 업무처리 3시간, 민원인 방문 1시간)소요</td> <td>→ 즉시 발급</td> </tr> <tr> <td>전화 또는 FAX</td> <td></td> </tr> <tr> <td>• (처리절차) 민원 발급 요청 후 과세증명서 발급 처리</td> <td>→ 실시간 처리</td> </tr> </tbody> </table>	개선 전	개선 후	4시간 (자치단체간		• (처리시간) 업무처리 3시간, 민원인 방문 1시간)소요	→ 즉시 발급	전화 또는 FAX		• (처리절차) 민원 발급 요청 후 과세증명서 발급 처리	→ 실시간 처리
개선 전	개선 후										
4시간 (자치단체간											
• (처리시간) 업무처리 3시간, 민원인 방문 1시간)소요	→ 즉시 발급										
전화 또는 FAX											
• (처리절차) 민원 발급 요청 후 과세증명서 발급 처리	→ 실시간 처리										
◇ (현재) 관할 과세증명서 신청은 즉시 발급, 타 관할 신청은 통상 4시간 정도 소요											

현행



개선



■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전국 자치단체 어디서든 즉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이라는 「정부3.0」의 가치를 지방에서 구현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1 '12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통계

No.	자치단체	발급건수	No.	자치단체	발급건수
1	서울특별시	544,884	10	강원도	159,435
2	부산광역시	144,084	11	충청북도	149,267
3	대구광역시	140,136	12	충청남도	250,923
4	인천광역시	150,823	13	전라북도	237,826
5	광주광역시	61,802	14	전라남도	345,444
6	대전광역시	79,797	15	경상북도	308,378
7	울산광역시	63,442	16	경상남도	332,287
8	세종특별자치시	9,995	17	제주특별자치도	74,377
9	경기도	739,505	총 계		3,792,405

※ 민원인 자치단체 방문 발급 건수임

참고 2 「세목별 과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 비교

구분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세목별로 과세 사실에 대해 증명하는 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는 특정납세의무자의 지방세 과세(납세)사실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의 일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급일 현재 납세자가 정수유에 등을 제외하고는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증명서
근거법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63조
발급방법	민원24(인터넷),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유효기간	없음 ※ 과세사실 증명이므로 유효기간 불필요	발급일부터 30일간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세의무자에게 과세된 지방세 과세사실 증명 ※ 사회적으로 금융기관 등에서 납세의무자의 재산증명용 (개인파산 신청, 은행 대출 등)으로 제출 요구 사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할 때



각 언론매체에 보도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련 주요 기사내용입니다.

- 편집자 주 -

[이슈토론] 복지 위해 증세해야 하나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세출 줄이는 게 우선 ... 증세는 최후의 수단

아일랜드 태생의 정치가이며 영국 하원의원을 지낸 에드먼드 버크는 “인간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현명해질 수 없는 것처럼, 세금을 부과하면서 동시에 납세자를 기쁘게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계개편안은 그동안 우리나라 소득세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고, 저소득층의 자녀 양육,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CTC) 신설 등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이 발표되자마자 중산층의 세 부담이 약간 증가한다는 사실에 국민 여론은 악화됐고, 정부는 신속하게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중산층의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수정안을 제출했다. 당연히 세수는 기존안보다 약 4,400억원 감소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과는 달리 대선 과정에서 공약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했고, 이러한 점이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여 당선에 주요한 원인이 됐다. 국민에게 과거 후보자처럼 대선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줬기

때문이다. 국민의 믿음대로 정부는 최근 140개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총 134조 8천억원이 필요하고, 이 중에서 84조 1천억원은 세출 절감을 통해, 50조 7천억원은 세입 확충을 통해 조달한다고 공약가계부를 발표했다. 세입 확충은 세외수입 2조 7천원을 제외한 48조원을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축소, 금융소득 과세 강화를 통해 조달할 것이라고 연도별로 구체적 수치도 제시했다.

이 같은 재원조달 방안은 정책결정자들이 쉽게 유혹을 느끼는 증세(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가 성실납세자의 부담으로 귀착되며, 증세 없이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 역시 미래 세대의 세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매우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일부 정치권이나 학계에서 주장하는 증세의 필요성은 세출구조조정,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정비, 금융소득 과세 강화를 위해 제도적·행정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다음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만 최후의 정책수단으로 고려돼야 한다.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약 25%인 311조원으로 추정되고, 비과세·감면 규모가 30조원, 부가가치세에서 매년 약 9조원이 탈루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를 방지하고 증세로 가는 것은 정의로운 사회도, 국민이 행복한 나라도 아닐 것이다.

〈매일경제, 2013-08-21〉

국세청이 파악 나선 ‘택스 갭’ … 효과 있을까?

하반기 부터 본격 파악 나서는 국세청… “기대는 되지만
실효성은 의문”

“미국 국세청(IRS)은 각종 세무조사를 통해 ‘택스 갭(Tax gap)’을 주기적으로 공표해 세금 탈루율 등을 파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무조사 등 직접적인 조사 경로를 통한 실태파악으로 세원관리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야 한다.”

지난 2011년 9월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진행됐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당시 기재위 소속 의원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말이다. 국세청이 세원관리 실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한 것. 박 대통령의 취임 이후 반년 만에 국세청이 이 ‘택스 갭’ 실태 파악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진다.

국세청, 외부 연구기관 통해 본격적인 ‘택스 갭’ 파악
‘스타트’

국세청은 하반기 중 외부 연구기관을 통해 ‘택스 갭’ 파악을 시작한다. 오는 26일 국세행정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2013년 국세행정포럼에선 ‘택스 갭’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택스 갭’은 납세자들이 세금을 제대로 냈을 경우와 실제로 낸 세금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으로 지하경제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민간 연구기관과 외국 연구 사례를 인용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를 간접적으로 추정해 왔을 뿐 자체 자료가 없었다.

과세 당국이 직접 지하경제 규모 파악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택스 갭’ 파악이 완료될 경우 세무조사와 체납 추징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부가 한 번 나서서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자는 취지”

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반신반의’… “기대 되지만 지금까지도…”

국세청의 ‘택스 갭’ 파악과 이에 대한 활용을 바라보는 조세 전문가들의 의견은 반신반의다. 정부가 지하경제 파악에 직접 나섰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규모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찮다. 국세행정포럼에서 ‘우리 실정에 적합한 탈세규모 추정모델 개발’이라는 제하의 발제를 앞두고 있는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 (택스 갭)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세무조사나 탈세를 축소하는데 활용하는 방법들은 아니었다”며 “과세 당국에서 직접 나선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를 세정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택스 갭’ 파악이 쉽지는 않다.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의 경우 5년 정도 걸렸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 2013-08-17)

고소득층 稅부담 저소득층의 7배, OECD 평균 30배에 크게 못미쳐

복지 선진국일수록 부담 높아 “조세 통한 소득재분배
필요”

증세 파동으로 우리나라 조세정의의 수준이 도마에 올랐다. 조세정의의 원칙은 같은 경제 능력을 가진 자에게는 동일한 세금을 부담시킨다는 전제하에, 더 큰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가 분배의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데 현실은 과연 그런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계일보가 1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고소득층이 져야 하는 조세부담(세금+사회보험료)이 저소득층의 약 7.1배로 OECD 회원국 평균인 30배에 크게 못 미쳤다.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를 의미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유래가 로마시대 원로원 귀족이 더 많은 세부담을 감수한 것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고소득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선진국 4분의 1 수준인 셈이다.

4인가족 근로소득에서 국가가 거둬들이는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금 등 조세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을 소득수준별로 따진 결과, 우리나라는 평균 소득의 절반인 저소득층은 16.6%, 평균 소득의 2.5배 수준인 고소득층은 23.7%를 기록했다. 이들의 월 소득을 각각 50만원, 25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조세부담은 8만 3천원, 59만 2,500원으로 저소득층보다 소득이 5배 많은 고소득층 세 부담은 저소득층의 7.1배인 셈이다.

같은 기준에서 OECD 회원국 평균 저·고소득층의 조세부담은 각각 6.5%, 3만 2,500원과 38.6%, 96만 5천원이었다. 고소득층이 무려 30배나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는 얘기다.

국가별 상황을 살펴보면 복지 선진국일수록 조세부담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원조 복지국가인 영국은 저소득층 조세부담은 0.6%에 불과한 반면 고소득층은 39.9%를 기록했다.

미국 역시 저소득층 조세부담은 공적부조 등의 영향으로 -9.7%인 반면 고소득층은 28.5%로 격차가 38.2%p에 달했다. 주요 선진국 대부분 저·고소득층 간 조세부담 비중 격차가 10~30%p여서 한자릿수인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나타냈다. 우리나라처럼 소득수준에 따른 조세부담에 큰 차이가 없는 국가는 일본, 터키, 칠레, 멕시코 정도였다.

고소득층이 과연 얼마나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정설은 없다. 정치적인 사안으로 국가마다 역사·사회적 배경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역시 북

지 수요 증가로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만큼 새로운 기준 설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과도한 소득공제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돼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그나마 높이 평가할 부분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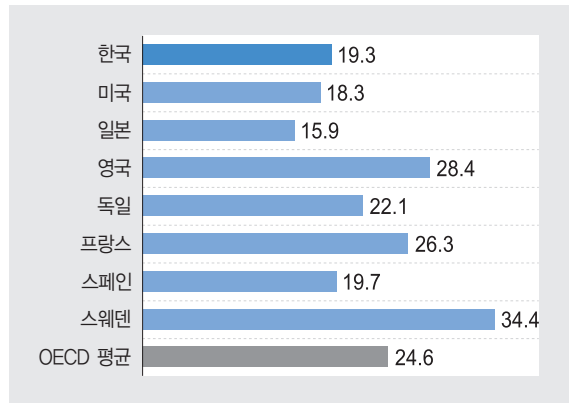
(세계일보, 2013-08-15)

“부가세를 인상하고 조세부담률 22%대로 올려야”

조세 분야 전문가의 해법은 증세로 복지재원 마련해 저소득층 지원 늘리면 소득증가 → 경제성장

주요국 조세부담률

(단위 %, 2010년 기준)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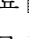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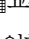
세법개정안 파동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증세 없는 복지확대’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복지 이행을 위한 진정한 증세(세율 인상·세목 신설)’와 ‘재정 여건에 맞춘 공약 축소’라는 두 대안 중 하

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둘 가운데 더 나은 대안은 뭘까. 조세·재정학 분야 전문가들에 따르면 기존 연구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답은 없다. 특정 국가의 조세부담률과 복지 수준은 개별 특성과 여건에 따라 선택되는 것이지 획일적 정답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단 ‘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가 선택됐다면 정답을 구할 수 있다. 증산층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제 활력에도 도움이 되는 구체적 해법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현재까지 관련 연구의 결론이다.

우선 조세저항 없이 증세하는 효율적 방법으로는 부가가치세를 인상이 제시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조세이론상 상대적으로 증세 여력이 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세율을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소득세는 특정계층의 조세저항을 피할 수 없다. 이번 세법 개정안 파동 직후 김종인 전 청와대 수석이 “부가세율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성명재 홍익대 교수도 “우리나라 부가세율(10%)은 주요국의 절반 수준이며, 실증 분석 결과 흔한 우려처럼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담을 하는 상황도 아니다”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부가세 증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금이 늘어나면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재계와 보수층의 단골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이 많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펴낸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소득 불균형과 인구 고령화를 해결하려면 의료 교육 사회안전망 등에 대한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증세로 복지재원을 마련해 저소득 계층에 대한 사회적 지출을 늘리면 소득 불균형이 감소되고 장기적 관점에서 생산성이 높아져 경제 성장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가장 적절한 증세규모에 대해 한국재정학회는 조세부담률 22.2%(현재는 20% 내외)를 제시한다. 김성태 청주대 교수가 이 학회에 제출한 ‘우리나라 정부의 최적규모 분석’ 논문에서 OECD 회원국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GDP를 극대화할 수 있는 조세부담률을 22.2% 수준으로 추정

했다. 이는 현재 기준으로 연간 30조원 가량의 증세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는 이 논문에서 “증세가 자원 배분을 왜곡시켜 사회 후생을 감소시키기 보다는, 늘어난 세수로 (정부가) 사회적 지출을 늘리면 사회 후생이 더욱 증가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2013-08-15〉

금융실명제 이후, 지하경제·사채 철폐... 탈세통로 차명범죄는 활개

부가가치세 탈루율 10년새 절반으로 月 1000여 건 대표 통장은 ‘범죄 온상’

금융실명제가 바꾼 5가지

- ① 세상 밖으로 나온 지하경제
- ② 줄어든 무자료 거래
- ③ 사라진 사채 시장
- ④ 정경유착·뇌물 문화 개선
- ⑤ 금융시장의 경쟁 본격화

아직 해결하지 못한 5가지

- ① 정·재계의 탈세·재산 도피
- ② 만연한 차명거래
- ③ 급증하는 대표통장
- ④ 진화하는 주가 조작
- ⑤ 여전히 불법 정치자금

1993년 8월 12일 오후 7시 45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특별담화문과 함께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표했다. 금융실명제가 전격적으로 실시되는 순간이었다. 금융실명제 도입까지는 10년도 넘는 시간이 걸렸다.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범죄조직, 사채 거래 등과 관련되는 계층뿐 아니라 세금 부담을 예상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컸다. 12일로 도입 20주년을 맞은 금융실명제는 이 같은 저항만큼이나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지하경제가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무자료 거래도 줄어드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여전히 만연한 대표통장과 차명거래 문제는 은 아직도 풀지 못한 과제로 남았다.

금융실명제가 바꾼 5가지

금융실명제는 지하경제 축소의 신호탄이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금융실명제 도입 이전인 1992년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29.1%로 전체 경제의 3분의 1에 달했지만, 실명제 도입 직후인 1993년 24.3%로 1년 새 4.8%p가 하락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비중은 17% 안팎으로 추산된다.

김상헌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금융실명제 도입은 지하경제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서게 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사이에서 만연해 있던 무자로 거래도 상당 부분 축소됐다. 금융실명제 도입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등 후속 조치 효과로 부가가치세 탈루가 꾸준히 감소한 것이다.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탈루율은 2000년 28.0%에서 2005년 17.6%, 2010년 14.3%로 줄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율도 1993년 3.9%에서 20여 년이 지난 2012년에는 4.4%로 상승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부가가치세 탈루율은 금융실명제 도입 효과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금융실명제 도입의 직격탄을 맞은 곳은 사채 시장이다. 실제 금융실명제 도입 당시 국민 경제는 사채 시장 의존도가 상당히 컸다. 1993년 1분기 중소기업협동중앙회가 1,17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23.2%가 사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했다.

지하에서 국민 경제를 좌우했던 명동 사채 시장은 금융실명제 도입과 함께 자리를 잃게 됐다. 대신 이 자리는 여신금융사, 대부업체 등 제도권 2금융권이 차지하게 됐다.

이와 함께 경영유착 특혜에 기반해 성장해왔던 기업들의 뇌물 관행도 상당 부분 축소됐다. 또 차명계좌 알선 등으로 예금을 유치했던 은행들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내놓으며 금융사로서의 경쟁을 본격화하게 됐다.

김자봉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무기명과 가명이 불가능해지면서, 즉 돈의 시작과 끝에 꼬리표가 붙으면서 당시

만연했던 관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매일경제, 2013-08-12)

재산세—종부세 올리고 양도세 내린다

정부가 주택 보유자에게 매년 부과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높이는 대신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매기는 양도소득세를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달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 인하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집을 보유하거나 매도할 때 내는 세금도 함께 개편키로 해 부동산 세제의 큰 틀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주택 거래를 늘리기 위해 지방세인 취득세의 세율을 현행 2~4%에서 1~2% 선으로 내리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방 세수(稅收)가 부족해지는데, 이를 메우려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재산세와 중앙정부가 걷어 전액 지방에 주는 종부세를 늘리려는 것이다.

재산세는 현재 0.1~0.4%인 세율을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만 정해졌을 뿐 구체적인 인상폭은 거론되지 않고 있다. 종부세는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올리는 동시에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재부 당국자는 “주택 거래세와 보유세율이 비정상적으로 큰 차를 보이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취지”라며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손실을 재산세와 종부세만으로 보전하는 게 아니므로 인상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60%를 양도소득세로 매기는 징벌적 세율을 6~38%의 일반 세율로 바꿀 계획이다. 이런 양도세 중과 폐지안은 지난 정부 때부터 추진됐지만 성과가 없었고, 박근혜 정부

들어선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폐지안을 발의했지만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안중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달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공청회에서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해 ‘보유 과세 증대, 거래 과세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집 가진 노년층-하우스푸어 稅부담 늘 수도

정부 방침대로 부동산 세제가 개편되면 집을 사고, 보유하고, 파는 과정에서 내는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

지금 수도권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시가표준액 기준 3억원짜리 집을 사면 이 가격의 2%인 600만원을 취득세로 내고, 집을 산 뒤 보유 기간에 매년 재산세로 27만 원을 낸다. 향후 취득세율이 1%로 낮아지면 취득세는 3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재산세율이 지금의 1.5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면 재산세액 자체는 40만원 선을 넘어설 수 있다. 6억원이 넘는 주택에만 부과하는 종부세는 수십 억원에 이르는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소폭 오를 개연성이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는 현재 주택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반세율(6~38%)을 적용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중과제도가 부활돼 2주택 보유자에게는 50%,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집을 갖고 있다가 내년 이후 2억원의 차익을 내고 집을 파는 2주택자는 원래 50%의 세율을 적용받아 1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중과제도가 폐지되면 일반 세율이 적용돼 양도세가 3,41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날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정부 방침에 대해 “방향성은 맞지만 침체된 주택 시장을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건설경제연구실장은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구조가 지나치게 취득세 의존적이었다는 점에서 거래세를 내리고 보유세를 올리는 세

제 개편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유세를 높이는 것이 극도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는 악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전문위원은 “주택 소유를 ‘짐’으로 생각할 정도로 보유 메리트가 떨어진 상황인데 보유세를 높이면 매물 증가로 주택시장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나 별다른 소득이 없는 노년층 주택 소유자, 내집빈곤층(하우스푸어)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불황기에 보유세 인상을 시도했다가 조세 저항에 부딪혀 포기한 적이 있다”며 “부동산 보유 의지를 더 꺾기 때문에 거래 활성화와 민간 임대 공급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의 방향은 옳지만 정책의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평가도 있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연구위원은 “지금은 거래 비용은 당연히 낮춰 주고 보유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도 상쇄해줘야 하는 상황인데 보유 부담을 늘리면 그나마 남아 있는 수요층조차 주택 매입을 외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아일보, 2013-08-08)

한국 2060년엔 GDP 대비 건강보험 지출 증가율 OECD 최고

오는 2060년에는 한국의 건강보험지출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출이 급속히 증가하지 않도록 감독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은경 부연구위원은 『재정포럼』

7월호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정당국의 역할」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의 문제는 총지출 규모가 크다는 것과 함께 지출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의 최종 책임자가 존재하지 않아 건강보험 지출 감축을 위한 노력이 최적 수준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6~2010년 평균 GDP 대비 한국의 공공의료비 지출 증가율은 3.3%다. 비용절감 정책을 취하지 않을 경우 GDP 대비 지출 증가율은 7.6%까지 올라가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게 된다. 칠레와 터키가 각각 7.1%, 7.0%로 추정되며, 나머지 국가들은 7% 이하다.

이 연구위원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지출 관련 정책을 관할하지만 재정 운영에 대한 감독 혹은 관리하는 제도는 없으며 기획재정부 역시 국고지원금만 이전한다”며 “향후 고령화 등 건강보험 지출이 막대하게 증가해 건보재정에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국민부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총지출은 42조 1,401억원이다. 올해 예산안에서 제시한 정부 총지출 342조원의 약 12%에 해당한다. 만약 건강보험이 정부 예산에 포함된다면 보건·복지·노동(97조 4천억원), 일반공공행정(55조 8천억원), 교육(49조 8천억원) 다음으로 큰 규모를 차지하게 된다.

그는 “보험료 수익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보조하는데 이러한 국고지원금은 국민부담을 증가시키고 타 부문에 사용가능한 재원을 구축하는 등 재정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헤럴드경제, 2013-08-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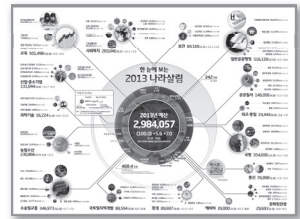
〈한국조세연구원〉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으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조세·재정·금융 분야의 연구를 위해 1992년에 설립되어 올해로 21주년을 맞이하는 조세·재정 분야 국내 최고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현재 조세정책뿐만 아니라 공공지출, 공공기관의 운영관련 정책에 대해 총체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조세연구원이 이미 수행하고 있는 재정연구 분야를 기관 명칭에 포함시켜 명실상부한 조세·재정 정책관련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 명칭이 〈한국조세연구원〉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관련법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34호, 2013년 7월 16일, 일부개정], 「시행 2013년 7월 16일」

이번 기관 명칭 변경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저희 임직원 일동은 나라경제의 발전을 위해 더욱 헌신,
노력하겠습니다.



재정포럼

2013년 8월호 통권 제206호

-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행인 /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노영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지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박한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혜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담당연구원 / 박주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출판팀장)
최윤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장은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위원)
지현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인턴연구위원)

■ 월간 재정포럼

2013년 8월 16일 발행 / 제17권 제8호(통권 제206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송파라00035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TEL: (02) 2186-2130~3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선 디자인 TEL: (02) 2269-2234

■ 인쇄 / 상일인쇄 TEL: (02) 2269-6770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 시 두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해서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 (02) 2186-2132
- FAX : (02) 2186-2139
- E-mail : pub@kipf.re.kr
- 주소 :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출판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 441-05-000011
 - 예금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